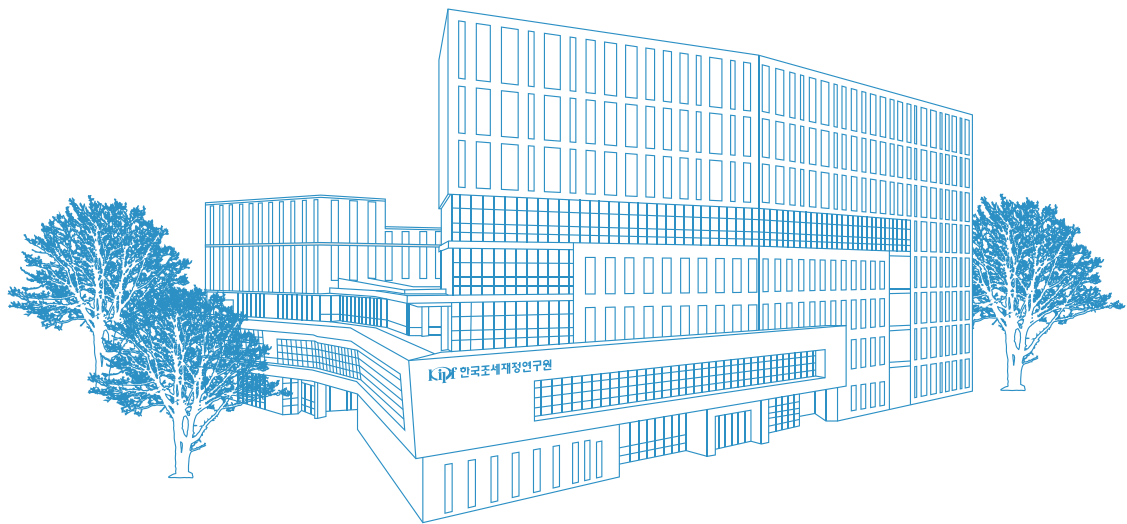


GAFSC
국가회계
프로젝트

OECD 국가별 연금총당부채 해외사례 조사

2020. 12.



연구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한 소 영

국 가 회 계 팀 장

진 태 호

특수전문직 3 급

이 은 경

특수전문직 4 급

최 은 혜

연 구 원

서 언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국가결산은 「국가회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2011회계연도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 10년째를 맞이하였다. 2000년대 이후 공공부문 재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져감에 따라 공공부문에도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의 IFRS의 성격을 가진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IPSAS)이 대두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회계기준’이라는 자체 기준으로 결산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국가 총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연금충당부채에 이르러서는 관련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생주의를 도입한 OECD 회원국들의 연금충당부채 인식 및 표시 사례조사를 수행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특히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연금 적자 증가 및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으로 인해 많은 우려와 문제가 제기되는 현시점에서 각 국가의 공무원, 군인의 퇴직연금 관련 제도와 연금충당부채의 규모, 산정방식 등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및 연금충당부채의 정합성을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의미가 있으며,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저자들의 개인 의견임을 밝힌다.

2020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유 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연금충당부채는 2019회계연도 현재 944.2조원으로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할인율 등 가정변경에 따라 민감도가 커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OECD 발생주의 도입 국가의 연금충당부채 인식, 측정 및 표시를 조사·분석하였다. OECD 37개 회원국 중 28개국이 조사 대상이 되었으며, 이 중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는 13개국과 주석으로 공시하는 4개국에 대해서 회계기준, 재무제표 및 주석공시 현황 및 연금충당부채 규모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주요국 5개국(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을 선정하여 회계기준, 규모, 제도자산의 적립, 보험수리적 가정의 민감도, 할인율 산정 방법, 결산보고서의 포괄 범위 등 상세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공무원 등의 퇴직연금을 종업원에 대한 근로제공 대가로 인지하는 국가는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며, 퇴직연금을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인지하는 국가는 주석공시 또는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제기를 받은 연금충당부채의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른 민감도는 상세분석 대상인 5개국 모두 가정에 따라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단순히 변동폭이 큰 것은 연금충당부채의 특성일 뿐이며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아닌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할인율 결정 시점, 할인율 최장 만기 적용 및 국가결산서 포괄 범위와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의 불일치 등은 주요국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목 차

| | |
|--|----|
| I. 서론 | 13 |
| II. 우리나라의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 16 |
| 1. 연금충당부채 회계기준: 「연금 회계처리지침」 | 16 |
| 2. 연금충당부채 공시 현황 | 18 |
| 3. 연금충당부채 규모 | 21 |
| 가. 2019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 산정결과 | 21 |
| 나. 연금충당부채 증감원인 분석 | 22 |
| 4. 현재가치 산정 할인율 현황 | 25 |
| 가. 실제 할인율 적용 방식 | 25 |
| 나. 예상 지급시기별 할인율(현행)과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의 비교 | 28 |
| 5. 포괄 범위(지방직 공무원 포함 여부) | 30 |
| III. OECD 37개국의 발생주의 적용 현황 | 31 |
| 1. 발생주의 도입국가 및 적용 회계기준 | 31 |
| 2. 발생주의 도입국가 결산보고서 분석 | 35 |
| 3. 국가별 연금충당부채 규모: OECD 13개국 분석 | 37 |
| 4. 연금충당부채 주석공시 국가(3개국) 및 일본 | 40 |
| 가. 프랑스 | 42 |
| 나. 오스트리아 | 44 |

| | |
|-------------------------------|----|
| 다. 핀란드 | 46 |
| 라. 일 본 | 47 |
| IV. 주요 5개국 연금충당부채 상세 분석 | 49 |
| 1. 연금충당부채 회계기준의 비교 | 49 |
| 2. 연금충당부채의 규모 | 50 |
| 가. 확정급여형 제도의 종료 | 51 |
| 나. 연금 제도자산의 적립 | 54 |
| 다. 연금충당부채에 포함되는 급여 종류 | 55 |
| 라.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 범위 | 56 |
| 3. 연금충당부채 금액의 신뢰성 | 57 |
| 4. 재무적 가정 중 할인율 비교 | 60 |
| 가. 미 국 | 61 |
| 나. 영 국 | 62 |
| 다. 호 주 | 63 |
| 라. 뉴질랜드 | 65 |
| 마. 캐나다 | 66 |
| 바. 종 합 | 67 |
| 5. 결산보고서의 포괄 범위와 연금충당부채 | 70 |
| 가. 미 국 | 71 |
| 나. 영 국 | 73 |
| 다. 호 주 | 73 |
| 라. 뉴질랜드 | 74 |
| 마. 캐나다 | 74 |
| 바. 종 합 | 75 |
| V. 결론 및 시사점 | 78 |
| 참고문헌 | 81 |
| 부록. 각 국가별 회계기준 및 주석 | 83 |

표 목차

| | |
|---|----|
| 〈표 I-1〉 OECD 국가별 연금충당부채 인식 현황 | 15 |
| 〈표 II-1〉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재무제표 인식 현황 | 18 |
| 〈표 II-2〉 국가통합재무제표상 연금충당부채 주석공시 사항 | 19 |
| 〈표 II-3〉 국가통합재무제표 연금보고서(필수보충정보) | 20 |
| 〈표 II-4〉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변동 현황 | 21 |
| 〈표 II-5〉 2019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 증감원인 분석 | 23 |
| 〈표 II-6〉 2018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 증감원인 분석 | 24 |
| 〈표 II-7〉 연금충당부채 증감액 중 가정 변경 비중 | 25 |
| 〈표 II-8〉 연금충당부채 할인율 관련 주요사항 | 26 |
| 〈표 II-9〉 10년 평균, 보간법을 적용하여 추정된 예상 지급시기별 할인율 | 27 |
| 〈표 III-1〉 OECD 회원국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현황 | 32 |
| 〈표 III-2〉 OECD 회원국 37개국 중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현황 | 34 |
| 〈표 III-3〉 발생주의 도입국가 자산, 부채 및 GDP 대비 부채비율 | 35 |
| 〈표 III-4〉 13개국의 연금충당부채 관련 현황 | 37 |
| 〈표 III-5〉 13개국의 연금충당부채 계정과목 현황 | 39 |
| 〈표 III-6〉 연금충당부채 주석공시 국가 현황 | 41 |
| 〈표 III-7〉 주석공시 3개국의 연금충당부채 계정과목 현황 | 41 |

| | |
|--|----|
| 〈표 III-8〉 프랑스 결산보고서 주식 일부 | 43 |
| 〈표 III-9〉 오스트리아 연금 관련 주식 | 45 |
| 〈표 III-10〉 핀란드 연금 관련 주식 | 47 |
| 〈표 IV-1〉 대한민국 및 주요 5개국 연금충당부채 현황 | 51 |
| 〈표 IV-2〉 호주 확정급여 퇴직연금제도 주식 일부 | 52 |
| 〈표 IV-3〉 뉴질랜드 퇴직연금 주식 일부 | 53 |
| 〈표 IV-4〉 OECD 주요국 연금충당부채 총액과 제도자산 현황 | 54 |
| 〈표 IV-5〉 미국 종업원급여(연방 근로자 및 군인) 총액 | 56 |
| 〈표 IV-6〉 한국 연금충당부채 증감액 세부 내역(FY2013~FY2019) | 57 |
| 〈표 IV-7〉 주요국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액 대비 보험수리적 손익 비중 | 58 |
| 〈표 IV-8〉 주요국의 연금충당부채 증감액 세부내역(FY2013~FY2019) | 59 |
| 〈표 IV-9〉 주요국의 연금충당부채 할인율 관련 현황 비교 | 67 |
| 〈표 IV-10〉 만기에 따른 국고채 수익률의 과거 추이 | 68 |
| 〈표 IV-11〉 국고채 수익률(30년, 50년 만기) | 70 |
| 〈표 IV-12〉 주요국의 포괄 범위 관련 현황 비교 | 75 |
| 〈표 IV-13〉 주요국의 중앙정부 관련 포괄 범위 비교 | 76 |

그림 목차

| | |
|---|----|
| [그림 II-1] 연금충당부채 산정 개요 | 17 |
| [그림 II-2] 연도별 연금충당부채 금액 및 증가율 비교 | 22 |
| [그림 II-3] 예상 지급시기별 할인율과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 | 28 |
| [그림 II-4]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 산출 방법 | 29 |
| [그림 II-5]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 산출 사례 | 29 |
| [그림 III-1] 국가별 부채비율 및 GDP 대비 부채 비율 | 36 |
| [그림 III-2] 국가별 총부채 및 GDP 대비 연금충당부채 비율 | 39 |
| [그림 III-3] 오스트리아 IPSAS 적용 현황 | 44 |
| [그림 III-4] 일본의 연금부채 계상 현황 | 48 |
| [그림 IV-1] 뉴질랜드 GSF 기여자, 수급자 등 가입자 변화 현황 | 53 |
| [그림 IV-2] 연금부채 등에 사용되는 경제적 가정(미국) | 62 |
| [그림 IV-3] 연금부채 등에 사용되는 경제적 가정(영국) | 63 |
| [그림 IV-4] AASB 119 할인율 추가 문단 | 64 |
| [그림 IV-5] 연금부채 등에 사용되는 경제적 가정(호주) | 64 |
| [그림 IV-6] 연금부채 등에 사용되는 경제적 가정(뉴질랜드) | 65 |
| [그림 IV-7] 연금부채 등에 사용되는 경제적 가정(캐나다) | 66 |
| [그림 IV-8] 회계연도별 기말할인율과 적용할인율(10년 평균) 비교 | 69 |
| [그림 IV-9] 연방정부 결산서 회계 실체(미국) | 72 |

I. 서론

□ 배경

-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국가부채 총액이 1,743.7조원에 달하면서 매년 증가(2018회계연도 대비 60.3조원)하는 국가부채 규모에 대해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 반복
- 특히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2019회계연도 현재 944.2조원으로 공무원 증원 정책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 제기
- 또한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장기간(70여 년) 추계정보임에 따라 할인율 등 가정 변경에 따른 민감도가 커 국가 재정건전성 판단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우려가 존재
- 그러나 2015회계연도 이후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약 280조원 중 75%인 약 210조원이 장기간 추계로 인한 할인율 인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으로, 직접적인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 연금충당부채는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정부의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부채로서, 퇴직 이후 장기간(70여 년)에 걸쳐 수령하는 연금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할인율을 포함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이에 따른 민감도¹⁾가 매우 높음

1) 할인율 0.5% 하락 시 109조원 증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0, p. 1196.

- 우리나라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을 민간의 종업원급여의 퇴직연금과 동일한 거래로 보고 유사한 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있음
- 이러한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가 필요하며,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목적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연금충당부채의 인식 및 표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위하여 OECD 발생주의 도입국가의 연금충당부채 인식, 측정 및 표시를 조사·분석함
- 국제적 정합성을 바탕으로 현행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 대상 국가: OECD 37개국

- OECD 발생주의 도입국가의 연금충당부채 조사대상은 2016 OECD Survey 기준으로 하되, 현재까지의 최신의 정보를 반영함
- 발생주의를 도입한 OECD 28개국의 외부 공시된 국가결산서(재무제표 및 주석) 및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 여부에 따라 조사 내용을 선정함
- OECD 37개국 중 28개국²⁾이 발생주의를 도입하였고, 이 중 16개국이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여 재무제표 또는 주석에 표시하고 있음
 - (유형1)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표시: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스위스, 콜롬비아 등 13개국
 - (유형2) 주석에만 표시: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3개국
 - (유형3)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지 않는 국가: 터키, 칠레, 스페인, 벨기에, 체코, 덴마크, 멕시코 7개국
 - (유형4) 공식적으로 답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국가: 일본, 폴란드, 헝가리,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등 4개국

2) 2016년 Survey 이후 OECD 가입국인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및 콜롬비아의 경우 모두 발생주의를 도입

〈표 1-1〉 OECD 국가별 연금충당부채 인식 현황

(단위: 개국)

| 연금충당부채 | | 국 가 | 비고 |
|--------|------|--|---------------|
| 산 출 | 재무제표 |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스위스, 콜롬비아 | 16개국 (57%) |
| | 주식 |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 |
| 미산출 | | 터키, 칠레, 스페인, 벨기에, 체코, 덴마크, 멕시코 | 7개국 |
| 무응답 | | 일본, 폴란드, 헝가리 | 5개국 |
| 조사불가 |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

자료: OECD, *Accrual Practices and Reform Experiences in OECD Countries*, 2017, p. 18을 토대로 연구진 직접 작성

□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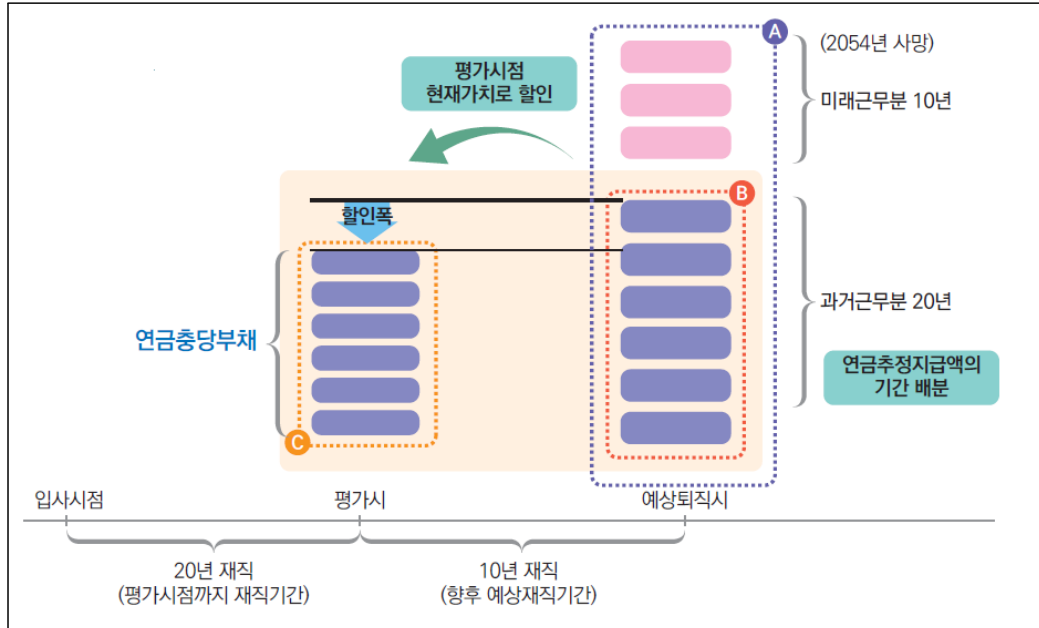
- OECD 국가 37개국의 다음 3가지 항목을 조사함
 - (회계기준)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적용하는 회계 기준상의 연금충당부채 산출 기준의 세부내용
 - (재무제표 및 주식공시 현황) 연금충당부채의 재무제표 본문 및 주식 표시 여부, 주식에만 표시하는 경우 사유 및 근거
 - (연금충당부채 규모) 연금충당부채 산출금액, GDP 대비 비중, 총부채 대비 비중
-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주요국가(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를 대상으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심층 조사함
 - (연금충당부채 규모) 연도별 연금충당부채 증감액, 보험수리적 손익이 차지하는 비중 등
 - (연금충당부채 적용 할인율) 연금충당부채 산출 시 적용하는 할인율 기준 및 현황: 국채이자율 사용 여부, 평균할인율 적용 여부 및 평균기간, 예상만기 지급시기 별 할인율 적용 여부, 최장 만기 초과하는 경우 할인율 적용 방식
 - (포괄 범위) 한국과 같이 중앙정부 재무제표상에 지방직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표시 여부

II. 우리나라의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1. 연금충당부채 회계기준: 「연금 회계처리지침」

- 우리나라는 공무원·군인연금을 대상으로 「연금 회계처리지침」(기획재정부령, 이하 ‘지침’)에 따라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에 인식하고 있음
- 공무원·군인연금제도는 근로를 제공한 공무원·군인에 대해 퇴직 시 지급해야 할 급여액을 확정하고 있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 제도에 해당
-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정상태표에 계상된 부채(‘연금충당부채’)는 기말 현재 연금추정지급액의 현재가치로서, 연금추정지급액의 현재가치는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국공채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정함
 - 연금추정지급액은 보험수리적 기법 및 과거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귀속률을 적용(예측단위 적립방식)하여 산출

[그림 II-1] 연금총당부채 산정 개요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알기 쉬운 국가회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 88

- 보험수리적 기법 적용 시 반영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인구통계적 가정과 재무적 가정으로 구성되며, 재정상태표일 현재 최적의 가정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인구통계적 가정은 퇴직률, 연금가입자·연금수급자와 그 유족의 사망률, 각종 연금선택률(퇴직연금선택률, 유족연금선택률, 공제일시금선택률, 조기연금선택률 등), 유족연금승계율, 승급률 등이 있음
 - 재무적 가정은 기획재정부정관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할인율,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로 구성됨

□ 재무적 가정 중 할인율 관련 규정

- 연금총당부채는 할인율에 따라 그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할인율(기획재정부장관 제시)은 지침 적용대상이 되는 연금사업 간에 서로 일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객관적·합리적이어야 함(「연금 회계처리지침」 문단 12.(1))

- 보고기간 말 현재 국공채의 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되, 예상 지급시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만기의 현행 국공채수익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연금 회계 처리지침」 문단 12.(3))
 - 예상지급 시기와 상응하는 국공채 만기가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만기의 국공채수익률을 적용하고, 없는 경우 보간법³⁾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정, 연금의 예상 지급시기, 예상금액과 지급통화를 감안한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 적용 가능

2. 연금충당부채 공시 현황

- 우리나라는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 본문에 부채로 표시하며 동시에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음
- 2009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2011년부터 연금충당부채를 매년 산정하여 장기충당부채로 재정상태표 본문에 부채로 표시하며 2019회계연도는 944.2조원임

〈표 II-1〉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재무제표 인식 현황

(단위: 조원, %)

| 구 분 | FY2015 | FY2016 | FY2017 | FY2018 | FY2019 |
|-----------|---------|---------|---------|---------|---------|
| 총부채(A) | 1,285.2 | 1,433.1 | 1,555.8 | 1,683.4 | 1,743.7 |
| 연금충당부채(B) | 659.9 | 752.6 | 845.8 | 939.9 | 944.2 |
| 비중(B/A) | 51.3 | 52.5 | 54.4 | 55.8 | 54.1 |

자료: 대한민국정부, 『국가결산보고서』, 2015~2019회계연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연금충당부채 주석공시 사항으로 재무정보인 연금충당부채 변동내역(구성항목) 및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을 공시하고 있음

3) 보간법이란 주어진 값 사이에 측정되지 않는 임의의 값을 구해야 할 경우 주어진 값을 함수로 활용하여 값을 구하는 방법임

- 연금충당부채의 변동은 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과거근무원가로 구성된 연금 비용과 보험수리적 손익으로 인한 증가와 연금지급액의 차감으로 설명됨
-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으로 할인율, 물가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이 공시됨
- 국가통합결산서상에서는 <표 II-2> 이외의 비재무적 주석정보가 없음
 - 다만 필수보충정보인 연금보고서가 국가통합재무제표에 부속서류로 첨부되어 연금충당부채 관련 공시가 되고 있음

<표 II-2> 국가통합재무제표상 연금충당부채 주석공시 사항

□ 연금충당부채의 변동내용

(단위: 원)

| 구분 | 금 액 | |
|------------------------|----------------------|---------------------|
| | 당기 | 전기 |
| 기초잔액(A) | 939,888,408,528,862 | 845,791,647,269,600 |
| 당기근무원가(B) | 33,393,481,888,450 | 30,695,852,808,250 |
| 이자원가(C) | 22,557,321,804,692 | 23,090,111,970,460 |
| 과거근무원가(D) | - | - |
| 공무원·군인연금비용 소계(E=B+C+D) | 55,950,803,693,142 | 53,785,964,778,710 |
| 보험수리적손익(F) | (34,112,578,808,464) | 56,817,612,319,332 |
| 연금충당부채 설정액(G=E+F) | 21,838,224,884,678 | 110,603,577,098,042 |
| 연금 지급액(H) | 17,559,966,960,150 | 16,506,815,838,780 |
| 기말잔액(I=A+G-H) | 944,166,666,453,390 | 939,888,408,528,862 |

□ 연금충당부채의 산정을 위하여 사용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단위: %)

| 구분 | 당기 | 전기 |
|-------|-------------|-------------|
| 할인율 | 2.26 ~ 3.05 | 2.40 ~ 3.42 |
| 물가상승률 | 0.00 ~ 2.00 | 0.00 ~ 2.70 |
| 임금상승률 | 3.60 ~ 4.70 | 1.80 ~ 3.60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0, p. 1051

□ 우리나라는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연금과 관련된 주요정보를 필수보충정보인 '연금보고서'로 공시하고 있음

〈표 II-3〉 국가통합재무제표 연금보고서(필수보충정보)

(단위: 페이지)

| 공무원연금보고서 내용 | 분량 | 군인연금보고서 내용 | 분량 |
|---|----|---|----|
| 1장 공무원연금 개요 1.1 제도 일반 1.2 인원과 재정 현황 1.3 급여구성과내용 1.4 비용부담방식과 재정운영방식 1.5 감독·관리체계 | 8 | <input type="checkbox"/> 연금사업의 개요 1. 설치 목적 2. 주요연혁 3. 연금사업 현황 4. 연금사업의 급여구성과 내용 5. 채용조달 방식과 비용부담 방식 6. 감독관리체계 | 8 |
| 2장 공무원연금의 기금운용 2.1.기금의조성과 운용 2.2 기금운용체계 2.3 기금투자관리 2.4 기금운용성과 | 12 | <input type="checkbox"/> 연금사업의 기금운용 1. ~ 4. (좌동) <input type="checkbox"/> 주요 현황 1. 퇴직자 추이 2. 연금종류별 수급자 추이 3. 기금조성 추이 | 8 |
| 3장 공무원연금의 연금충당부채 평가 3.1 연금충당부채 평가대상 급여 종류 3.2 연금충당부채 평가대상 인원 현황 3.3 연금충당부채평가방식 3.4 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용내역과 산출근거 3.5 연금충당부채의 산정결과 3.6 회계연도별 연금충당부채의 변동내역 3.7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3.8 기타 사항 : 표준보험료 | 51 | <input type="checkbox"/> 연금사업의 연금충당부채 평가 1. ~ 7. (좌동) 8. 퇴직수당충당부채 산정내역 | 22 |
| 소부록 1: 「연금 회계처리지침」 설명 소부록 2: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의 평가모형에 대한 설명 | 6 | 소부록1. 주요 인구통계적 가정의 세부 적용내역(전역률, 사망률, 연금 선택률 등) | 20 |
| 공무원연금보고서 총분량 | 83 | 군인연금보고서 총분량 | 50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연금충당부채 규모

가. 2019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 산정결과

- 2019회계연도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944.2조원으로, 2018회계연도(939.9조원) 대비 4.3조원 증가(0.5%)하였음

〈표 II-4〉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변동 현황

(단위: 조원, %)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공무원 | 523.8 (8.1) | 531.8 (1.5) | 600.5 (12.9) | 675.3 (12.5) | 753.9 (11.6) | 758.4 (0.6) |
| 군인 | 119.8 (7.1) | 128.1 (6.9) | 152.1 (18.7) | 170.5 (12.1) | 186.0 (9.1) | 185.8 (△0.1) |
| 합계 | 643.6 (7.9) | 659.9 (2.5) | 752.6 (14.0) | 845.8 (12.4) | 939.9 (11.1) | 944.2 (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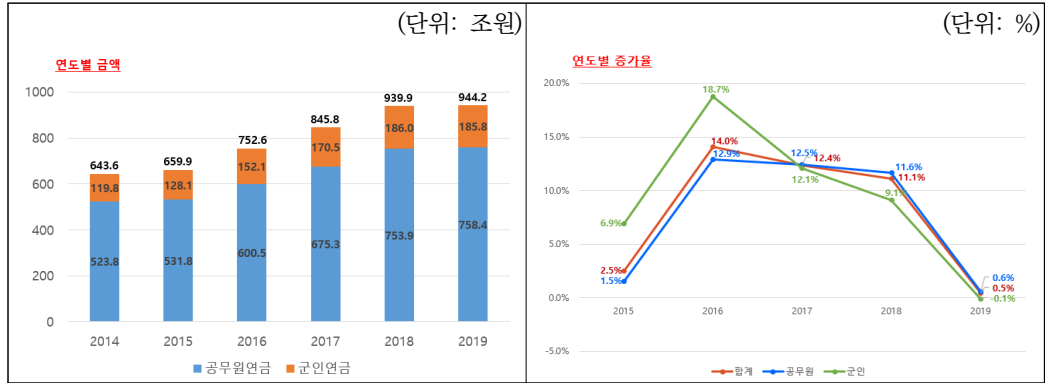
주: 1. 2015년에는 연금개혁 효과(52.5조원) 반영으로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증가율 감소

2. () 안은 증감률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국가결산보고서』, 2015~2019회계연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019회계연도에는 2020 장기재정전망 적용에 따른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하락으로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증가율이 감소하였음
- 공무원연금 개혁(2015년), 재무적 가정 변경(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평균 10% 이상 연금충당부채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그림 11-2] 연도별 연금충당부채 금액 및 증가율 비교



자료: 대한민국정부, 『국가결산보고서』, 2015~2019회계연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연금충당부채 증감원인 분석

□ 2019년 증감원인

-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 인하에 따라 77.0조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 추정치 하락으로 96.3조원 감소하는 등 보험수리적 가정 변경에 따라 34.2조원 감소
 - (할인율 인하)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할인율의 하락으로 연금충당부채 증가 (77.0조원, 2.40~3.42% → 2.26~3.05%)
 - (물가상승률) 2020 장기재정전망 공통전제 적용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하락하여 연금충당부채 감소(30.6조원, 2.0~2.7% → 1.7~2.0%)
 - (임금상승률) 2020 장기재정전망 공통전제 적용에 따라 임금상승률이 하락하여 연금충당부채 감소(65.7조원, 5.0~5.4% → 3.6~4.2%)
- 재직자의 근무기간 증가(상승) 및 수급자 연금 지급(하락) 등 실질적 요인에 따라 38.5조원 증가
 - (당기근무원가) 재직자 근무에 따라 당기 발생원가 33.4조원 증가
 - (이자원가)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연금지급액의 현재가치이므로, 화폐의 시간가치만큼 자연적으로 증가(22.6조원)

〈표 II-5〉 2019회계연도 연금총당부채 증감원인 분석

(단위: 조원, %)

| 증감요인 | | 2019년도 증감액 | | | 비 고 |
|-----------------|---------------|------------|-------|------|--------------------------------------|
| | | 계 | 공무원 | 군인 | |
| 보험 수리적 손익 | ① 할인율 | 77.0 | 60.9 | 16.1 | 2019년: 2.26~3.05 2018년: 2.40~3.42 |
| | ② 물가상승률 | △30.6 | △22.0 | △8.6 | 2019년: 1.7~2.0 2018년: 2.0~2.7 |
| | ③ 임금상승률 | △65.7 | △56.0 | △9.7 | 2019년: 3.6~4.2 2018년: 5.0~5.4 |
| | ④ 기타 | △14.9 | △7.8 | △7.1 | |
| | 소 계 | △34.2 | △24.9 | △9.3 | |
| 실질적 요인 | ① 재직자 근무기간 증가 | 33.4 | 25.7 | 7.7 | · 당기 근무분 반영 |
| | ② 기간경과 | 22.6 | 18.1 | 4.5 | · 전년도 부채 × 할인율 |
| | ③ 수급자 연금 지급 | △17.5 | △14.5 | △3.0 | |
| | 소 계 | 38.5 | 29.3 | 9.2 | |
| 합 계 | | 4.3 | 4.4 | △0.1 |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0, p. 1195; 123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018년 증감원인

-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 인하에 따라 64.1조원이 증가하는 등 보험수리적 가정 변경에 따라 56.8조원 증가
 - (할인율 인하)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할인율의 하락으로 연금총당부채 증가 (64.1조원, 2.73~3.73% → 2.40~3.42%)
- 재직자의 근무기간 증가(상승) 및 수급자 연금 지급(하락) 등 실질적 요인에 따라 37.3조원 증가
 - (당기근무원가) 재직자 근무에 따라 당기 발생원가 30.7조원 증가
 - (이자원가) 연금총당부채는 미래 연금지급액의 현재가치이므로, 화폐의 시간가 치만큼 자연적으로 증가(23.1조원)
 - (연금지급) 수급자 연금 지급으로 16.5조원 감소

〈표 II-6〉 2018회계연도 연금총당부채 증감원인 분석

(단위: 조원, %)

| 증감요인 | | 2018년도 증감액 | | | 비 고 |
|-----------------|---------------|------------|-------|------|--------------------------------------|
| | | 계 | 공무원 | 군인 | |
| 보험 수리적 손익 | ① 할인율 | 64.1 | 50.6 | 13.5 | 2018년: 2.40~3.42 2017년: 2.73~3.73 |
| | ② 기타 | △7.3 | 0.7 | △8.0 | |
| | 소 계 | 56.8 | 51.3 | 5.5 | |
| 실질적 요인 | ① 재직자 근무기간 증가 | 30.7 | 22.5 | 8.2 | · 당기 근무분 반영 |
| | ② 기간경과 | 23.1 | 18.4 | 4.7 | · 전년도 부채 ×, 할인율 |
| | ③ 수급자 연금 지급 | △16.5 | △13.6 | △2.9 | |
| | 소 계 | 37.3 | 27.3 | 10.0 | |
| 합 계 | | 94.1 | 78.6 | 15.5 |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0, p. 1195; 123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현재의 산출방식으로 연금총당부채를 산정한 2013회계연도 이후 연금총당부채는 총 347.9조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보험수리적 가정 변경에 따른 증가는 199.7조원으로 57.4% 차지
 - 할인율 하락에 따라 총 302.7조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 변동에 따라 98.7조원이 감소하는 등 199.7조원이 보험수리적 가정 변경에 따라 증가하였음
 - 실질적 요인으로 재직자 근무에 따른 당기근무원가 153.9조원과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이자원가 137.7조원이 발생하였음

〈표 II-7〉 연금충당부채 증감액 중 가정 변경 비중

(단위: 조원, %)

| 구분 | FY2013 | FY2014 | FY2015 | FY2016 | FY2017 | FY2018 | FY2019 |
|---------|--------|--------|--------|--------|--------|--------------|--------------|
| 연금충당부채 | 596.3 | 643.6 | 659.9 | 752.6 | 845.8 | 939.9 | 944.2 |
| 증감액 | - | 47.3 | 16.3 | 92.7 | 93.2 | 94.1 | 4.3 |
| 실질적요인 | - | 29.6 | △21.5 | 30.5 | 33.9 | 37.2 | 38.5 |
| 보험수리적 | - | 17.7 | 37.8 | 62.2 | 59.3 | 56.8 | △34.2 |
| 가정변경 비중 | - | 37.4 | 63.7 | 67.1 | 63.6 | 60.4 | 47.0 |

자료: 대한민국정부, 『국가결산보고서』, 2013~2019회계연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국가 간 비교가 필요한 연금충당부채의 GDP 대비 비중, 총부채 대비 비중, 보험수리적 손익비중 등은 국가별 비교 파트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함(제III장 및 제IV장 참조)

4. 현재가치 산정 할인율 현황

가. 실제 할인율 적용 방식

-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를 산정에 필요한 할인율은 ① 할인율의 종류 ② 예상 지급시기 고려 여부 ③ 할인율 시점 ④ 최장 만기 이후 적용 할인율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됨
 - (할인율 종류)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율을 참고하여 결정.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제외한 보험수리적 위험, 투자위험 및 국가회계실체 고유의 신용위험은 반영하지 않음
 - (예상 지급시기 고려) 연금급여의 예상 지급시기와 상응하는 만기의(1년, 3년, 5년, 10년, 20년) 국공채 수익률을 적용하며, 해당하는 만기가 없는 경우 예상 지급시기까지 보간법으로 산출한 값을 적용함
 -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지급시기별 할인율을 직접 적용하여

복수의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출하고 있음

- (할인율 시점) <표 II-9>와 같이 10년 평균(2010~2019년)을 적용
 - 과거 평균할인율을 사용하는 이유는 할인율이 연금충당부채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참조하여 그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할인율 결정 자문회의’를 거쳐 기획재정부가 결정함
- (최장 만기 이후) 연금급여의 예상 지급시기가 20년을 초과할 경우 20년 만기 국공채 수익률을 적용함

<표 II-8> 연금충당부채 할인율 관련 주요사항

| 구분 | 일반적 회계기준(IPSAS 등) | 현행 | 비고 |
|-------------|--|-------------------|-------|
| 할인율 종류 | 우량 회사채 또는 국공채 | 국공채 | 기준 정합 |
| 예상 지급 시기 고려 | 예상 지급시기 고려하여 택일 | 지급시기별 할인율 (복수할인율) | 기준 정합 |
| | ① 원칙: 지급시기별 복수할인율 (multiple rates) ② 허용: 가중평균 단일할인율 (single rate) | | |
| 할인율 시점 | 보고기간 말 할인율 | 과거 10년 평균 | 기준 차이 |
| 최장 만기 이후 | 추정 수익률 곡선 | 20년 만기 사용 | 기준 차이 |

자료: 저자 작성

〈표 II-9〉 10년 평균, 보간법을 적용하여 추정된 예상 지급시기별 할인율

(단위: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평균 | 구분 | 구분 | 2019 할인율 |
|------|------|--------------|------|------|------|------|------|------|------|------|-----|------|-------------|
| | | | | | | | | | | | | 2019 | |
| 2.95 | 3.42 | 3.12 | 2.66 | 2.44 | 1.70 | 1.43 | 1.54 | 1.84 | 1.52 | 2.26 | 1년 | 2020 | 2.26 |
| | | | | | | | | | | | 2년 | 2021 | 2.36 |
| 3.72 | 3.62 | 3.13 | 2.79 | 2.59 | 1.80 | 1.44 | 1.80 | 2.10 | 1.53 | 2.45 | 3년 | 2022 | 2.45 |
| | | | | | | | | | | | 4년 | 2023 | 2.56 |
| 4.31 | 3.90 | 3.24 | 3.00 | 2.84 | 1.98 | 1.53 | 2.00 | 2.31 | 1.59 | 2.67 | 5년 | 2024 | 2.67 |
| | | | | | | | | | | | 6년 | 2025 | 2.72 |
| | | 보간법 적용 | | | | | | | | | 7년 | 2026 | 2.78 |
| | | | | | | | | | | | 8년 | 2027 | 2.83 |
| | | | | | | | | | | | 9년 | 2028 | 2.89 |
| 4.77 | 4.20 | 3.45 | 3.28 | 3.19 | 2.31 | 1.75 | 2.28 | 2.50 | 1.70 | 2.94 | 10년 | 2029 | 2.94 |
| | | | | | | | | | | | 11년 | 2030 | 2.95 |
| | | | | | | | | | | | 12년 | 2031 | 2.96 |
| | | | | | | | | | | | 13년 | 2032 | 2.98 |
| | | | | | | | | | | | 14년 | 2033 | 2.99 |
| | | 보간법 적용 | | | | | | | | | 15년 | 2034 | 3.00 |
| | | | | | | | | | | | 16년 | 2035 | 3.01 |
| | | | | | | | | | | | 17년 | 2036 | 3.02 |
| | | | | | | | | | | | 18년 | 2037 | 3.03 |
| | | | | | | | | | | | 19년 | 2038 | 3.04 |
| 4.98 | 4.34 | 3.53 | 3.46 | 3.38 | 2.48 | 1.82 | 2.33 | 2.48 | 1.71 | 3.05 | 20년 | 2039 | 3.05 |
| | | | | | | | | | | | 21년 | 2040 | 3.05 |
| | | | | | | | | | | | 31년 | 2050 | 3.05 |
| | | | | | | | | | | | 41년 | 2060 | 3.05 |
| | | | | | | | | | | | 51년 | 2070 | 3.05 |
| | | 20년 만기 적용 유지 | | | | | | | | | 61년 | 2080 | 3.05 |
| | | | | | | | | | | | 71년 | 2090 | 3.05 |
| | | | | | | | | | | | 81년 | 2100 | 3.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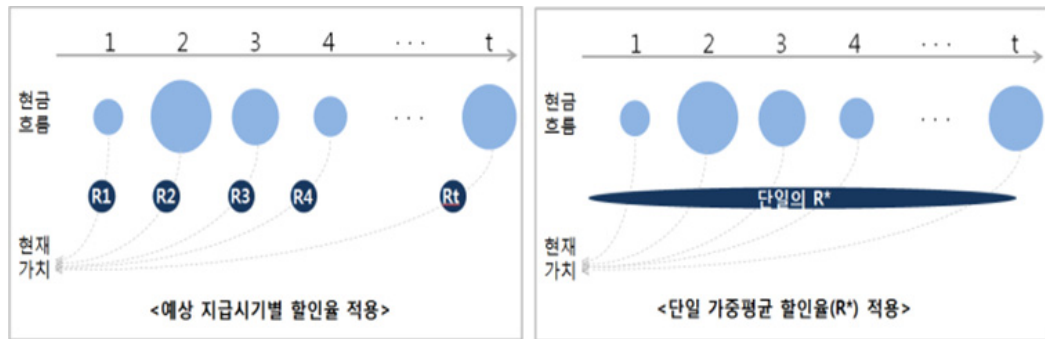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0, p. 118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예상 지급시기별 할인율(현행)과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의 비교

□ 개별 할인율과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의 비교

- (지급시기 고려 여부) 두 방식 모두, 지급시기 및 금액을 고려함
- (할인율 적용 방식에 따른 부채금액의 차이) 할인율에 따른 금액차이가 없음
- (할인율 표시 방식의 변경) 예상 지급시기별 할인율은 복수로 표시되어 활용이 불편하므로,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을 산출하여 단일 할인율 표시형식만 바꾼 것임

[그림 II-3] 예상 지급시기별 할인율과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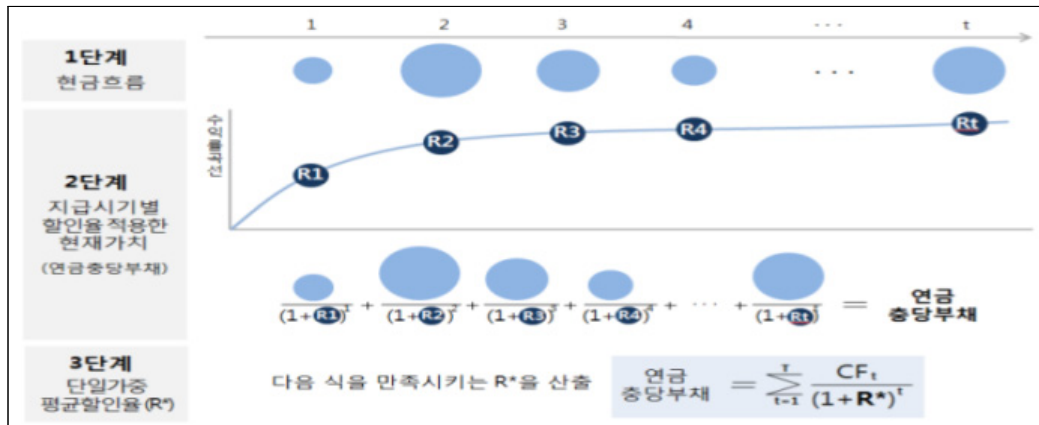
□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의 개념 및 산출 이유

- (개념)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은 미래 예상 퇴직현금흐름(현재까지 근속으로 배분된)에 시점별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차이가 없도록 하는 단일의 할인율임
 -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 역시 지급시기 및 금액을 모두 고려하는 개념이며, 특정 시점의 단일 할인율을 사용하는 개념이 아님
- (산출 이유) 이자원가, 보험수리적 손익 중 할인율로 인한 변동금액 등을 연단위로 산출하기에 용이하고, 할인율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는 경우 편리함

□ 단일 가중평균 할인을 산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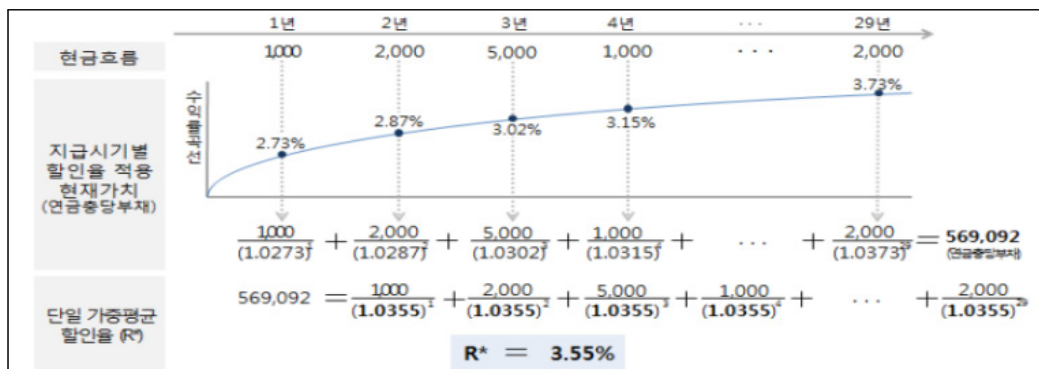
- (1단계) 측정일 현재까지 근속으로 배분된 급여의 미래 현금흐름 추정
- (2단계) 지급시기별 할인율(R1, R2...)을 적용하여 할인한 현재가치 측정
- (3단계) 측정된 현재가치와 동일한 값을 산출하는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 산출
- (엑셀을 통한 산출): 3단계의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은 엑셀 목표값 찾기로 용이하게 산출 가능(엑셀 상단메뉴 → 데이터 → 가상분석 → 목표값 찾기)(그림 II-5 참조)

[그림 II-4]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 산출 방법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5]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 산출 사례



자료: 저자 작성

5. 포괄 범위(지방직 공무원 포함 여부)

- 현재 중앙정부 국가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연금충당부채’에는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도 포함됨
 - 현재 공무원연금제도(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GEPS)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법규에 의한 정규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 직원(위원회 전임직원 등) 등이 포함되며, 공무원연금기금이 전체를 운용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기금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한 ‘국가회계실체’로서 국가재무제표 통합 대상이며, 공무원연금기금이 인식한 ‘연금충당부채’ 총액이 국가재무제표 본문에 계상됨

- 국가재무제표상 지방직 공무원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함
 - 첫째, 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부채인식 범위가 불일치하여, 중앙정부의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과대하게 계상됨
 - 둘째, 연금충당부채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성격을 기반으로 충당부채로 표시하는 것인데, 국가(중앙정부)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지방직 공무원의 연금추정지급액을 부채로 포함하여 개념적 모순이 존재함
 -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연금지급부담만 가지는 다른 연금제도의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어 상충됨
 - 다수의 해외 국가들(미국, 캐나다, 뉴질랜드)도 지방직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를 분리·공시하고 있어 비교분석이 어려우며, 특히 우리나라 부채의 과대 계상으로 인한 신인도 평가 시 왜곡될 우려
 - 2018년 3월 2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경제, 사회, 법적 상황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어, 지방직 공무원의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강화 필요

Ⅲ. OECD 37개국의 발생주의 적용 현황

1. 발생주의 도입국가 및 적용 회계기준

- OECD 37개국 중 28개의 국가가 발생주의를 도입하였으며,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는 국가는 총 16개국으로 조사됨
 - 2016 OECD Survey 기준 OECD 34개국 중 25개국이 발생주의를 도입하였다고 발표, 이 중 15개국이 연금충당부채 산출
 - 발생주의를 도입한 OECD 25개국의 외부 공시된 국가결산서(재무제표 및 주석) 및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15개국이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고 있음
 -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표시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스위스 12개국
 - 주석에만 표시하는 국가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3개국
 -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지 않는 국가는 터키, 칠레, 스페인, 벨기에, 체코, 덴마크, 멕시코를 비롯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은 일본, 폴란드, 헝가리 등 10개국
 - 2016 OECD Survey 이후 OECD에 가입한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및 콜롬비아⁴⁾의 경우 모두 발생주의를 도입하였으며, 이 중 콜롬비아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여 재무제표에 공시

4) 라트비아(2016년 7월), 리투아니아(2018년 5월), 콜롬비아(2020년 5월)

□ OECD 국가 중 발생주의 도입 국가, 국가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 회계기준은 <표 III-1>과 같음

<표 III-1> OECD 회원국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현황

| 번호 | 국가명 | 발생주의 재무제표 | 연금 충당부채 | 발생주의 회계기준 | 연금충당부채 회계기준 |
|----|-------|--------------|------------|---------------------|----------------------|
| 1 | 대한민국 | ◎ | ◎ | 자국 기준 | 연금회계처리지침 |
| 2 | 미국 | ◎ | ◎ | 자국 기준 | SFFAS 33, 연금, 기타퇴직급여 |
| 3 | 영국 | ◎ | ◎ | IFRS ⁵⁾ | IAS 19, 종업원급여 |
| 4 | 호주 | ◎ | ◎ | IFRS 준용 | AASB119, 종업원급여 |
| 5 | 뉴질랜드 | ◎ | ◎ | IPSAS ⁶⁾ | PBE IPSAS 39, 종업원급여 |
| 6 | 캐나다 | ◎ | ◎ | 자국기준 | CICA 3250 퇴직급여 |
| 7 | 아이슬란드 | ◎ | ◎ | IPSAS 준용 | IPSAS 39, 종업원급여 |
| 8 | 스웨덴 | ◎ | ◎ | IPSAS 준용 | IPSAS 39, 종업원급여 |
| 9 | 에스토니아 | ◎ | ◎ | IPSAS | IPSAS 39, 종업원급여 |
| 10 | 슬로바키아 | ◎ | ◎ | IPSAS | IPSAS 39, 종업원급여 |
| 11 | 이스라엘 | ◎ | ◎ | IPSAS | IPSAS 39, 종업원급여 |
| 12 | 스위스 | ◎ | ◎ | IPSAS | IPSAS 39, 종업원급여 |
| 13 | 콜롬비아 | ◎ | ◎ | IPSAS 준용 | IPSAS 39, 종업원급여 |
| 14 | 프랑스 | ◎ | 주석 | 자국 기준 | RNCE 13, 부속서에 언급된 약정 |
| 15 | 오스트리아 | ◎ | 주석 | IPSAS 준용 | IPSAS 39, 종업원급여 |
| 16 | 핀란드 | ◎ | 주석 | 자국 기준 | 「국고예산법」 및 재무부 재무원칙 |
| 17 | 칠레 | ◎ | - | IPSAS 준용 | |
| 18 | 체코 | ◎ | - | IPSAS 준용 | |
| 19 | 일본 | ◎ | - | 자국 기준 | |
| 20 | 터키 | ◎ | - | IPSAS 준용 | |
| 21 | 스페인 | ◎ | - | IPSAS 준용 | |
| 22 | 벨기에 | ◎ | - | IPSAS 준용 | |
| 23 | 덴마크 | ◎ | - | 자국 기준 | |

5) IFRS(국제회계기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6) IPSAS(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표 III-1〉의 계속

| 번호 | 국가명 | 발생주의 재무제표 | 연금 충당부채 | 발생주의 회계기준 | 연금충당부채 회계기준 |
|----|-------|--------------|------------|--------------|-------------|
| 24 | 멕시코 | ◎ | - | IPSAS 부분 도입 | |
| 25 | 폴란드 | ◎ | - | 자국 기준 | |
| 26 | 헝가리 | ◎ | - | 자국 기준 | |
| 27 | 라트비아 | ◎ | - | IPSAS 준용 | |
| 28 | 리투아니아 | ◎ | - | IPSAS 준용 | |
| 29 | 그리스 | △ | - | IPSAS | |
| 30 | 포르투갈 | △ | - | IPSAS 부분 도입 | |
| 31 | 슬로베니아 | △ | - | 자국기준 | |
| 32 | 독일 | X | - | - | - |
| 33 | 아일랜드 | X | - | - | - |
| 34 | 이탈리아 | X | - | - | - |
| 35 | 룩셈부르크 | X | - | - | - |
| 36 | 네덜란드 | X | - | - | - |
| 37 | 노르웨이 | X | - | - | - |

주: ◎는 발생주의 재무제표 도입, △는 도입 추진, X는 미도입을 의미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알기 쉬운 국가회계』, 20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 19

- 발생주의를 도입한 28개국 중 우리나라와 같이 자국기준을 사용하는 국가는 9개국으로 조사되었으며, IPSAS·IFRS와 같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국가는 총 19개국으로 나타남
 - (자국 기준) 미국,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일본, 폴란드, 헝가리 등 9개국
 - (국제 기준(IPSAS/IFRS)) 총 19개국 적용
 - (IPSAS)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스위스, 콜롬비아, 오스트리아, 터키, 칠레, 스페인, 벨기에, 체코, 멕시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17개국
 - (IFRS) 영국, 호주 등 2개국
 - IPSAS는 IFRS를 토대로 공공부문의 특수한 회계처리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어, 두 기준은 매우 유사함. 특히 ‘종업원 퇴직급여’인 연금충당부채

관련 두 기준상 차이가 거의 없음

○ 발생주의를 도입한 OECD 28개국의 현황은 <표 III-2>와 같음

<표 III-2> OECD 회원국 37개국 중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현황

| 회계제도 | 국가명 | 정부회계기준 | 도입연도 | | |
|----------------------------|------|--------|-------------|-------------|------|
| 발생주의 도입국가 | 1 | 한국 | 자국 기준 | 2009 | |
| | 2 | 미국 | 자국 기준 | 1998 | |
| | 3 | 프랑스 | 자국 기준 | 2007 | |
| | 4 | 캐나다 | 자국 기준 | 2003 | |
| | 5 | 폴란드 | 자국 기준 | 2001 | |
| | 6 | 덴마크 | 자국 기준 | 1990's | |
| | 7 | 핀란드 | 자국 기준 | 1990's | |
| | 8 | 헝가리 | 자국 기준 | 2013 | |
| | 9 | 영국 | IFRS | 2002 | |
| | 10 | 호주 | IFRS | 1994 | |
| | 11 | 스페인 | IPSAS | 2010 | |
| | 12 | 터키 | IPSAS | 2006 | |
| | 13 | 스위스 | IPSAS | 2006 | |
| | 14 | 벨기에 | IPSAS | 2003 | |
| | 15 | 오스트리아 | IPSAS | 2013 | |
| | 16 | 이스라엘 | IPSAS | 2004 | |
| | 17 | 칠레 | IPSAS | 2006 | |
| | 18 | 체코 | IPSAS | 1989 | |
| | 19 | 뉴질랜드 | IPSAS | 1993 | |
| | 20 | 슬로바키아 | IPSAS | 2008 | |
| | 21 | 리투아니아 | IPSAS | 2010 | |
| | 22 | 라트비아 | IPSAS | 2007 | |
| | 23 | 에스토니아 | IPSAS | 2004 | |
| | 24 | 아이슬란드 | IPSAS | 1998 | |
| | 도입추진 | 25 | 일본 | IPSAS 부분 도입 | 2000 |
| | | 26 | 멕시코 | IPSAS 부분 도입 | 2014 |
| | | 27 | 스웨덴 | IPSAS 부분 도입 | 1993 |
| | | 28 | 콜롬비아 | IPSAS 부분 도입 | 1996 |
| 미도입 (현금주의 또는 수정현금주의) | 29 | 슬로베니아 | 자국 기준 | - | |
| | 30 | 그리스 | IPSAS | - | |
| | 31 | 프로투갈 | IPSAS 부분 도입 | - | |
| | 32 | 아일랜드 | - | - | |
| | 33 | 독일 | - | - | |
| | 34 | 이탈리아 | - | - | |
| | 35 | 네덜란드 | - | - | |
| | 36 | 노르웨이 | - | - | |
| | 37 | 룩셈부르크 | - | - |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알기 쉬운 국가회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p. 21

2. 발생주의 도입 국가 결산보고서 분석

- 발생주의 도입 국가 28개국 중 19개국의 결산보고서를 입수하여 총자산, 총부채 및 부채비율 등을 분석함
 - 국가별로 결산 및 공시 시기가 상이하므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를 대상으로 분석
 - 슬로바키아(2017년), 칠레 및 체코(2015년)의 경우 구할 수 있는 최신 보고서를 활용
 - 터키, 스페인, 벨기에, 덴마크, 멕시코, 폴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9개국은 결산보고서를 입수하지 못하여 제외

- 국가별 비교를 위해 부채비율 및 GDP 대비 부채비율 산출
 - (부채비율) 미국(675.0%), 이스라엘(428.1%), 캐나다(237.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에스토니아(54.7%), 칠레(55.5%), 뉴질랜드(60.0%) 순으로 낮게 나타남
 - (GDP 대비 부채비율) 일본(229.9%), 영국(213.6%), 이스라엘(192.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칠레(19.7%), 에스토니아(33.9%), 스웨덴(37.4%) 순으로 낮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비율 75.8%, GDP 대비 부채비율 91.1%로 19개국 중 부채비율이 낮은 편에 속함

〈표 III-3〉 발생주의 도입국가 자산, 부채 및 GDP 대비 부채비율

(단위: %)

| 연번 | 국가 | 단위 | 회계연도 말 | 총자산(A) | 총부채(B) | 부채비율 (B/A) | GDP대비 부채비율 |
|----|------|-------|-------------|---------|----------|------------|------------|
| 1 | 대한민국 | 조원 | 2019.12.31. | 2,299.4 | 1,743.7 | 75.8 | 91.1 |
| 2 | 미 국 | biUSD | 2019. 9.30. | 3,992.0 | 26,944.8 | 675.0 | 130.9 |
| 3 | 영 국 | biGBP | 2018. 3.31. | 2,013.8 | 4,579.2 | 227.4 | 213.6 |
| 4 | 호 주 | biAUD | 2019. 6.30. | 737.3 | 1,281.9 | 173.9 | 6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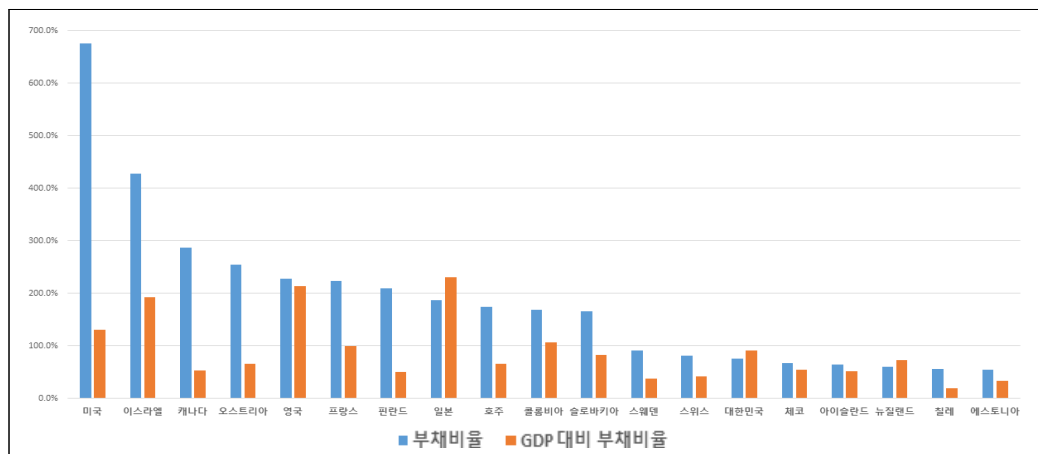
〈표 Ⅲ-3〉의 계속

| 연번 | 국가 | 단위 | 회계연도 말 | 총자산(A) | 총부채(B) | 부채비율 (B/A) | GDP대비 부채비율 |
|----|-------|-------|-------------|-----------|-------------|---------------|---------------|
| 5 | 뉴질랜드 | biNZD | 2019. 6.30. | 365.8 | 219.4 | 60.0 | 73.0 |
| 6 | 캐나다 | biCAD | 2019. 3.31. | 499.0 | 1,185.2 | 237.2 | 53.3 |
| 7 | 아이슬란드 | biISK | 2018.12.31. | 2,224.0 | 1,419.8 | 63.8 | 50.9 |
| 8 | 스웨덴 | biSEK | 2018.12.31. | 1,983.8 | 1,809.5 | 91.2 | 37.4 |
| 9 | 에스토니아 | biEUR | 2018.12.31. | 16.1 | 8.8 | 54.7 | 33.9 |
| 10 | 슬로바키아 | biEUR | 2017.12.31. | 44.7 | 74.0 | 165.6 | 82.4 |
| 11 | 이스라엘 | biILS | 2018.12.31. | 597.7 | 2,558.9 | 428.1 | 192.3 |
| 12 | 스위스 | biCHF | 2018.12.31. | 349.6 | 284.6 | 81.4 | 41.3 |
| 13 | 콜롬비아 | biCOP | 2018.12.31. | 623,017.8 | 1,050,576.3 | 168.6 | 106.6 |
| 14 | 프랑스 | biEUR | 2018.12.31. | 1,051.9 | 2347.5 | 223.2 | 99.8 |
| 15 | 오스트리아 | biEUR | 2018.12.31. | 100.3 | 254.7 | 253.9 | 66.0 |
| 16 | 핀란드 | biEUR | 2018.12.31. | 55.8 | 117.0 | 209.6 | 49.9 |
| 17 | 칠레 | biCLP | 2015.12.31. | 67,797.0 | 37,640.3 | 55.5 | 19.7 |
| 18 | 체코 | biCZK | 2015.12.31. | 4,295.9 | 2,900.8 | 67.5 | 54.5 |
| 19 | 일본 | biJPY | 2019. 3.31. | 674,668.0 | 1,258,024.7 | 186.5 | 229.9 |

주: 1. 통화는 각국 결산보고서상 통화로 표시
 2. 대한민국은 2019년 GDP, 이 외 국가는 2018년 GDP 사용
 자료: 각국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Ⅲ-1〉 국가별 부채비율 및 GDP 대비 부채 비율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국가가 인식하지 않는 국가보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는 13개국의 평균 GDP 대비 부채비율은 90.3%로, 인식하지 않는 5개국(일본 제외) 평균 58.0%보다 높게 나타남
 - 일본의 경우 국채 등 부채 비중이 높은 것과 더불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되어 해당 예탁금을 부채로 인식함에 기인하여 타(他) 미인식 국가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

3. 국가별 연금충당부채 규모: OECD 13개국 분석

-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에 인식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콜롬비아, 스위스⁷⁾ 등 총 13개국으로 조사됨

〈표 III-4〉 13개국의 연금충당부채 관련 현황

(단위: %)

| 구분 | 총자산 | 총부채 | 연금충당부채 | | |
|-----------------------------|---------|----------|---------|-------|--------|
| | | | 금액 | 총부채대비 | GDP 대비 |
| 1 대한민국(조원) 2019.12.31. | 2,299.4 | 1,743.7 | 944.2 | 54.1 | 49.3 |
| 2 미 국(biUSD) 2019.9.30. | 3,992.0 | 26,944.8 | 8,228.4 | 30.5 | 40.0 |
| 3 영 국(biGBP) 2018.3.31. | 2,013.8 | 4,579.2 | 1,865.3 | 40.7 | 87.0 |
| 4 호 주(biAUD) 2019.6.30. | 737.3 | 1,281.9 | 415.3 | 32.4 | 21.3 |
| 5 뉴질랜드(biNZD) 2019.6.30. | 365.8 | 219.4 | 13.2 | 6.0 | 4.4 |

7) 이 중 스위스는 2017년부터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함.

〈표 Ⅲ-4〉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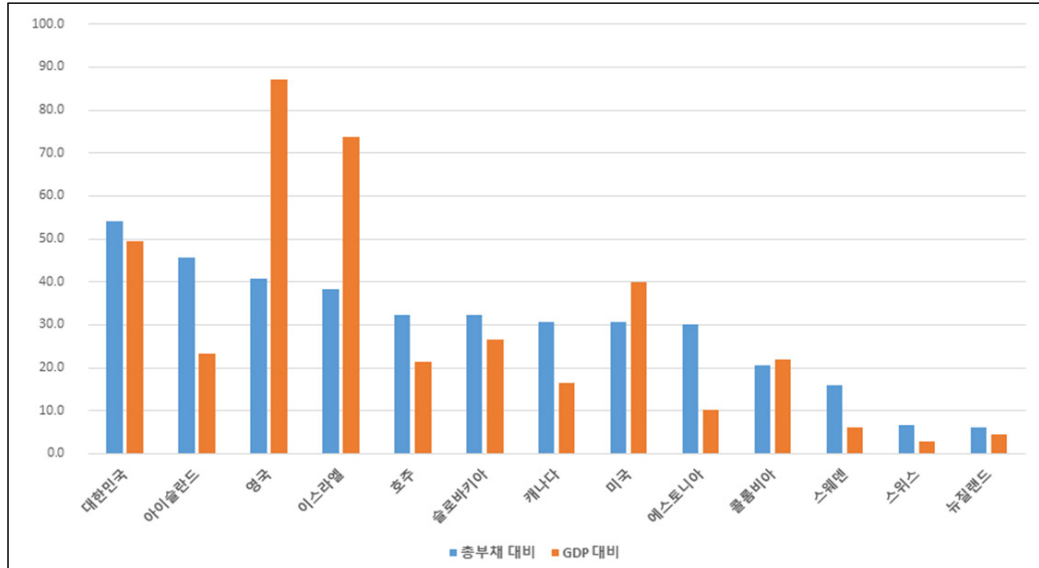
| 구분 | 총자산 | 총부채 | 연금충당부채 | | | |
|----|-----------------------------|-----------|-------------|-----------|--------|------|
| | | | 금액 | 총부채대비 | GDP 대비 | |
| 6 | 캐나다(biCAD) 2019.3.31. | 413.0 | 1,185.2 | 363.2 | 30.6 | 16.3 |
| 7 | 아이슬란드(biISK) 2018.12.31. | 2,224.0 | 1,419.8 | 647.9 | 45.6 | 23.2 |
| 8 | 스웨덴(biSEK) 2018.12.31. | 1,983.8 | 1,809.5 | 290.1 | 16.0 | 6.0 |
| 9 | 에스토니아(biEUR) 2018.12.31. | 16.1 | 8.8 | 2.6 | 30.0 | 10.2 |
| 10 | 슬로바키아(biEUR) 2017.12.31. | 44.7 | 74.0 | 23.9 | 32.3 | 26.7 |
| 11 | 이스라엘(biILS) 2018.12.31. | 597.7 | 2,558.9 | 981.7 | 38.4 | 73.8 |
| 12 | 스위스(biCHF) 2018.12.31. | 349.6 | 284.6 | 18.9 | 6.7 | 2.7 |
| 13 | 콜롬비아(biCOP) 2018.12.31. | 623,017.8 | 1,050,576.3 | 215,631.6 | 20.5 | 21.9 |

주: 1. 통화는 각국 결산보고서상 통화로 표시
 2. 대한민국은 2019년 GDP, 이 외 국가는 2018년 GDP 사용
 자료: 각국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연금충당부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개국 평균 35.1%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채의 많은 비중을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고 있음
- 총부채 대비 연금충당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대한민국(54.1%)이며, 아이슬란드(45.6%), 영국(40.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GDP 대비 연금충당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영국(87.0%)이며, 이스라엘(73.8%), 대한민국(49.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총부채 대비 연금충당부채 비율은 54.1%, GDP 대비 연금충당부채 비율은 49.3%로 13개국 중 높은 편에 속함

[그림 III-2] 국가별 총부채 및 GDP 대비 연금충당부채 비율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연금충당부채를 본문에 인식하는 국가가 사용하는 연금충당부채의 계정과목 현황은 <표 III-5>와 같음

<표 III-5> 13개국의 연금충당부채 계정과목 현황

| 구분 | 계정과목 | | |
|----|------|--|----------------------|
| | 원문 | 국문번역 | |
| 1 | 대한민국 | 연금충당부채 | 연금충당부채 |
| 2 | 미국 | Federal employee and veteran benefits payable | 연방공무원 및 군인급여 미지급금 |
| 3 | 영국 | Net public sector pension liability | 순공공부문연금부채 |
| 4 | 호주 | Provisions and Payables - Superannuation liabilities | 충당부채 및 미지급금 - 퇴직연금부채 |
| 5 | 뉴질랜드 | Retirement plan liabilities | 퇴직제도부채 |

〈표 III-5〉의 계속

| 구분 | 계정과목 | | |
|----|-------|--|------------------------|
| | 원문 | 국문번역 | |
| 6 | 캐나다 | Pensions and other future benefits - public sector pensions | 연금 및 기타급여 - 공공부문 연금 |
| 7 | 아이슬란드 | Lífeyrisskuldbindingar (Pension obligations) | 연금의무 |
| 8 | 스웨덴 | Avsättningar för pensioner och liknande förpliktelser (Provisions for pensions and similar obligations) | 연금 및 이와 유사한 충당부채 |
| 9 | 에스토니아 | Eraldised(Provisions) | 충당부채 |
| 10 | 슬로바키아 | Zamestnanecké požitky (Employee benefits) | 종업원복리후생 |
| 11 | 이스라엘 | מידבוע תויוכז ׳גב תויוכ״חחח (Liabilities in respect of workers' rights) | 종업원 급여 부채 |
| 12 | 스위스 | Employee retirement benefits | 종업원 퇴직급여 |
| 13 | 콜롬비아 | Beneficios a los empleados (Employee benefits) | 종업원 퇴직급여 |

자료: 각 국가별 결산보고서 참고

4. 연금충당부채 주식공시 국가(3개국) 및 일본

- 2016 OECD Survey를 통해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 본문에 기재하지 않고, 주석에만 공시한다고 답변한 국가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3개국으로 확인
- 상기 3개국과 부채비율이 높은 일본에 대해서 연금과 관련된 주식공시 사항을 분석

〈표 III-6〉 연금총당부채 주식공시 국가 현황

(단위: %)

| 구분 | 총자산 | 총부채 | 연금총당 부채 | GDP ¹⁾ 대비 | 총부채 대비 | 할인율 | |
|----|-----------------------------|-------|---------|----------------------|--------|------|-------|
| 1 | 프랑스(biEUR) 2017.12.31. | 1,011 | 2,272 | 2,429 | 109.0 | 51.7 | -0.55 |
| | 프랑스(biEUR) 2018.12.31. | 1,052 | 2,348 | 2,287 | 99.8 | 49.3 | -0.30 |
| 2 | 오스트리아(biEUR) 2017.12.31. | 91.0 | 253.5 | - | - | - | - |
| | 오스트리아(biEUR) 2018.12.31. | 100.3 | 254.7 | - ²⁾ | - | - | - |
| 3 | 핀란드(biEUR) 2017.12.31. | 56.4 | 118.5 | 92.6 | 42.5 | 43.9 | 2.70 |
| | 핀란드(biEUR) 2018.12.31. | 55.8 | 117.0 | 92.1 | 42.3 | 45.9 | 2.70 |



| 국가명 | 본문에 인식하지 않고 주식에만 공시한 이유 |
|--------------|--|
| 프랑스 | ○ (사유) ① 부과방식의 부채인식 문제 ② 유럽 내 비교 가능성 문제 ③ 사회정책 의무에 대한 기준부채: IPSAS 등에 명시적 기준이 부재함 (공무원연금 역시 국가의 특수한 사회정책의 일종) |
| 오스트리아 핀란드 | ○ (사유) 주식기재 사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음 |

주: 1) GDP는 각 결산보고서 회계연도 말 GDP 사용
 2) 재무제표 주식에서는 연금총당 부채를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자료: 각국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III-7〉 주식공시 3개국의 연금총당부채 계정과목 현황

| 구분 | 계정과목 | | |
|----|-------|---|--------|
| | 원문 | 국문번역 | |
| 1 | 프랑스 | Engagements de Retraite de L'ÉTAT (STATE Retirement Commitments) | 국가연금부채 |
| 2 | 오스트리아 | severance payments | 퇴직금 |
| 3 | 핀란드 | eläkevastuuvelka (pension liabilities) | 연금부채 |

자료: 각국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가. 프랑스

- 프랑스 정부회계기준 기준서 13(Recueil des Normes Comptables de l'État, RNCE)을 적용하며, 연금충당부채는 국제회계기준인 IAS 19호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
 - 국가회계위원회 권고는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나, 기준 제정 시 연금충당부채를 부속서에 표시하도록 규정
 - 정부회계기준에 따라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가 아닌 '국가약정요약서(부속서)' 및 '주석 33. 국가연금부채'와 '주석 43. 정부 약정에 적용되는 규칙과 절차'에 공시

- (주석 기재 사유) ① 부과식(PAY-AS-YOU-GO)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② 일부 국가만 인식하고 있어 유럽 내 비교 가능성이 저하 ③ IPSAS 국제기준에서 사회정책 의무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기준이 부재함을 근거로 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 역시 국가의 특수한 사회정책의 일종으로 간주함에 따른 결정이며, 국제적 기준의 개발에 따라 이러한 정책(본문 제외)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술
 - 연금충당부채의 산출방식은 민간기준(Employee Benefits)과 유사하며, 할인율은 회계연도 말 시장 가격을 사용

〈표 III-8〉 프랑스 결산보고서 주석 일부

프랑스 재무제표 주석 33

Note 33. Engagements de retraite de l'État(P.210)

En application des normes comptables en vigueur, les engagements de retraite de l'État au titre de ses fonctionnaires civils et militaires sont présentés dans l'annexe au compte général de l'État.

주석 33. 국가 연금 부채

시행 중인 회계 기준에 따라, 정부의 공무원 및 군인에 대한 국가의 퇴직 의무는 일반 정부 계정의 부속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33.1.1.2 ÉVALUATION DE L'ENGAGEMENT

33.1.1.2 약정액 평가

L'utilisation de la méthode des unités de crédit projetées conduit, avec un taux d'actualisation de - 0,30%, à un niveau des engagements d'environ 2 080 Md€, soit 91,1% du PIB. Par comparaison, les engagements au 31 décembre 2017 s'élevaient à 2 212 Md€ avec le taux d'actualisation retenu dans le CGE 2017 de - 0,55%. La valeur des engagements dépend largement du taux d'actualisation retenu, comme le montre la simulation cidessous :

| En M€ | Taux d'actualisation | | | |
|----------------|----------------------|-----------|-----------|-----------|
| | -0,30% | 0,00% | 1,00% | 1,50% |
| Engagements | 2 080 353 | 1 938 228 | 1 560 162 | 1 413 499 |
| dont retraités | 1 035 413 | 989 700 | 859 238 | 804 465 |
| dont actifs | 1 044 940 | 948 528 | 700 924 | 609 034 |

예측단위 적립방식을 적용하면 할인율은 약 -0.30%로 약정액은 약 2조 80억유로이고, 이는 GDP의 9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할인율 -0.55%로 산정한 2018년 12월 31일의 약정액은 2조 212억유로였습니다.

약정액의 가치는 다음의 시뮬레이션에 표시된 바와 같이 사용된 할인율에 크게 좌우됩니다.

| 단위: 100만 유로 | 할인율 | | | |
|-------------|-----------|-----------|-----------|-----------|
| | -0.30% | 0.00% | 1.00% | 1.50% |
| 약정 계 | 2,080,353 | 1,938,228 | 1,560,162 | 1,413,499 |
| 퇴직자 | 1,035,413 | 989,700 | 859,238 | 804,465 |
| 재직자 | 1,044,940 | 948,528 | 700,924 | 609,034 |

자료: RÉPUBLIQUE FRANÇAISE, COMPTE GÉNÉRAL DE L'ÉTAT 2018, 2019, p. 210; 213

나.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을 적용하는 국가로 IPSAS 기준서별 적용 여부를 공시하고 있음
- 연금충당부채와 관련된 IPSAS 25(Employee Benefits)를 ‘부분적으로 적용 (Partially implements)’한다고 공시

[그림 III-3] 오스트리아 IPSAS 적용 현황

| OVERVIEW OF IPSAS APPLICATION | | |
|-------------------------------|---|--|
| NO. | TITLE | APPLICATION OF STANDARD AS AT 1 JANUARY 2013 |
| IPSAS 1 |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 implemented |
| IPSAS 2 | Cash flow statements | implemented |
| IPSAS 3 |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 implemented |
| IPSAS 4 |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 | implemented |
| IPSAS 5 | Borrowing costs | implemented |
| IPSAS 6 |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 partially implemented |
| IPSAS 7 | Investments in associates | implemented |
| IPSAS 8 | Joint ventures | not applicable |
| IPSAS 9 | Exchange transactions | implemented |
| IPSAS 10 | Financial r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 | not applicable |
| IPSAS 11 | Construction contracts | not applicable |
| IPSAS 12 | Inventories | implemented |
| IPSAS 13 | Leases | implemented |
| IPSAS 14 | Events after the reporting date | implemented |
| IPSAS 15 |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 and presentation | partially implemented |
| IPSAS 16 | Investment property | not applicable |
| IPSAS 17 |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 implemented |
| IPSAS 18 | Segment reporting | implemented |
| IPSAS 19 |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 implemented |
| IPSAS 20 | Related party disclosures | implemented |
| IPSAS 21 | Impairment of non-cash-generating assets | implemented |
| IPSAS 22 | Disclosure of financial information about the general government sector | implemented |
| IPSAS 23 | Revenue from non-exchange transactions (taxes and transfers) | partially implemented |

[그림 III-3]의 계속

| | | |
|-----------------|--|-----------------------|
| IPSAS 24 | Presentation of budget information in financial statements | implemented |
| IPSAS 25 | Employee benefits | partially implemented |
| IPSAS 26 | Impairment of cash-generating assets | not applicable |
| IPSAS 27 | Agriculture | not applicable |
| IPSAS 28 |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 implemented |
| IPSAS 29 |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 partially implemented |
| IPSAS 30 |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 implemented |
| IPSAS 31 | Intangible assets | implemented |
| IPSAS 32 |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grantor | not applicable |

자료: Austrian Federal Ministry of Finance, *Opening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for the Austrian Federal Government*, 2013, p. 8

- OECD Survey상 주식공시 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나 주식에는 연금충당부채와 관련된 내용이 공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2018회계연도 오스트리아 재무제표 주식 중 연금과 관련된 목차와 주요내용은 <표 III-9>와 같음⁸⁾
 -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부분은 당기와 전기 수입, 지출 및 수지를 보여주는 <표 III-9>(12.1)과 다음 해부터 30년 예상 수입, 지출 및 수지를 보여주는 <표 III-9>(12.2), 두 가지를 공시
 - <표 III-9>(12.2)에 따라 향후 30년간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공무원연금 부족분으로 246.3biEUR를 공시하고 있음

<표 III-9> 오스트리아 연금 관련 주식

| 구분 | 제목 및 주요내용 |
|------|--|
| 12.1 | Pensionsleistungen, die der Bund zu tragen hat (UG23) 2017 und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과 2017년 공무원 대상 연금지출, 수입 및 수지를 공시 ○ (대상) 공무원, 우정국, 연방철도국, 교사 ○ 2018년(7.0biEUR), 2017년(6.8biEUR) 적자 |

8) 별도의 서술 없이 표(table)만 공시

〈표 Ⅲ-9〉의 계속

| 구분 | 제목 및 주요내용 |
|-------|---|
| 12.2 | Aufwendungen und Erträge Pensionsleistungen, die der Bund zu tragen hat (UG23) 2019 und 30 Folgejahre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대상 2019년부터 30년간 예상 수입, 지출 및 수지를 공시 ○ (대상) 공무원, 우정국, 연방철도국, 교사 ○ 전체 30년 적자액: 246.3biEUR로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99.6biEUR), 우정국(35.8biEUR), 연방철도국(58.2biEUR), 교사(52.8biEUR) |
| 12.4 | Aufwendungen und Erträge der Pensionsversicherungsträger 2018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연금제도의 2018년 수입, 비용, 수지를 공시 ○ (대상) 연금보험공단(PVA), 철도광업(VAEB), 상공업(SVA), 농민(SVB) |
| 12.6 | Voraussichtliche Aufwendungen und Erträge der Pensionsversicherungsträger - 30 Folgejahre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연금제도의 30년간 예상 수입, 비용, 수지를 공시 ○ (대상) 12.4와 동일 |
| 12.8 | Beitrag des Bundes an die gesetzlichen Pensionsversicherungsträger 2018 (UG22)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연금제도 적자 중 2018년 법정 국가부담금을 공시 ○ (대상) 12.4와 동일 |
| 12.10 | Voraussichtlicher Beitrag des Bundes an die gesetzlichen Pensionsversicherungsträger - 30 Folgejahre (UG22)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연금제도 적자 중 30년간 예상 법정 국가부담금을 공시 ○ (대상) 12.4와 동일 |

자료: Rechnungshof Österreich, *Bundesrechnungsabschluss 2018*, 2019, pp. 382~393

- 이 외 민간 연금제도에 대한 30년간 예상 부족분(852.1biEUR) 및 민간 연금제도의 법정 부담금 규모에 대한 30년 예상분(770.2biEUR) 공시

다. 핀란드

- 핀란드 「국고예산법」 및 재무부 재무원칙(valtion talousarviosta annetun lain ja asetuksen sekä)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국가연금부채는 재무제표 계상에

서 제외함

- 핀란드 역시 국가연금부채는 재무제표 계상에서 제외하고 주석13에 기재하고 있으나,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음(〈표 III-10〉 참조)
- 핀란드의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등에 비추어,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적 연금과 통합되어 관리되므로 본문에서 제외한 것으로 추정

〈표 III-10〉 핀란드 연금 관련 주석

Liite 13: Oikeiden ja riittävien tietojen antamiseksi tarvittavat muut täydentävät tiedot
주석 13: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보충 정보

Taseeseen sisällyttämättömät erät

Eläkevastuuvelkaa ei kirjata valtion taseeseen. Eläkevastuu tarkoittaa niiden eläkeoikeuksien pääoma-arvoa, jotka ovat karttuneet 31.12.2018 mennessä valtion eläketurvan piirissä. Valtion eläkevastuu oli vuoden 2018 lopussa 92,1 mrd. euroa. Eläkevastuun katteena valtion eläkerahastossa olevan omaisuuden arvo oli 18,6 mrd. euroa. Näin laskettuna vastuusta oli katettuna 20,2 %.

대차대조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연금부채는 대차 대조표에서 인식되지 않습니다. 연금부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금권리의 자본 가치를 의미합니다. 2018년 말의 국가연금부채는 921억유로였습니다. 연금기금의 자산가치는 186억유로였습니다. 이 자산으로 부채금액의 약 20.2%가 충당됩니다.

자료: Valtioneuvoston kanslia, *Tilinpäätöslaskelmat 2018, 2019*, p.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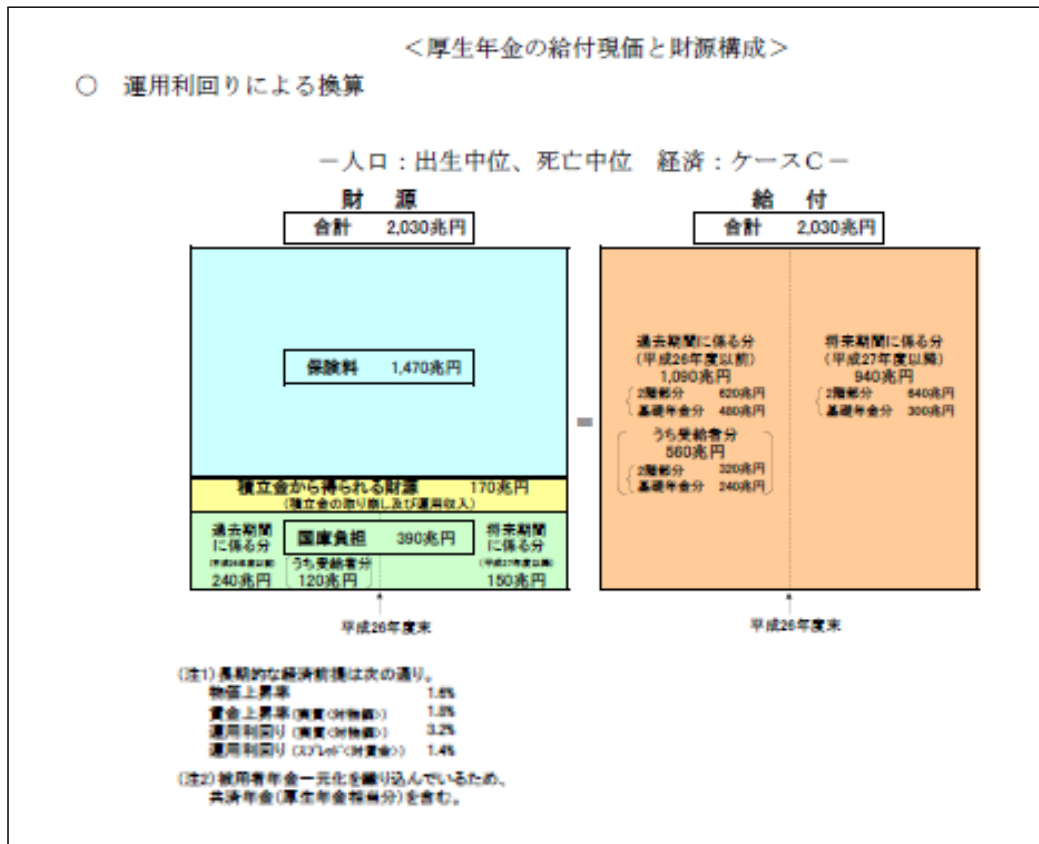
라. 일본

- 일본은 공무원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적립자산과 예치금(부채)을 인식
 - 주석을 통하여 연금부채 계상방식 및 각 시나리오별 미래 연금급여의 재원조달 구성내역(보험료, 적립금 운용, 국고부담) 공시
- [그림 III-4]의 사례는 후생연금 관련 시나리오로 미래 급여의 현재가치는 2,030조엔으로 측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재원으로 보험료 수입 1,470조엔, 적립금 운용으로

170조엔이 충당될 수 있으므로 나머지 390조엔이 국고부담이 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

- 미래 급여의 현재가치 2,030조엔은 미래 가입자에 대한 급여 지급분과, 현재가 가입자의 미래 기여금 납입에 따른 급여 지급분이 포함된 것으로, 현재까지의 가입자와 기여금 납입으로 한정할 경우 1,090조엔으로 측정되는 것을 확인 가능

[그림 III-4] 일본의 연금부채 계상 현황



자료: 財務省, 『平成30年度 国の財務書類(一般会計・特別会計)』, 2020, p. 24

IV. 주요 5개국 연금충당부채 상세 분석

- 앞서 서술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연금충당부채는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 규모에 대한 의문과 할인율 등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른 변동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금액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 이에 따라 주요 국가를 선정하여 연금충당부채의 규모, 제도, 급여의 종류, 적용 범위, 할인율 등 상세분석을 통해 직접적 비교 가능 여부와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등을 분석
 -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연금충당부채에 제기되는 의문과 문제제기에 대한 해답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 제외,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는 12개국 중 발생주의 도입 역사가 길고 재무정보의 접근성이 좋은 영미권 국가 5개국(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 대한 상세분석을 수행함

1. 연금충당부채 회계기준의 비교

- 발생주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미국과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자국 기준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국가이며, 영국과 호주는 IFRS를, 뉴질랜드는 IPSAS를 국가 회계기준으로 사용

- 우리나라와 주요 5개국 모두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 대해서 총당부채를 인식하는 회계기준을 적용, 연금총당부채에 관련 회계기준상의 차이는 크게 없음
- 주요국 전체가 미래 보수상승률을 적용하는 예측급여채무(PBO)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요국 전체가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을 적용함
 -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은 근속기간을 배분하는 예측단위 적립방식(PUCM)과 가입 연령 정상비용방식(Entry Age Normal Cost Method, EANCM)으로 구분
 -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 전체는 예측급여를 실제 근무연수로 나눠 기간을 배분한 예측단위 적립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예측단위 적립방식은 예를 들어 총 20년 근속할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이 현재 5년 근무한 경우, 미래 연금지급액 중 5년/30년 부분만 부채로 인정하는 방식임. 전체 근무기간에 걸친 근무원가가 균등하게 발생하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방식으로 국제회계기준 및 다수의 국가에서 표준으로 인정된 방식임
 - 미국의 경우 유일하게 가입연령 정상비용방식을 적용하며 연금부채를 산출하기 위한 '표준보험료'를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총연금지급액의 현재가치에서 미래표준보험료 누계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결정됨

2. 연금총당부채의 규모

- 우리나라의 연금총당부채는 2019회계연도 기준 944.2조원으로 총부채 대비 54.1%, GDP 대비 49.3%로 타(他) 국가 대비 연금총당부채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총부채 대비 비율은 영국(40.7%), 호주(32.4%), 캐나다(30.6%), 미국(30.5%), 뉴질랜드(6.0%) 순으로 나타나며, GDP대비 비율은 영국(87.0%), 미국(40.0%), 호주(21.3%), 캐나다(16.3%), 뉴질랜드(4.4%) 순으로 확인

〈표 IV-1〉 대한민국 및 주요 5개국 연금총당부채 현황

(단위: %)

| 구분 | 총자산 | 총부채 | 연금총당부채 | | | |
|----|---------------------------|---------|----------|---------|--------|------|
| | | | 금액 | 총부채대비 | GDP 대비 | |
| 1 | 대한민국(조원) 2019.12.31. | 2,299.4 | 1,743.7 | 944.2 | 54.1 | 49.3 |
| 2 | 미 국(biUSD) 2019.9.30. | 3,992.0 | 26,944.8 | 8,228.4 | 30.5 | 40.0 |
| 3 | 영 국(biGBP) 2018.3.31. | 2,013.8 | 4,579.2 | 1,865.3 | 40.7 | 87.0 |
| 4 | 호 주(biAUD) 2019.6.30. | 737.3 | 1,281.9 | 415.3 | 32.4 | 21.3 |
| 5 | 뉴질랜드(biNZD) 2019.6.30. | 365.8 | 219.4 | 13.2 | 6.0 | 4.4 |
| 6 | 캐나다(biCAD) 2019.3.31. | 499.0 | 1,185.2 | 363.2 | 30.6 | 16.3 |

주: 1. 통화는 각국 결산보고서상 통화로 표시
 2. 대한민국은 2019년 GDP, 이 외 국가는 2018년 GDP 사용
 자료: 각국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단순 비교 시 우리나라의 연금총당부채는 총부채 비율이 가장 높고, GDP 대비 비율은 두 번째로 높게 표시됨
- 우리나라의 연금총당부채가 적정하게 산출되고 있는 것인지 그 규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각 국가별 규모에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분석을 수행함

가. 확정급여형 제도의 종료

- (호주) 총부채 대비 32.4%, GDP 대비 21.3% 수준으로 연금총당부채가 적게 계상되고 있으나, 이는 기존 확정급여형 제도를 종료함으로써 신규 가입을 받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 (공무원) 연방 퇴직연금제도(CSS), 공공부문 퇴직연금제도(PSS)의 경우 신규 가입이 제한되어 있고 공공 부문 퇴직 연금 계획(PSSap)이 2005년 7월 1일 신설

- CSS와 PSS는 확정급여제도이나, PSSap는 호주 정부의 책임이 없는 완전적립 방식으로 운영
- (군인) 확정급여형 제도인 DFDRB(Defence Force Retirement and Death Benefits Scheme) 또는 MSBS(Military Superannuation Benefits Scheme)에 가입하였으나, DFDRB는 1991년에, MSBS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이후 입대하는 군인은 적립방식인 ADF Super 제도에 가입

〈표 IV-2〉 호주 확정급여 퇴직연금제도 주석 일부

Note 10C: Defined benefit superannuation plans
주석 10C: 확정급여 퇴직연금제도

Overview of schemes 제도 개요

Civilian GGS employees will usually be members of the Commonwealth Superannuation Scheme (CSS), Public Sector Superannuation Scheme (PSS) or the Public Sector Superannuation Accumulation Plan (PSSap). The PSS and the CSS are closed to new members, with the PSSap available to most new employees who commenced employment on or after 1 July 2005. The CSS and PSS provide defined benefits. The PSSap provides fully funded accumulation benefits to members, with no ongoing liability to the Australian Government.

정부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CSS, PSS 또는 PSSap의 구성원이 됩니다. PSS와 CSS는 신규 가입을 받지 않으며, PSSap는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되었으며,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CSS와 PSS는 확정급여형 제도입니다. PSSap는 호주 정부의 책임 없이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합니다.

Australian Government military personnel are members of the Defence Force Retirement and Death Benefits Scheme (DFRDB) or the Military Superannuation Benefits Scheme (MSBS). Both schemes are defined benefit schemes. The DFRDB was closed to new members in 1991. The MSBS was closed to new members from 1 July 2016. Military personnel who entered on or after 1 July 2016 are part of ADF Super, an accumulation scheme.

호주 정부의 군인은 DFRDB 또는 MSBS에 가입합니다. 두 제도 모두 확정급여형입니다. DFDRB는 1991년부터, MSBS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2016년 7월 1일 이후 입대한 군인은 ADF Super 제도에 가입합니다.

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2019*, 2019, p. 154

- (뉴질랜드) 총부채 대비 6.0%, GDP 대비 4.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 연금총당부채로 계상되고 있음
 - 1992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확정급여형제도인 정부연금기금(GSF)에 대한 연금 지급 의무에 한하여 계상
 - 신규 가입 종료에 따라 기여자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종료 시점이 오래 됨에 따라(27년) 수급자 수도 천천히 줄어들고 있음

〈표 IV-3〉 뉴질랜드 퇴직연금 주석 일부

| NOTE 20. Retirement Plan / 주석 20. 퇴직연금 |
|--|
| <p>The Government operates a defined benefit superannuation plan for qualifying employees who are members of the Government Superannuation Fund (GSF). (중략) GSF has been closed to new members since 1 July 1992.</p> <p>정부는 정부연금기금(GSF)의 회원으로 가입된 자격 있는 가입자를 위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연금기금제도는 1992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들에게는 가입이 제한되었습니다.</p> |

자료: Government of New Zealand, *Financial Statements 2019*, 2019, p. 102

[그림 IV-1] 뉴질랜드 GSF 기여자, 수급자 등 가입자 변화 현황

Movement in total number of members during the past five years:

| Year ended 30 June | Total Contributors | Total Annuitants | Total Deferred Pensions | Total Members | Decrease During Year |
|-----------------------|-----------------------|---------------------|-------------------------------|------------------|----------------------------|
| 2015 | 9,767 | 45,967 | 4,827 | 60,561 | (1,500) |
| 2016 | 9,060 | 45,635 | 4,508 | 59,203 | (1,358) |
| 2017 | 8,356 | 45,279 | 4,115 | 57,750 | (1,453) |
| 2018 | 7,743 | 44,834 | 3,739 | 56,316 | (1,434) |
| 2019 | 7,136 | 44,417 | 3,323 | 54,876 | (1,440) |

자료: Government Superannuation Fund Authority,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2019*, 2019, p. 25

나. 연금 제도자산의 적립

-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고는 연금충당부채 총액에서 연금 제도자산(적립금)을 차감한 순액으로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재무제표상 연금충당부채는 연금 제도자산의 크기만큼 적어지므로 총부채 및 GDP 대비 연금충당부채 비중이 낮게 나타남
- 국가 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제도자산 차감 전과 차감 후의 연금충당부채를 모두 표시하면 <표 IV-4>와 같음

<표 IV-4> OECD 주요국 연금충당부채 총액과 제도자산 현황

(단위: %)

| 구분 | 연금충당부채 | | | 총부채 대비 | | GDP 대비 | | |
|----|---------------------------|---------|--------------------|---------|------|--------|-------|------|
| | 총액 | 제도자산 | 순액 | 총액 | 순액 | 총액 | 순액 | |
| 1 | 한 국(조원) 2019.12.31. | 944.2 | 20.1 ¹⁾ | 924.1 | 54.2 | 53.0 | 49.3 | 48.3 |
| 2 | 미 국(biUSD) 2019.9.30. | 8,228.4 | - | 8,228.4 | 30.5 | | 40.0 | |
| 3 | 영 국(biGBP) 2018.3.31. | 2,196.0 | 330.7 | 1,865.3 | 48.0 | 40.7 | 102.4 | 87.0 |
| 4 | 호 주(biAUD) 2019.6.30. | 457.7 | 42.4 | 415.3 | 35.7 | 32.4 | 23.5 | 21.3 |
| 5 | 뉴질랜드(biNZD) 2019.6.30. | 17.7 | 4.5 | 13.2 | 8.1 | 6.0 | 5.9 | 4.4 |
| 6 | 캐나다(biCAD) 2019.3.31. | 532.2 | 169.0 | 363.2 | 44.9 | 30.6 | 23.9 | 16.3 |

주: 1) 공무원연금 18.9조원, 군인연금 1.2조원
 자료: 각국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은 연금 지급을 위한 제도자산을 연금충당부채의 9.3%에서 31.8%까지 쌓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1% 수준으로 약 20.1조원이 제도자산으로 공시됨

- 특히 캐나다와 영국의 경우 제도자산이 적립된 수준이 높아 순부채로 표시되는 연금충당부채가 적게 계상됨
 - (캐나다) 연금충당부채 총액은 532.2(biCAD)이며, 제도자산의 공정가치는 169.0(biCAD)로 연금충당부채 총액만으로 계산하면 총부채 대비 비중(30.6→44.9%)과 GDP 대비 비중(16.3→23.9%)이 증가
 - (영국) 연금충당부채 총액은 2,196.0(biGBP)이며, 제도자산의 공정가치는 330.7(biGBP)로 연금충당부채 총액만으로 계산하면 총부채 대비 비중(40.7→48.0%)과 GDP 대비 비중(87.0→102.4%)이 증가

-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도자산을 운용하는 국가 모두 연금충당부채를 순액으로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도 순액 표시를 추진할 필요
 - 기금 고갈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액(2.1%)이나, 금액적 중요성보다 민간 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 개정
 - 과거 공무원연금기금의 목적 외 사용이력 등 독립적 지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

다. 연금충당부채에 포함되는 급여 종류

-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 회계처리지침」 문단 4에 따라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에서 ‘장해급여’, ‘퇴직수당’ 등은 제외하고 있으며,⁹⁾ 퇴직수당은 ‘퇴직수당충당부채(2019 회계연도 48.4조원)’로 연금충당부채와 분리하여 공시함

- 이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건강, 생명, 산재급여 등도 모두 포함하여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9) 군인연금의 경우 상이연금은 산정대상에 포함됨

- 우리나라와 유사한 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충당부채는 6조 9,831 억달러로 재무제표 계상 금액의 82.7% 수준

〈표 IV-5〉 미국 종업원급여(연방 근로자 및 군인) 총액

(단위: 십억달러)

| 급여 구분 | 공무원 | | 군인 | | 합계 | |
|--------------|----------------|----------------|----------------|----------------|----------------|----------------|
| | 2019 | 2018 | 2019 | 2018 | 2019 | 2018 |
| 퇴직연금 급여 | 2,094.1 | 2,048.9 | 1,759.2 | 1,621.3 | 3,853.3 | 3,670.2 |
| 퇴역군인 보상/장례급여 | N/A | N/A | 3,129.8 | 2,956.3 | 3,129.8 | 2,956.3 |
| 퇴직자 건강보험급여 | 415.1 | 403.3 | 830.2 | 787.0 | 1,245.3 | 1,190.3 |
| 퇴역군인 교육급여 | N/A | N/A | 105.9 | 65.7 | 105.9 | 65.7 |
| 생명보험 급여 | 54.6 | 54.9 | 5.7 | 6.3 | 60.3 | 61.2 |
| 산재보험 급여 | 29.6 | 27.3 | 8.2 | 8.3 | 37.8 | 35.6 |
| 기타 급여 | 1.4 | 1.2 | 6.5 | 1.8 | 7.9 | 3.0 |
| 총 급여 | 2,594.8 | 2,535.6 | 5,845.5 | 5,446.7 | 8,440.3 | 7,982.3 |

자료: Department of the Treasury,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0, p. 99

라.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 범위

- 우리나라와 주요 5개국 모두 국가 혹은 중앙정부의 결산보고서로 명명하여 공시하나 국가별로 포괄 범위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이 되는 공무원과 군인의 범위가 상이함
 - 대표적으로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을 모두 포함한 통합 결산서를 제공하고, 미국은 주정부를 제외한 연방정부에 대한 결산서를 제공
 - 이에 따라 연금충당부채 금액도 결산서의 포괄 범위가 넓을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각국 결산서와 연금충당부채의 포괄 범위에 대해서는 '5. 결산보고서의 포괄 범위와 연금충당부채'에서 자세히 서술함

3. 연금총당부채 금액의 신뢰성

- 우리나라 2019회계연도 연금총당부채는 현재 944.2조원으로 2013회계연도 596.3조원에서 347.9조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액 중 약 204.0조원이 보험수리적 손익으로 확인됨
 - 할인율 하락에 따라 302.7조원이 증가되었으며, 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 변동에 따라 98.7조원 감소
 - 재직자 근무에 따른 당기근무원가는 같은 기간 153.9조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자원가는 137.7조원 발생
- 6년간 증가액 347.9조원 중 58.6%인 204.0조원이 보험수리적 손익으로 나타남에 따라 연금총당부채 금액에 신뢰성 문제가 제기됨
 - 특히 2019회계연도에는 최신 가정(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을 반영함에 따라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논란이 발생

〈표 IV-6〉 한국 연금총당부채 증감액 세부 내역(FY2013~FY2019)

(단위: 조원, %)

| 국가 | 구분 | FY2013 | FY2014 | FY2015 ¹⁾ | FY2016 | FY2017 | FY2018 | FY2019 |
|----|-------------|--------|--------|----------------------|--------|--------|--------|--------|
| 한국 | 연금총당부채 | 596.3 | 643.6 | 659.9 | 752.6 | 845.8 | 939.9 | 944.2 |
| | 증감액(A) | - | 47.3 | 16.3 | 92.7 | 93.2 | 94.1 | 4.3 |
| | 연금비용 | - | 42.4 | △7.5 | 45.1 | 49.4 | 53.8 | 56.0 |
| | 보험수리(B) | - | 17.6 | 37.8 | 62.2 | 59.3 | 56.8 | △34.1 |
| | 급여지급 | - | △12.7 | △14.0 | △14.6 | △15.5 | △16.5 | △17.6 |
| | 가정변경비중(B/A) | - | 37.2 | 231.9 | 67.1 | 63.6 | 60.4 | 793.0 |

주: 1) FY2015 연금비용은 연금개혁에 따라 과거근무원가 △52.5조원 반영
 자료: FY2013~FY2019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연금총당부채 금액이 할인율, 임금상승률 등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라 급변하는 것이 신뢰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요 5개국의 현황을 조사함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같은 기간 연금충당부채 증감액 대비 보험수리적 가정 변경에 따른 증감액 비중을 분석

〈표 IV-7〉 주요국의 연금충당부채 증감액 대비 보험수리적 손익 비중

(단위: %)

| 구분 | 연금충당부채(총액) | | | 보험수리적 손익 누계 | | |
|----|---------------------------|---------------|--------------|-------------|---------|-------|
| | FY2019 (A) | FY2013 (B) | 증감액 (A-B) | 금액 | 비중 | |
| 1 | 대한민국(조원) 2019.12.31. | 944.2 | 596.3 | 347.9 | 199.6 | 57.4 |
| 2 | 미 국(biUSD) 2019.9.30. | 8,228.4 | 6,441.2 | 1,787.2 | 1,111.0 | 62.2 |
| 3 | 영 국(biGBP) 2018.3.31. | 2,196.0 | 1,392.3 | 803.7 | 460.7 | 57.3 |
| 4 | 호 주(biAUD) 2019.6.30. | 457.8 | 224.4 | 233.4 | 169.1 | 72.5 |
| 5 | 뉴질랜드(biNZD) 2019.6.30. | 17.7 | 15.3 | 2.4 | 5.0 | 208.4 |
| 6 | 캐나다(biCAD) 2019.3.31. | 532.2 | 342.0 | 190.2 | 135.2 | 71.1 |

주: 1. 연금충당부채는 관련 자산을 차감하기 전 총액으로 계산

2. 영국은 FY2018 자료로 작성

자료: 각국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013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 증감액 중 보험수리적 손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연금충당부채 금액이 적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약 57~73% 정도로 확인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60%에 다다른다는 이유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는 연금충당부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모든 국가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 단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볼 경우 보험수리적 손익에 따른 변동폭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미국) 2016, 2017회계연도에 보험수리적 손익의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확인
- (영국) 2016회계연도에는 1,283억파운드 감소, 2017회계연도는 4,053억파운드 증가 및 2018회계연도 345억파운드 감소 등 매년 추정 변경에 따른 보험수리적 손익 금액의 변동이 큼

□ 이와 같은 변동의 원인은 주로 재정상태표일에 추정하는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표 IV-8〉 주요국의 연금총당부채 증감액 세부내역(FY2013~FY2019)

(단위: %)

| 국가 | 구분 | FY2013 | FY2014 | FY2015 | FY2016 | FY2017 | FY2018 | FY2019 |
|-------------------|-------------|---------|---------|---------|---------|---------|---------|---------|
| 미국 bi USD | 총당부채 | 6,441.2 | 6,574.7 | 6,622.0 | 7,049.6 | 7,549.1 | 7,816.8 | 8,228.4 |
| | 증감액(A) | - | 133.5 | 47.3 | 427.6 | 499.5 | 267.7 | 411.6 |
| | 연금비용 | - | 377.0 | 355.0 | 338.7 | 370.6 | 388.4 | 404.4 |
| | 보험수리(B) | - | △6.1 | △59.3 | 342.3 | 391.2 | 151.2 | 291.7 |
| | 급여지급 | - | △237.4 | △248.4 | △253.4 | △262.3 | △271.9 | △284.5 |
| | 가정변경비중(B/A) | - | 4.6 | 125.4 | 80.1 | 78.3 | 56.5 | 70.9 |
| 영국 bi GBP | 총당부채 | 1,392.3 | 1,532.1 | 1,756.5 | 1690.7 | 2153.9 | 2196.0 | |
| | 증감액(A) | - | 139.8 | 224.4 | △65.8 | 463.2 | 42.1 | |
| | 연금비용 | - | 89.9 | 126.6 | 112.3 | 108.7 | 130.9 | |
| | 보험수리(B) | - | 83.5 | 134.7 | △128.3 | 405.3 | △34.5 | |
| | 급여지급 | - | △33.6 | △36.9 | △49.8 | △50.8 | △54.3 | |
| | 가정변경비중(B/A) | - | 59.7 | 60.0 | 195.0 | 87.5 | 81.9 | |
| 호주 mi AUD | 총당부채 | 224,442 | 255,498 | 284,438 | 351,293 | 317,711 | 353,877 | 457,757 |
| | 증감액(A) | - | 31,056 | 28,940 | 66,855 | △33,582 | 36,166 | 103,880 |
| | 연금비용 | - | 23,911 | 17,345 | 18,374 | 19,085 | 17,897 | 19,341 |
| | 보험수리(B) | - | 14,793 | 20,128 | 56,699 | △43,842 | 27,241 | 94,126 |
| | 급여지급 | - | △7,648 | △8,534 | △8,217 | △8,825 | △8,972 | △9,587 |
| | 가정변경비중(B/A) | - | 47.6 | 69.6 | 84.8 | 130.6 | 75.3 | 90.6 |
| 뉴질랜드 mi NZD | 총당부채 | 15,290 | 14,560 | 14,932 | 16,406 | 15,272 | 15,558 | 17,692 |
| | 증감액(A) | - | △730 | 372 | 1,474 | △1,134 | 286 | 2,134 |
| | 연금비용 | - | 496 | 602 | 499 | 415 | 358 | 330 |

〈표 IV-8〉의 계속

| 국가 | 구분 | FY2013 | FY2014 | FY2015 | FY2016 | FY2017 | FY2018 | FY2019 |
|-------------------|-------------|---------|---------|---------|---------|---------|---------|---------|
| 뉴질랜드 mi NZD | 보험수리(B) | - | △365 | 647 | 1,846 | △675 | 810 | 2,697 |
| | 급여지급 | - | △861 | △877 | △871 | △874 | △882 | △893 |
| | 가정변경비중(B/A) | - | 50.0 | 173.9 | 125.2 | 59.5 | 283.2 | 126.4 |
| 캐나다 mi CAD | 총당부채 | 342,013 | 336,534 | 378,726 | 453,993 | 461,186 | 483,778 | 532,216 |
| | 증감액(A) | - | △5,479 | 42,192 | 75,267 | 7,193 | 22,592 | 48,438 |
| | 연금비용 | - | 24,825 | 24,863 | 26,001 | 24,635 | 26,992 | 28,672 |
| | 보험수리(B) | - | △14,516 | 33,286 | 65,319 | △984 | 13,868 | 38,178 |
| | 급여지급 | - | △15,788 | △15,957 | △16,053 | △16,458 | △18,268 | △18,412 |
| | 가정변경비중(B/A) | - | 264.9 | 78.9 | 86.8 | 13.7 | 61.4 | 78.8 |

주: 연금총당부채는 관련 자산을 차감하기 전 총액으로 계산
 자료: 각국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연금총당부채가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라 변동폭이 큰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주요국 모두 공통적인 사항으로 확인됨
 - 이는 보통 70년 이상의 장기간의 추정이 동반되는 연금총당부채 산정 방식에 따른 불가피한 일로 신뢰성이 손상되는 문제는 아님
 -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감도가 큰 할인율에 대해서 민감도를 주석으로 공시하고, 보험수리적 손익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우리나라의 경우 순자산조정)으로 인식

4. 재무적 가정 중 할인율 비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금총당부채 산정 시 약 70년 이상의 추정치를 적용하므로,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은 연금총당부채 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침
 - 우리나라의 경우 할인율 0.5% 하락 시 연금총당부채 109.2조원(약 11.6%)이 증가하는 수준의 민감도를 가짐

- 따라서 IPSAS 등 회계기준에서는 할인율을 산정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음
 - ① 할인율은 우량회사채 또는 국공채를 적용하며 ② 예상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지급 시기별 복수할인율을 원칙으로 하되, 기중평균한 단일 할인율을 사용할 수 있으며 ③ 보고기간 말 시점의 할인율을 사용하여야 하며 ④ 최장 만기 이후의 할인율은 추정수익률 곡선을 통해 추정하여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③, ④의 항목에서 일반적인 규정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¹⁰⁾ 주요 5개국의 할인율 규정을 분석함

가. 미 국

- (회계기준) SFFAS 33(Pensions, Other Retirement Benefits, and Other Post-employment Benefits)
 - 동일한 만기의 ‘국채 수익률(interest rates on marketable Treasury securities)’에 기초하여 각 시점의 현금흐름에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단일의 할인율 사용 가능(SFFAS 33 문단 28)
 - 보고일 현재의 할인율은 현재 또는 최근의 경험치에 과도한 가중치를 부여하기 보다는 역사적 할인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최소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함(SFFAS 33 문단 29~30)
 - 최장 만기 초과 시 보간하거나 추론(interpolated or extrapolated)하여야 함(SFFAS 33 문단 32)

10) ③ 보고기간 말 할인율이 아닌 과거 10년 평균 할인율 사용 ④ 추정수익률 곡선으로 추정하지 않고, 20년 만기 할인율을 일괄 적용

□ 결산보고서

- SFFAS 33에 따라 연금충당부채 산정을 위한 경제적 가정은 10년의 '역사적 평균 (10-year historical averages)'을 기준으로 하며, 2019회계연도(2019. 9. 30.) 기준 2019년 3월까지의 4분기 평균을 기준으로 한 산출 곡선에서 할인율 산출
- 2014년 7월부터 TNC(Treasury Nominal Coupon Issues) 수익률 곡선을 통해 30년에서 100년까지의 할인율 추정
 - 2014년 이전에는 30년 이후는 30년 만기 할인율을 일괄 적용
-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제도별 단일 할인율 제시

[그림 IV-2] 연금부채 등에 사용되는 경제적 가정(미국)

| | Civilian | | | | Military | |
|----------------------------------|----------|-------|-------|-------|----------|-------|
| | 2019 | | 2018 | | 2019 | 2018 |
| | FERS | CSRS | FERS | CSRS | | |
| Rate of interest | 3.50% | 2.90% | 3.60% | 3.00% | 3.40% | 3.50% |
| Rate of inflation | 1.60% | 1.60% | 1.60% | 1.60% | 1.80% | 1.50% |
| Projected salary increases | 1.10% | 1.10% | 1.30% | 1.30% | 1.80% | 2.00% |
| Cost of living adjustment | 1.30% | 1.60% | 1.40% | 1.60% | 1.80% | 1.50% |

자료: Department of the Treasury,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0, p. 101

나. 영국

□ (회계기준) IAS 19(Employee Benefits)

-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공채의 시장수익률 사용 가능
- 할인율에는 퇴직급여의 예상 지급시기가 반영되어야 하며, 실무적으로 지급시기가 반영된 단일의 가중평균 할인율을 적용
- 지급시기가 늦은 급여액에 대해서는 예상 지급시기까지 현행 시장수익률을 합리적으로 확장하여 추정한 할인율을 적용

□ 결산보고서

- IFRS에 따라 보고기간 말 우량 회사채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매년 보
 험계리사에 의해 갱신됨
- 미적립식 제도의 할인율은 재무부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하여 조정된 회
 사채 수익률 사용, 적립식 제도의 할인율은 우량 회사채를 기반으로 각 제도의
 계리사가 결정
-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제도별 단일 할인율 제시

[그림 IV-3] 연금부채 등에 사용되는 경제적 가정(영국)

| | 2017-18 Unfunded central government ² % | 2017-18 Unfunded local government ³ % | 2017-18 Funded local government % | 2016-17 Unfunded central government % | 2016-17 Unfunded local government % | 2016-17 Funded local government % |
|--|--|--|---|---|---|---|
| Rate of increase in salaries ⁴ | 3.95 | 1.0-4.3 | 2.4-4.2 | 4.55 | 1.0-5.1 | 1.0-4.4 |
| Rate of increase in pensions in payment ⁵ | 2.45 | 1.8-4.3 | 1.8-3.8 | 2.55 | 1.0-4.4 | 2.0-3.5 |
| Discount rate – real ⁶ | 0.1 | - | - | 0.24 | - | - |
| Discount rate – Nominal | 2.55 | 1.8-10.0 | 2.3-3.4 | 2.8 | 1.7-10.0 | 2.4-3.6 |
| Price inflation assumption | 2.45 | 1.00-3.6 | 1.0-3.8 | 2.55 | 1.0-3.6 | 1.5-3.7 |

자료: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18*, 2019, p. 116

다. 호주

□ (회계기준) AASB 119(Employee Benefits)

- 호주 정부 회계기준은 IFRS와 거의 유사하나 특정 부분에서 별도로 다르게 규
 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 문단을 추가 제정하는 방식으로 규정

- AASB 119의 할인율 규정에서도 IAS 19의 문단에서 하나의 추가 문단을 제정
- 호주 통화로 표시되는 비영리 공공부문 실체의 퇴직급여는 우량 회사채가 아닌 국공채 수익률을 사용하여 할인(Aus83.1)

[그림 IV-4] AASB 119 할인율 추가 문단

Aus83.1 Notwithstanding paragraph 83, in respect of not-for-profit public sector entities, post employment benefit obligations denominated in Australian currency shall be discounted using market yields on government bonds.

자료: AASB,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 119: Employee Benefits*, 2011.

□ 결산보고서

- AASB 119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국공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결정하였으며, 우량 회사채로 할인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의 경우 통합 과정에서 조정
-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제도별 단일 할인율 제시

[그림 IV-5] 연금부채 등에 사용되는 경제적 가정(호주)

| Scheme | 2019 | | | | |
|--|------------|------------|--------------|-------------|--------------|
| | CSS \$m | PSS \$m | DFRDB \$m | MSBS \$m | Other \$m |
| Principal actuarial assumptions at the reporting date | | | | | |
| Discount rate (active members) | 1.7% | 1.9% | 1.4-1.9% | 1.9% | 1.9-3.4% |
| Discount rate (pensioners) | 1.7% | 1.9% | 1.4-1.9% | 1.9% | 1.9% |
| Expected rate of return on plan assets | - | - | - | 1.9% | - |
| Expected salary increase rate | 2.0% | 2.0% | 4.0% | 4.0% | 2.0-4.0% |
| Expected pension increase rate | 2.5% | 2.5% | 2.5-4.0% | 2.5% | 2.3-4.0% |

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2019*, 2019, p. 159

라. 뉴질랜드

- (회계기준) PBE IPSAS 39(Employee Benefits)
 - 할인율은 시간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할인율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나열함(국공채 수익률, 우량 회사채 등)
 - 예상 지급시기 및 금액을 반영하여 유사 만기별 현재시점의 개별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며, 지급시기가 반영된 단일 가장 평균 할인율을 사용하여 이를 달성
 - 충분히 긴 만기의 시장이 없는 경우 금리곡선을 추정(extrapolating)하여 산정

- 결산보고서
 - 현재가치 할인율은 뉴질랜드 국채의 시장 수익률 곡선을 기반으로 한 무위험 이자율을 적용
 - 일정기간 이후의 평형 무위험 이자율을 가정(2019FY: 4.30%)하고 최소 10년에 해당하는 이자율 적용
 -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지급시기별 할인율 제시

[그림 IV-6] 연금부채 등에 사용되는 경제적 가정(뉴질랜드)

(단위: %)

| | Actual | |
|---|--------------|--------------|
| | 30 June 2019 | 30 June 2018 |
| Summary of assumptions | | |
| <i>For following year</i> | | |
| Discount rate | 1.3 | 1.8 |
| Expected return on plan assets | 5.0 | 5.0 |
| Expected rate of salary increases | 2.5 | 2.5 |
| Expected rate of inflation | 1.7 | 1.7 |
| <i>Beyond next year</i> | | |
| Discount rates between 2 and 21 years | 1.0 to 2.7 | 1.9 to 4.0 |
| Discount rates between 22 and 29 years | 2.8 to 3.1 | 4.0 to 4.4 |
| Discount rates between 30 and 36 years | 3.2 to 3.5 | 4.4 to 4.7 |
| Discount rates between 37 and 52 years | 3.5 to 4.3 | 4.8 |
| Discount rate from 53 years onwards | 4.3 | 4.8 |
| Expected return on plan assets | 5.0 | 5.0 |
| Expected rate of salary increases | 2.5 | 2.5 |
| Expected rate of inflation from years 2 to 18 | 1.7 | 1.7 |

자료: Government of New Zealand, *Financial Statements 2019*, 2019, p. 104

마. 캐나다

□ (회계기준) CICA Handbook 3250(retirement benefits)

- 제도자산의 수익률 또는 발행한 국채 수익률 중 선택 가능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 결산보고서

- (적립연금) 기금의 연속 기대수익률
- (미적립연금 및 기타 급여) 캐나다 국공채의 실질적 무위험 수익률 곡선에서 도출되는 미래 현금흐름 시점이 반영된 수익률
 - 2017회계연도까지는 미적립연금의 경우 국공채의 연속(20년) 가중평균 이자율을 적용
-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제도별 단일 할인율 제시

[그림 IV-7] 연금부채 등에 사용되는 경제적 가정(캐나다)

(단위: %)

| | 2019 | | 2018 | |
|---|-----------------------------|-------------------------------|-----------------------------|-------------------------------|
| | Accrued benefit obligations | Benefit and interest expenses | Accrued benefit obligations | Benefit and interest expenses |
| Discount rates | | | | |
| Funded pension benefits ¹ | 5.8 | 5.0 | 5.8 | 4.8 |
| Unfunded pension benefits ² | 1.9 | 2.2 | 2.2 | 2.2 |
| Other employee and veteran future benefits ² | 1.9 | 2.2 | 2.2 | 2.4 |
| Expected rate of return on investments..... | - | 5.0 | - | 4.8 |
| Long-term rate of inflation..... | 2.0 | 2.0 | 2.0 | 2.0 |
| Long-term general wage increase..... | 2.6 | 2.6 | 2.6 | 2.6 |
| Assumed health care cost trend rates | | | | |
| Initial health care cost trend rate..... | 5.5 | 5.9 | 5.9 | 5.4 |
| Cost trend rate is expected to stabilize at..... | 4.8 | 4.8 | 4.8 | 4.8 |
| Year that the rate is expected to stabilize..... | 2029 | 2028 | 2028 | 2027 |

자료: Government of Canada, *Public Accounts of Canada 2019*, 2019, p. 77

바. 종합

- IPSAS 등 회계기준의 할인율을 산정하는 일반적인 규정인 ① 할인율 종류 ② 예상 지급시기 고려 여부 ③ 평균할인율 사용 여부 ④ 최장만기 초과 시 추정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주요국의 규정을 정리하면 <표 IV-9>와 같음

<표 IV-9> 주요국의 연금총당부채 할인율 관련 현황 비교

| 구분 | 자국 회계기준 | | | IFRS or IPSAS | | |
|-----------|-----------|-------------------------|-----------------------------|---------------|---------------|---------------|
| | 한국 | 미국 | 캐나다 | 영국 | 호주 | 뉴질랜드 |
| ① 할인율 종류 | 국공채 | 국공채 | 국공채 | 우량회사채 | 국공채 | 국공채 우량회사채 |
| ② 예상 지급시기 | 고려 | 고려 | 고려 | 고려 | 고려 | 고려 |
| | 표시형태 | 지급시기별 | 단일 | 단일 | 단일 | 단일 |
| ③ 평균 할인율 | 10년 평균 | 10년 평균 | X ²⁾ (보고기간 말) | X (보고기간 말) | X (보고기간 말) | X (보고기간 말) |
| ④ 최장만기 초과 | 20년 만기 적용 | 100년까지 추정 ¹⁾ | 추정 | 추정 | 추정 | 추정 |
| 적용 할인율 | 2.3~3.1% | 2.9~3.6% | 1.9% | 2.55% | 1.4~1.9% | 1.0~4.3% |

주: 1) 2014년 이후 할인율 적용방식 개선
 2) 2017회계연도까지 20년 평균 적용
 자료: 각국 결산보고서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등 자국 회계기준을 제정한 국가는 국공채로, IFRS 또는 IPSAS를 회계기준으로 하는 국가는 민간 기준과 동일하게 우량 회사채를 할인율로 규정
 - 단 호주의 경우 비영리 공공부문 실체는 국공채로 할인하도록 별도 규정하였으며, 뉴질랜드는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에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음
- 주요 5개국 모두 예상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할인율을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결산보고서상 이와 동일한 현재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단일 할인율 형태로 표시한 국가가 대다수임

-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만 지급시기별로 할인율 표시
- 우리나라가 일반적인 규정과 차이를 보이는 평균할인율의 사용과 최장 만기 초과 시 할인율 적용 방법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미국을 제외하고 주요국 모두 보고기간 말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장 만기를 초과할 경우 추정하지 않고 만기 할인율을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표 IV-10〉 만기에 따른 국고채 수익률의 과거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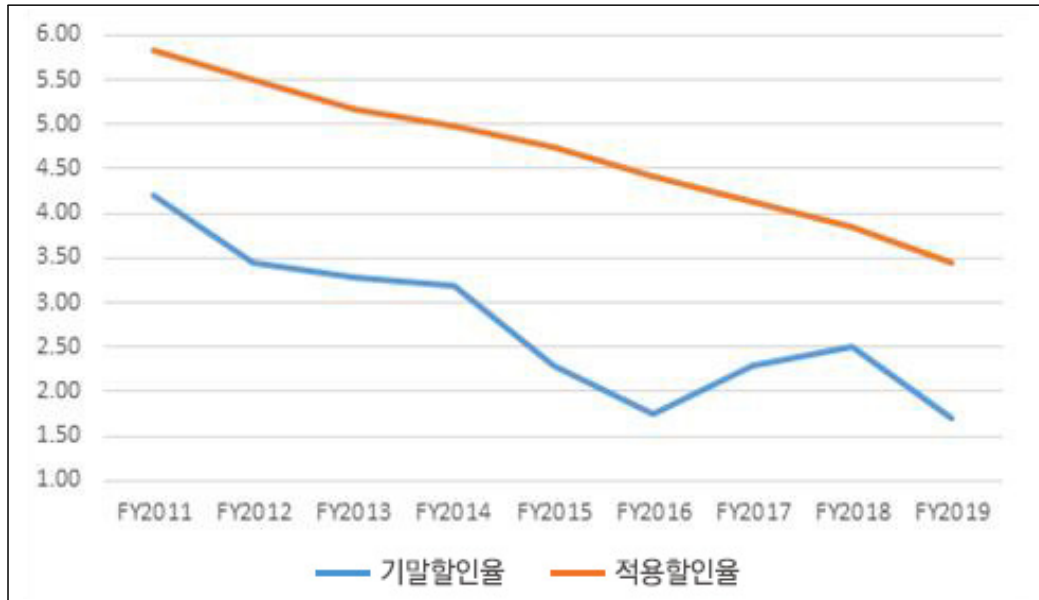
| 구 분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10년 평균 | 차이 |
|----------|------|------|------|------|------|------|------|------|------|-------------|-------------|-------------|
| 국고채(1년) | 2.95 | 3.42 | 3.12 | 2.66 | 2.44 | 1.70 | 1.43 | 1.54 | 1.84 | 1.52 | 2.26 | 0.74 |
| 국고채(3년) | 3.72 | 3.62 | 3.13 | 2.79 | 2.59 | 1.80 | 1.44 | 1.80 | 2.10 | 1.53 | 2.45 | 0.92 |
| 국고채(5년) | 4.31 | 3.90 | 3.24 | 3.00 | 2.84 | 1.98 | 1.53 | 2.00 | 2.31 | 1.59 | 2.67 | 1.08 |
| 국고채(10년) | 4.77 | 4.20 | 3.45 | 3.28 | 3.19 | 2.31 | 1.75 | 2.28 | 2.50 | 1.70 | 2.94 | 1.24 |
| 국고채(20년) | 4.98 | 4.34 | 3.53 | 3.46 | 3.38 | 2.48 | 1.82 | 2.33 | 2.48 | 1.71 | 3.05 | 1.34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고채 금리」,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0. 5. 24.

- 우리나라의 연금충당부채는 10년 평균 국채 수익률을 할인율로 적용함에 따라 2019 회계연도까지 매년 상승해 왔음
- 실제 국채 수익률은 2016년까지는 하락, 2017~2018년은 상승했다가 2019년 다시 하락했지만 이와 같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함

[그림 IV-8] 회계연도별 기말할인율과 적용할인율(10년 평균) 비교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또한 10년 평균을 적용한 목적이 연금총당부채의 변동성 최소화로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었으나, 매년 약 50~70조가 변동되는 것만으로도 외부 정보이용자는 변동성이 적다고 인지하지 못함
 - 할인율에 따른 변동성은 신뢰성의 문제가 아닌 연금총당부채의 특징임이 주요 5개국 분석 결과 확인되었으므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 필요
- 보고기간 말(재정상태표일) 시점의 국고채 수익률을 할인율로 결정함으로써 재정상태표일에 경제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음
- 변경 연도는 할인율 하락에 따라 연금총당부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19회계연도 기준 2019년 기준 0.7~1.3% 하락에 따라 약 200조원 증가)되나, 향후 안정적 관리 기대

〈표 IV-11〉 국고채 수익률(30년, 50년 만기)

(단위: %)

| 구 분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 국고채(30년) | 3.13 | 3.57 | 3.46 | 2.55 | 1.84 | 2.34 | 2.45 | 1.70 |
| 국고채(50년) | - | - | - | - | 2.00 | 2.34 | 2.42 | 1.69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고채 금리」,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0. 5. 24.

- 우리나라는 현재 20년 이후의 할인율은 모두 2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이 2014년 이전까지 30년 할인율을 30년 이후 기간에 모두 적용한 것 이외에는 최장 만기 이후 수익률을 추정하여 적용
- 우리나라도 이를 개선하여 할인율 산정 방식에 정교함을 더할 필요가 있음
 - 우선 국가회계가 도입될 당시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던 국고채 30년, 50년 시장이 형성되었으므로 이를 활용하고, 50년 이후의 수익률은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

5. 결산보고서의 포괄 범위와 연금충당부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국가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연금충당부채에는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도 포함됨
 -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법규에 의한 직원 등이 포함
 - 공무원연금기금은 「국가회계법」상 ‘국가회계실체’로 국가재무제표 통합대상이며, 공무원연금기금이 인식한 연금충당부채 총액이 국가재무제표에 계상

- 이와는 달리 국가재무제표는 중앙정부의 재무제표로 지방정부는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포괄 범위가 서로 상이한 문제가 발생함
 - 연금충당부채의 비율이 타(他)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포괄 범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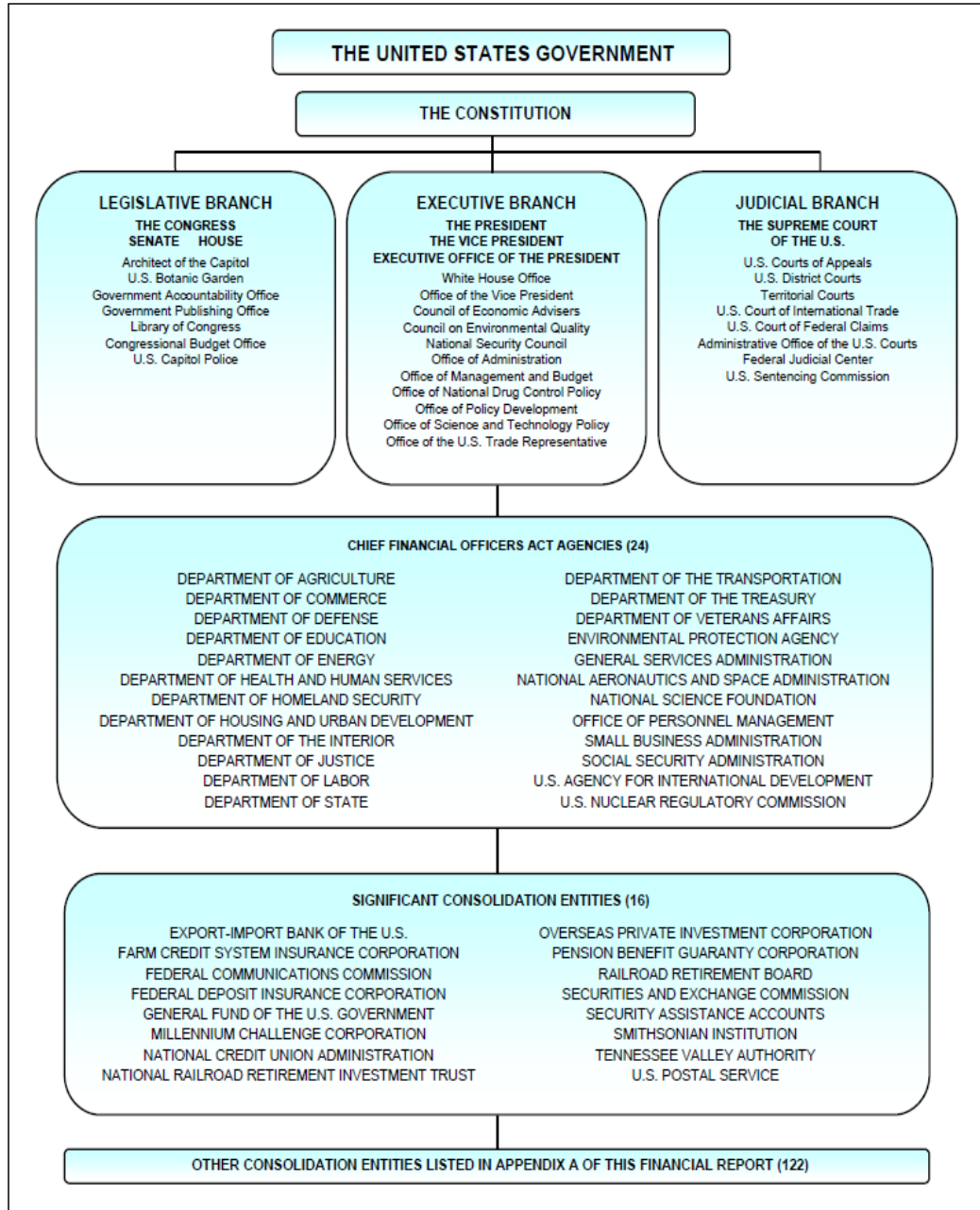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주요 5개국의 결산보고서의 포괄 범위와 연금충당부채의 포괄 범위를 분석함

가. 미 국

- 결산보고서 포괄 범위
 - SFFAC 2(Entities and Display)와 SFFAS 47(Reporting Entity)에서는 연방 정부를 보는 관점으로 조직, 예산, 프로그램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조직적 관점이 가장 적합하다고 규정
 - 주식 1. 중요한 회계정책(Summary of Significant Accounting Policies) 중 보고 실체(Reporting Entity)에서 포괄 범위 공시
 - 미 연방정부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및 재무부 등 중앙부처, 수출입은행 등 연결실체 등으로 구성

- 연금충당부채 포괄 범위
 - 인사관리처(OPM) 및 보훈처(VA)에서 관리하는 공무원, 군인연금과 국토안전부의 해안경비대, 국무부의 외무직원 등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연금충당부채 설정

[그림 IV-9] 연방정부 결산서 회계실체(미국)



자료: Department of the Treasury,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0, p. 9

나. 영국

□ 결산보고서 포괄 범위

- 주식 1. 회계정책(Statement of accounting policies)에서 정부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거나 공공자금의 출연을 통하는 단체를 재무제표의 포괄 범위로 제시
- 중앙정부 각 부서, 공공단체, 공기업, 지방정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문별 보고서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 연금총당부채 포괄 범위

- 현직 및 전직 공무원 등 정부 고용인과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의 회원 자격을 갖춘 인원을 포함하여 산정
- 미적립식은 의료직원(NHS), 교원, 공무원, 군인, 경찰 등이 다수이며, 적립식은 지방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다. 호주

□ 결산보고서 포괄 범위

- 주식 1.6 보고실체 및 연결기준(The reporting entity and basis of consolidation)에서 호주 정부(Australian Government)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의미하며, 호주연방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서술
- 호주 정부에는 정부부처, 국회, 비영리법인 및 호주 정부가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포함됨
- 주식 등에서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와 비교하는 표가 다수 나타나는데, 일반정부는 GFSM¹¹⁾ 기준에 따른 포괄 범위로, 비교목적으로 공시하고 있음

11) GFSM(일반정부재정통계 매뉴얼): IMF에서 제공하는 국제기준 매뉴얼

□ 연금충당부채 포괄 범위

- GGS(government and general government sector) 근로자, 호주정부 군인 및 공영기업 확정급여제도 가입자

라. 뉴질랜드

□ 결산보고서 포괄 범위

- 「공공재정법(the Public Finance Act)」 제2조에 정부보고 기관으로 자주권이 존재하는 실체로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를 포함한다고 규정
- 『공공재정법 해설서(A Guide to the Public Finance Act)』는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으므로 실체에서 제외한다고 명시

□ 연금충당부채 포괄 범위

- 1992년 7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는 확정급여제도인 정부연금기금(GSF)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정
- 해당 제도 대상자는 공무원이 9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인, 경찰, 교정직 등으로 구성됨

마. 캐나다

□ 결산보고서 포괄 범위

- 주석 1. 중요한 회계정책 요약(Summary of significant accounting policies) 중 보고실체(Reporting entity)에서 캐나다 정부의 회계실체는 모든 정부기관과 정부가 관리하는 국영기업을 비롯한 기타 정부기관을 포함한다고 서술되어 있음
- 「재무행정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에서 부서 및 국영기업으로 정의된 모든 조직은 회계실체에 포함되며, 이외 통제 정의를 충족하며, 수익, 비용, 자산 또는 부채가 중요할 경우 정부 회계실체에 포함될 수 있음

□ 연금충당부채 포괄 범위

- 연방 직원과 「공공서비스연금법」에 정의된 공공기관, 준주(territorial governments), 군인, 경찰, 재판관 및 의원 등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에 대한 확정급여제도에 대해 연금충당부채를 산정

바. 종합

- 국가결산서의 포괄 범위와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주요 5개국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IV-12>와 같음

<표 IV-12> 주요국의 포괄 범위 관련 현황 비교

| 구분 | 자국 회계기준 | | | IFRS or IPSAS | | |
|--------------------------|--------------------|--------------------|------------------|---------------------------|------------------|-----------------|
| | 한국 | 미국 | 캐나다 | 영국 | 호주 | 뉴질랜드 |
| ① 국가결산서 포괄 범위 | 중앙 | 중앙 | 중앙 | 중앙/지방 | 중앙 | 중앙 |
| ② 연금충당부채 포괄 범위 (금액) (단위) | 중앙/지방 (944.2) (조원) | 중앙 (8,228) (biUSD) | 중앙 (415) (biCAD) | 중앙/지방 (1,589/276) (biGBP) | 중앙 (363) (biAUD) | 중앙 (13bi) (NZD) |
| ①, ② 일치 여부 | 불일치 | 일치 | 일치 | 일치 | 일치 | 일치 |
| GDP 대비 연금충당부채 | 49.3% | 40.0% | 16.3% | 87.0% | 21.3% | 4.4% |

자료: 각국 결산보고서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국가결산서의 포괄 범위를 크게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였을 때, 주요 5개국 중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공시하는 국가는 영국이 유일하며, 모두 중앙(연방)정부를 포괄 범위로 설정

- 각 국가별로 포괄 범위가 중앙정부로 일치하더라도 상세한 규정을 살펴보면 중앙

정부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 「국가재정법」상 회계실체(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로 정의하여 이를 관리하는 정부부처(입법부·사법부·행정부 포함)가 중앙정부에 해당
- (미국) 조직관점으로 보고실체를 규정함에 따라 입법부·사법부·행정부와 더불어 24개 중앙부처, 16개 국영기업 및 122개 연결실체로 구성
- (호주) 호주 정부에는 정부부처, 국회, 비영리법인 및 호주 정부가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포함
- (뉴질랜드) 정부 보고실체로 자주권이 존재하며,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포함하며, 정부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함
- (캐나다) 「재무행정법」에서 정의된 조직으로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을 포함하며, 정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제 가능하며, 회계적으로 중요할 경우 포함 가능

〈표 IV-13〉 주요국의 중앙정부 관련 포괄 범위 비교

| 구분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
| 한 국 | 「국가회계법」(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X |
| 미 국 | 입법·사법·행정 + 24개 부처 + 16개 국영기업 + 122개 연결실체 | X |
| 영 국 | 정부부처 + 공공단체 + 공기업 | O |
| 호 주 | 정부부처 + 국회 + 비영리법인 + 지배 지분 보유 기업 | X |
| 뉴질랜드 | 입법·사법·행정 + 통제권 | X |
| 캐나다 | 재무행정법(정부부처, 국영기업) + 통제권 | X |

자료: 각국 결산보고서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주요 5개국 모두 국가 결산보고서의 포괄 범위에 따라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는 연금제도의 포괄 범위가 동일하였음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국가별로 포괄 범위가 상이하여 연금충당부채의 단순 비교 시 주의가 필요
 - 영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연금충당부채(약 15%)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국 역시 결산보고서의 포괄 범위에 따라 해당 실체의 연금제도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

- 주요 5개국 확인 결과 국가결산보고서의 포괄 범위와 연금총당부채 산정대상이 상이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직 공무원의 연금총당부채를 중앙 정부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우리나라의 현황에 개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국가회계법」상 국가회계실체인 ‘공무원연금기금’이 현 연금제도하에서 지방직 공무원을 포함한 전 공무원의 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 관련 총당부채를 모두 국가결산보고서에 계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존재함
 - 확정급여제도에 따른 연금지급의무는 연금을 관리·운영하는 연금기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에 따른 대가를 미래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근로를 제공받은 고용주에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직에 대한 연금지급의무는 지방정부에 있으므로 지방직 공무원의 연금총당부채는 지방정부의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가능함
 - 유사한 사례로 국가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근로 제공은 시·도 교육청에 제공하는 교육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총당부채 인식 주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

- 기획재정부는 2019회계연도부터 국가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연금총당부채 금액 중 지방직과 교육직 금액에 대한 추가정보를 공시함
 - 총 연금총당부채 944조원 중 지방직은 230조원(24.4%), 교육직은 263조원(27.9%)으로 공시되었으며, 이 둘을 제외할 경우 연금총당부채는 451조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49.3%에서 23.5%로 감소

- 향후 각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연금제도 및 회계처리 관련 법령 등의 정비 등을 통해 현행 포괄 범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여,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V.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연금충당부채의 인식 및 표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재검토를 위하여 OECD 발생주의 도입국가의 해외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바탕으로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이에 따라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는 13개국과 주석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4개국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비교함
- 또한 주요 5개국(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을 선정하여 우리나라에서 주로 의문이 제기되는 연금충당부채 규모의 정도,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른 변동의 적정성, 할인율 산정방식 및 지방직 공무원 포함 여부 등 쟁점별 세부 분석을 수행함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공무원, 군인 제도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다양한 회계처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 번째 유형은 공무원 및 군인에 대한 퇴직연금을 ‘종업원’에 대한 근로제공 대가로 인식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충당부채를 재무제표 본문에 인식하는 유형임
 -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실질이 종업원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유사한 국가들의 연금충당부채 인식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회계처리의 복

잡성과 보험수리적 손익의 변동 가능성도 크다는 부분도 확인함

- 한국을 포함,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국 전체가 여기에 포함됨. 다만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확정급여형 제도의 신규 가입을 막고, 확정급여형 제도를 도입하면서 연금충당부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는 방식은 유사하나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 할인율(장기 할인율 추정, 평균할인율 적용 등) 적용, 연금충당부채에서 제도자산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 등 세부적인 부채산정 방식에서는 상이한 부분이 존재함
 - 경제적 실질을 ‘확정급여형 종업원 퇴직연금’으로 바라보는 국가들은 연금기금의 적립방식 또는 부과방식 등 재원조달은 부채인식과 무관하며,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
- 두 번째 유형은 공무원 및 군인에 대한 퇴직연금을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판단하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일부 특성을 고려하여 미래지급 추정지급액을 재무제표 주석에 인식하는 유형임
 -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가 이에 해당하며, 프랑스 외 오스트리아 및 핀란드의 경우 발생주의 성숙도에서 오는 한계도 존재함
 - 세 번째 유형은 공무원 및 군인에 대한 퇴직연금 관련 재무제표를 인식하지 않거나 별도의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국가들임
 - 일본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의 구분이 없어졌으며, 연금적립금 해당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문제제기를 받는 부분이 할인율 등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라 연금충당부채의 변동성이 너무 커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으나,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주요 5개국 조사 결과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정을 위하여 보험수리적 가정이 포함되며, 장기에 걸쳐 현금흐름이 발생하므로 이로 인하여 연금충당부채 자체의 변동이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남
 -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라 변동폭이 큰 것은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연금충당부채의 특성일 뿐이며, 정보이용자가 해당 금액의 증감 등 해석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한국과 유사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몇몇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연금충당부채 산정 방식의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음
 - 보험수리적 가정 중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결정하는 할인율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IFRS나 IPSAS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규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두 가지 차이를 보임
 - 할인율을 결정하는 시점을 우리나라는 과거기간 10년 평균을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 모두 보고기간 말 시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장 만기 이후 할인율은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장 만기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 두 가지 차이에 대하여 차이를 보일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개정 또는 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두 번째로 주요국과 달리 국가결산서의 포괄 범위와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음
 - 「국가회계법」상 국가회계실체인 ‘공무원연금기금’이 현 연금제도하에서 지방직 공무원을 포함한 전 공무원의 연금을 관리·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관련 충당부채를 모두 국가결산보고서에 계상하고 있음
 - 하지만 확정급여제도에 따른 연금지급의무는 연금을 관리·운영하는 연금기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에 따른 대가를 미래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근로를 제공받은 고용주에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직에 대한 연금지급의무는 지방정부에 있으므로 지방직의 연금충당부채는 지방정부의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상기 개선사항에 대하여 향후 각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연금제도 및 회계처리 관련 법령 등의 정비 등을 통해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금정보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참고문헌

- 대한민국 정부, 『국가결산보고서』, 2013~2019회계연도 각 연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알기 쉬운 국가회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_____, 『알기 쉬운 국가회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고채 금리」,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0. 5. 24.
- AASB,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 119: Employee Benefits*, 2011.
- Austrian Federal Ministry of Finance, *Opening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for the Austrian Federal Government*, 2013.
- Government Superannuation Fund Authority,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2019*, 2019.
- OECD, *Accrual Practices and Reform Experiences in OECD Countries*, 2017.
- 〈각국 결산보고서〉
- 財務省, 『平成30年度 国の財務書類(一般会計・特別会計)』, 2020.
- CICA Handbook,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 3250: Retirement Benefits,” 2010.
- CNOCP, *Recueil des Normes de L’etat*,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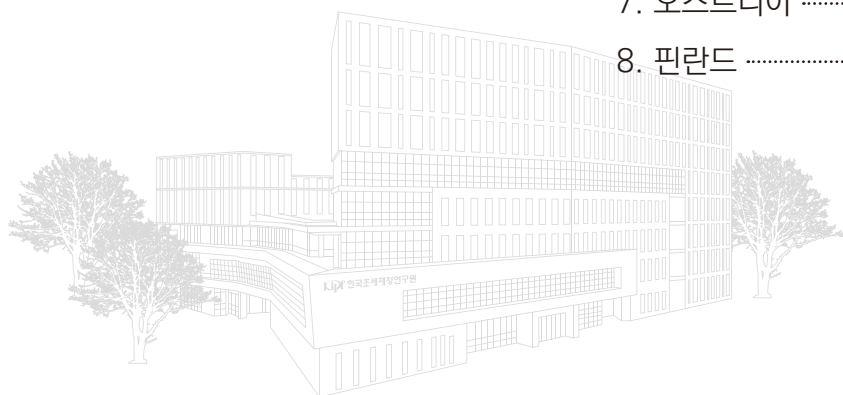
-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2019*, 2019.
- Contraloría General de La República, *Gestión Financiera del Estado 2015*, 2016.
- Department of the Treasury,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0.
-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gency Financial Report 2019*, 2019.
- Fjársýsla ríkisins, *Ríkisreikningur 2018*, 2019.
- Government of Canada, *Public Accounts of Canada 2019*, 2019.
- Government of New Zealand, *Financial Statements 2019*, 2019.
- Government Superannuation Fund Authority,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2019*, 2019.
-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18*, 2019.
- IFRS, *IAS 19 Employee Benefits*, 2020.
- Ministerstvo financií Slovenskej republiky, *Konsolidovaná účtovná zvierka ústrednej správy za rok 2017*, 2018.
- Ministry of Finance, *Central Government Annual Report 2018*, 2019.
- New Zealand Accounting Standards Board, “Public Benefit Entity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 39: Employee Benefits,” 2017.
- Rahandusministerium, *Riigi 2018*, Majandusaasta Koondaruanne, 2019.
- Rechnungshof Österreich, *Bundesrechnungsabschluss 2018*, 2019.
- RÉPUBLIQUE FRANÇAISE, *COMPTE GÉNÉRAL DE L'ÉTAT 2018*, 2019.
- República de Colombia, *Situación Financiera y de Resultados*, 2019.
- Swiss Confederation, *Federal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2018*, 2019.
- United States Office Personnel Management, *Agency Financial Report Fiscal Year 2019*, 2019.
- Valtioneuvoston kanslia, *Tilinpäätöslaskelmat 2018*, 2019.
- רשות, *רצואה דרשמ, מייפסכ תוחוד לארש תנידמ*, 2019.
- Monitor, <https://monitor.statnipokladna.cz/>
- The Treasury, <http://treasury.govt.nz/>

부록. 각 국가별 회계기준 및 주석

- ① 회계실체와 재무제표 포괄 범위 관련 규정
- ② 공무원·군인연금 ‘할인율’ 관련 회계기준
- ③ 공무원·군인연금 관련 재무제표 주석정보

국가별 순서

| | |
|----------------|-----|
| 1. 미국 | 85 |
| 2. 영국 | 100 |
| 3. 호주 | 111 |
| 4. 뉴질랜드 | 123 |
| 5. 캐나다 | 133 |
| 6. 프랑스 | 140 |
| 7. 오스트리아 | 147 |
| 8. 핀란드 | 153 |



1. 미국

① 회계실체와 재무제표 포괄 범위 관련 규정

미국 회계실체와 재무제표 포괄 범위 관련 규정

SFFAS 47. Reporting Entity

SFFAS 47. 보고 실체

Organizational Approach to Defining Boundaries

13. The federal government is unique because its constitutionally established powers, motivations, and function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all other organizations. It is an extremely complex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the common defense and general welfare of the nation. Although there are various perspectives for viewing the federal government, an organizational approach was established in SFFAC 2 as the most appropriate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the composi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SFFAC 2 established that GPFFRs should include the aggregation of organizations for which the federal government is financially accountable as well as other organizations for which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are such that their exclusion would cause the federal government's financial statements to be misleading or incomplete.

범위 설정을 위한 조직 접근법

13. 연방 정부는 「헌법」상 인정받는 권한과 동기 및 기능이 그 밖의 다른 모든 조직과 상이하기 때문에 고유성을 갖습니다. 연방 정부는 국가 공동의 방위와 전반적인 복지를 책임지는 매우 복잡한 조직입니다. 이처럼 연방 정부를 정의하는 데 있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지만, SFFAC 제2호에서는 연방 정부의 구성을 이해하기에 가장 적절한 관점으로 조직 접근법이 확립되었습니다. SFFAC 제2호는 『일반적인 연방 재무 보고서(General Purpose Federal Financial Reports)』에 연방 정부가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조직과 연방 정부와의 관계의 본질과 중요성이 배제되어 연방 정부의 재무제표가 오도되거나 불완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타 조직의 집합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확립하였습니다.

Appendix A: Reporting Entity

The Financial Report includes all organizations meeting the inclusion principles of (a) budgeted for by elected officials of the government, (b) owned by the government, and (c)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with risk of loss or expectation of benefits. In addition, the Financial Report includes organizations where it would be misleading to exclude even though the organization does not meet any of the three inclusion principles. If an organization meets the inclusion principles, a determination of consolidation or disclosure is made.

부록 A: 보고 실체

재무 보고서에는 (a) 정부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b) 정부가 소유하고 있

SFFAS 47. Reporting Entity

SFFAS 47. 보고 실체

며, (c) 손실의 위험 또는 이익에 대한 기대가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서, 포함 원칙을 충족하는 모든 조직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무 보고서의 세 가지 포함 원칙 중 어느 것도 충족한 것이 없는 조직이라 하여도 이를 제외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직의 경우에는 포함합니다. 조직이 포함 원칙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결 또는 공시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SFFAS No. 4 identifies consolidation entities as organizations that should be consolidat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s a whole, the organization: (a) is financed through taxes and other non-exchange revenues, (b) is governed by the Congress or the President, (c) imposes or may impose risks and rewards to the government, and (d) provides goods and services on a non-market basis. It also includes organizations that would result in misleading or incomplete financial statements, if excluded.

SFFAS 제4호는 연결 실체를 다음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연결해야 하는 조직으로 식별합니다. (a) 세금 및 기타 비교환수익을 통해 자금이 조달되고, (b) 의회 또는 대통령이 통제하며, (c) 정부에 위험과 보상을 부과하거나 부과할 수 있으며, (d) 비시장적 기준으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기준서는 이를 제외하면 재무제표가 오도되거나 불완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타 조직의 집합체를 포함합니다.

자료: FASAB, "Statement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47: Reporting Entity," 2018.

② 공무원·군인연금 ‘할인율’ 관련 회계기준

미국 할인율 관련 회계기준

SFFAS 33 Pensions, Other Retirement Benefits, and Other Postemployment Benefits:
Reporting the Gains and Losses from Changes in Assumptions and Selecting Discount Rates and Valuation Dates

SFFAS 33 연금, 기타퇴직급여 및 기타퇴직후급여: 가정의 변경에 따른 손익보고와 할인율 및 평가일 선정

28. Discount rates as of the reporting date for present value measurements of pension, ORB, and OPEB liabilities should be based on 1) interest rates on marketable Treasury securities with maturities consistent with the cash flows being discounted. The discount rates should be matched with the expected timing of the associated expected cash flow. Thus, cash flows projected in each period should have a discount rate associated with them. However, 2) one discount rate may be used for all projected future cash flows if the resulting present value is not materially different than the resulting present value using multiple rates. A change to or from multiple rates from or to a single rate should be disclosed.

28. 연금, 기타퇴직급여(ORB), 기타퇴직후급여(OPEB) 부채의 현재가치 측정을 위한 보고일 기준 할인율은 할인 대상 현금흐름과 ① 동일한 만기의 시장성 있는 국채(Treasury securities)의 할인율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러한 할인율은 기대 현금흐름의 예상시기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회기에 추정되는 현금흐름에는 개별적인 할인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② 만일 단일의 할인율을 사용하여 추정된 현재가치와 각 회기별로 개별적인 할인율을 사용하여 추정된 현재가치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단일의 할인율로 추정되는 모든 미래의 현금흐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할인율에서 단일의 할인율로 또는 그 역으로의 변경 사항은 공시해야 합니다.

29. The discount rates as of the reporting date should reflect average historical rates on marketable Treasury securities rather than giving undue weight to the current or very recent past experience of such rates. Historical experience should be the basis for expectations about future trends in marketable Treasury securities. The discount rate, the underlying inflation rate, and the other economic assumptions should be consistent with one another.

29. 보고일 현재의 할인율은 현재 또는 최근 과거의 경험치에 과도한 가중치를 부여하기보다는 시장성 있는 국채(Treasury securities)의 평균 역사적 할인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경험치는 시장성 있는 국채(Treasury securities)의 미래 동향에 대한 예측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할인율, 물가상승률 및 기타 경제적 가정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30. In developing average historical Treasury rates, 3) a minimum of five historical rates as of the reporting date (e.g., at the current and four prior fiscal year ends) should be used for each maturity. The historical rates used to calculate the average should be sequential (e.g., 2003–2007). (중략)

SFFAS 33 Pensions, Other Retirement Benefits, and Other Postemployment Benefits: Reporting the Gains and Losses from Changes in Assumptions and Selecting Discount Rates and Valuation Dates

SFFAS 33 연금, 기타퇴직급여 및 기타퇴직후급여: 가정의 변경에 따른 손익보고와 할인율 및 평가일 선정

30. 역사적 평균의 재무부 할인율을 개발하면서, 보고일 기준으로부터 최소 5년간의 할인율(예, 당기 및 이전 4번의 회기 말)이 각 만기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평균값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역대 할인율은 연속적이어야 합니다(예, 2003~2007년). (중략)

32. In the determination of the historical Treasury rates used, for cash flows that are projected to occur in future years for which Treasury securities are or were not available or that are expected beyond the maturities at which Treasury securities are available, e.g., beyond the 30-year security, the preparer should incorporate into the determination of the discount rate interest rates interpolated or extrapolated from historical Treasury rates.

32. 국채(Treasury securities)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는 국채(Treasury securities)의 만기일 이후의 미래에 대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사용할 역대 재무부의 할인율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예 : 30년 만기를 넘어서는 현금흐름), 재무제표 작성자는 역대 재무부 할인율에서 보간하거나 추정하여 할인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료: FASAB, "Statement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33: Pensions, Other Retirement Benefits, and Other Postemployment Benefits: Reporting the Gains and Losses from Changes in Assumptions and Selecting Discount Rates and Valuation Dates," 2018.

③ 공무원·군인 연금 관련 재무제표 주석정보

○ 미 연방 재무보고서(2019. 9. 30.)

| United States Government Balance Sheets as of September 30, 2019, and 2018 | | |
|--|-------------------|-------------------|
| (In billions of dollars) | 2019 | Restated 2018 |
| Assets: | | |
| Cash and other monetary assets (Note 2) | 524.6 | 507.5 |
| Accounts and taxes receivable, net (Note 3) | 238.0 | 144.9 |
| Loans receivable, net (Note 4) | 1,425.8 | 1,419.1 |
| Inventories and related property, net (Note 5) | 355.7 | 337.5 |
|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 (Note 6) | 1,106.9 | 1,090.5 |
| Debt and equity securities (Note 7) | 118.3 | 112.2 |
| Investments in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Note 8) | 112.1 | 113.2 |
| Other assets (Note 9) | 110.6 | 111.8 |
| Total assets | <u>3,992.0</u> | <u>3,836.7</u> |
| Stewardship land and heritage assets (Note 24) | | |
| Liabilities: | | |
| Accounts payable (Note 10) | 98.0 | 86.7 |
| Federal debt securities held by the public and accrued interest (Note 11) | 16,861.0 | 15,812.7 |
| Federal employee and veteran benefits payable (Note 12) | 8,440.3 | 7,982.3 |
| Environmental and disposal liabilities (Note 13) | 595.4 | 577.3 |
| Benefits due and payable (Note 14) | 223.6 | 211.1 |
| Insurance and guarantee program liabilities (Note 15) | 194.5 | 170.2 |
| Loan guarantee liabilities (Note 4) | 21.7 | 38.2 |
| Other liabilities (Note 16) | 510.3 | 478.9 |
| Total liabilities | <u>26,944.8</u> | <u>25,357.4</u> |
| Contingencies (Note 18) and Commitments (Note 19) | | |
| Net Position: | | |
| Funds from Dedicated Collections (Note 20) | 3,517.1 | 3,480.7 |
| Funds other than those from Dedicated Collections | (26,469.9) | (25,001.4) |
| Total net position | <u>(22,952.8)</u> | <u>(21,520.7)</u> |
| Total liabilities and net position | <u>3,992.0</u> | <u>3,836.7</u> |
| The accompanying notes are an integral part of these financial statements. | | |

○ 미국 국가재무제표 및 주석(2019. 9. 30.)

미국 국가재무제표 및 주석

Note 12. Federal Employee and Veteran Benefits Payable

주석 12. 연방 정부 종업원 및 퇴역군인에게 지급할 급여액

The Government offers its employees retirement and other benefits, as well as health and life insurance. The liabilities for these benefits, which include both actuarial amounts and amounts due and payable to beneficiaries and health care carriers, apply to current and former civilian and military employees. Large fluctuations in

Note 12. Federal Employee and Veteran Benefits Payable

주석 12. 연방 정부 종업원 및 퇴역군인에게 지급할 급여액

actuarial amounts can result from changes in estimates to future outflows for benefits based on complex assumptions and cost models.

OPM administers the largest civilian plan. DOD and VA administer the largest military plans. Other significant pension plans with more than \$10 billion in actuarial accrued liability include those of the Coast Guard (DHS), Foreign Service (State), TVA, and HHS's Public Health Service Commissioned Corps Retirement System.

| (In billions of dollars) | Civilian | | Military | | Total | |
|--|----------------|----------------|----------------|----------------|----------------|----------------|
| | 2019 | 2018 | 2019 | 2018 | 2019 | 2018 |
| Pension and accrued benefits | 2,094.1 | 2,048.9 | 1,759.2 | 1,621.3 | 3,853.3 | 3,670.2 |
| Veterans compensation and burial benefits | N/A | N/A | 3,129.8 | 2,956.3 | 3,129.8 | 2,956.3 |
| Post-retirement health and accrued benefits | 415.1 | 403.3 | 830.2 | 787.0 | 1,245.3 | 1,190.3 |
| Veterans education and training benefits... | N/A | N/A | 105.9 | 65.7 | 105.9 | 65.7 |
| Life insurance and accrued benefits..... | 54.6 | 54.9 | 5.7 | 6.3 | 60.3 | 61.2 |
| FECA benefits..... | 29.6 | 27.3 | 8.2 | 8.3 | 37.8 | 35.6 |
| Liability for other benefits | 1.4 | 1.2 | 6.5 | 1.8 | 7.9 | 3.0 |
| Total federal employee and veteran benefits payable | 2,594.8 | 2,535.6 | 5,845.5 | 5,446.7 | 8,440.3 | 7,982.3 |

Note: "N/A" indicates not applicable.

정부는 종업원들에게 건강 및 생명 보험뿐만 아니라 퇴직금 및 기타 급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에 대한 부채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한 금액과 연금수급자 및 건강보험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서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적용됩니다. 보험수리적 금액의 광범위한 변동은 복잡한 가정과 원가모형을 기반으로 한 미래의 유출에 대한 추정치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인사관리처(OPM)는 가장 큰 공무원연금을, 국방부(DOD)와 보훈처(VA)는 가장 큰 군인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100억달러 이상 발생하는 주요 연금으로는 국토안전부(DHS)의 해안경비대, 국무부(DOS)의 외무 직원, 테네시강유역 개발공사(TVA), 보건복지부(HHS)의 공중보건의 퇴직제도가 있습니다.

2018년 및 2019년 9월 30일 현재 연방 정부 근로자 및 퇴역군인 급여

| 십억 달러 | 공무원 | | 군인 | | 합계 | |
|-------|---------|---------|---------|---------|---------|---------|
| | 2019 | 2018 | 2019 | 2018 | 2019 | 2018 |
| 연금급여 | 2,094.1 | 2,048.9 | 1,759.2 | 1,621.3 | 3,853.3 | 3,670.2 |

미국 국가재무제표 및 주석

Note 12. Federal Employee and Veteran Benefits Payable

주석 12. 연방 정부 종업원 및 퇴역군인에게 지급할 급여액

| 십억 달러 | 공무원 | | 군인 | | 합계 | |
|---------------------------|-------------------|-------------------|---------|---------|---------|---------|
| | 2019 | 2018 | 2019 | 2018 | 2019 | 2018 |
| 퇴역군인의 보상과 매장 급여 | N/A ¹⁾ | N/A ¹⁾ | 3,129.8 | 2,956.3 | 3,129.8 | 2,956.3 |
| 퇴직자 건강보험 급여 | 415.1 | 403.3 | 830.2 | 787.0 | 1,245.3 | 1,190.3 |
| 퇴역군인의 교육훈련급여 | N/A ¹⁾ | N/A ¹⁾ | 105.9 | 65.7 | 105.9 | 65.7 |
| 생명보험 급여 | 54.6 | 54.9 | 5.7 | 6.3 | 60.3 | 61.2 |
| FECA 급여 | 29.6 | 27.3 | 8.2 | 8.3 | 37.8 | 35.6 |
| 기타 급여 부채 | 1.4 | 1.2 | 6.5 | 1.8 | 7.9 | 3.0 |
| 연방 정부 종업원 및 퇴역군인 총 급여 지급액 | 2,594.8 | 2,535.6 | 5,845.5 | 5,446.7 | 8,440.3 | 7,982.3 |

주: 1) "N/A"는 해당사항 없음을 의미함

| Significant Long-Term Economic Assumptions Used in Determining Pension Liability and the Related Expense | | | | | | |
|--|----------|-------|-------|-------|----------|-------|
| | Civilian | | | | Military | |
| | 2019 | | 2018 | | 2019 | 2018 |
| | FERS | CSRS | FERS | CSRS | | |
| Rate of interest | 3.50% | 2.90% | 3.60% | 3.00% | 3.40% | 3.50% |
| Rate of inflation | 1.60% | 1.60% | 1.60% | 1.60% | 1.80% | 1.50% |
| Projected salary increases | 1.10% | 1.10% | 1.30% | 1.30% | 1.80% | 2.00% |
| Cost of living adjustment | 1.30% | 1.60% | 1.40% | 1.60% | 1.80% | 1.50% |

연금부채 및 관련 비용 산정에 사용된 주요 경제적 장기가정

(단위: %)

| | 공무원 | | | | 군인 | |
|--------|------------|----------|------------|----------|------|------|
| | 2019 | | 2018 | | 2019 | 2018 |
| | 연방근로자 퇴직제도 | 공무원 퇴직제도 | 연방근로자 퇴직제도 | 공무원 퇴직제도 | | |
| 할인율 | 3.50 | 2.90 | 3.60 | 3.00 | 3.40 | 3.50 |
| 물가상승률 | 1.60 | 1.60 | 1.60 | 1.60 | 1.80 | 1.50 |
| 임금인상률 | 1.10 | 1.10 | 1.30 | 1.30 | 1.80 | 2.00 |
| 생계비조정률 | 1.30 | 1.60 | 1.40 | 1.60 | 1.80 | 1.50 |

Note 12. Federal Employee and Veteran Benefits Payable**주석 12. 연방 정부 종업원 및 퇴역군인에게 지급할 급여액**

To provide a sustainable, justifiable data resource for the affected entities, Treasury developed a new model and methodology for developing these interest rates in fiscal year 2014. The model is based on methodology used to produce the HQM Yield Curve pursuant to the 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

As of July 2014, Treasury began releasing interest rate yield curve data using this new Treasury's TNC Yield Curve, which is derived from Treasury notes and bonds. The TNC yield curve provides information on Treasury nominal coupon issues and the methodology extrapolates yields beyond 30 years through 100 years maturity. The TNC yield curve is used to produce a Treasury spot yield curve (a zero coupon curve), which provides the basis for discounting future cash flows.

관련된 실체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적절한 데이터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무부는 2014회계연도에 할인율 산정을 위한 새로운 모델과 방법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2006년 「연금보호법」에 따라 HQM 수익률 곡선을 산출하는 데에 사용된 방법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재무부는 2014년 7월부터 재무부의 국채와 국채에서 파생된 TNC 수익률 곡선을 통해 산출된 이자수익률 곡선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TNC 수익률 곡선은 발행된 TNC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 방법은 30년 이상 100년 만기까지의 수익률을 추정합니다. TNC 수익률 곡선은 채권의 현물수익률(제로쿠폰) 곡선을 산출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Civilian Employees

OPM administers the largest civilian pension plan, which covers substantially all full-time, permanent civilian federal employees. This plan includes two components of defined benefits, the 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 (CSRS) and the 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FERS).

공무원

인사관리처(OPM)는 주로 모든 상근직과 영구직 연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큰 공무원연금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금은 두 개의 법정 연금인 공무원 퇴직제도(CSRS)와 연방근로자 퇴직제도(FER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ilitary Employees(Including Veterans)

The military retirement system consists of a funded, noncontributory, defined benefit plan for military personnel (Services of Army, Navy, Air Force, and the Marine Corps) with an entry date prior to January 1, 2018 and the BRS, generally for military personnel with an entry date on or after January 1, 2018. The defined benefit plan includes non-disability retired pay, disability retired pay, survivor annuity programs, and Combat-Related Special Compensation.

Note 12. Federal Employee and Veteran Benefits Payable

주석 12. 연방 정부 종업원 및 퇴역군인에게 지급할 급여액

군인(퇴역군인 포함)

군의 퇴직제도는 비기여형 적립식의 확정급여제도로 2018년 1월 1일 이전 입대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종별(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제도와 2018년 1월 1일 이후 군에 들어온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BRS 제도가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비장애퇴직급여, 장애퇴직급여, 유족연금 프로그램 및 전투특수 보상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The BRS is a new retirement benefit merging aspects of both a defined benefit annuity with a defined contribution account, through the TSP. The date an individual enters the military generally determines which retirement system they would fall under and if they have the option to select, via a one-time irrevocable election, their retirement system. Military personnel with a start date on or after January 1, 2018 are automatically enrolled in BRS.

BRS는 새로운 퇴직급여 형태로 확정급여제도와 TSP를 통한 확정기여제도를 병합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개인의 입대날짜에 따라 그들에게 어떤 퇴직제도가 적용되는지 결정되며, 만일 퇴직제도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번복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BRS에 가입됩니다.

For more information on these benefits, see DOD's Office of Military Compensation website. <https://militarypay.defense.gov>.

연금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 연방공무원 저축계정(Thrift Saving Plan, TSP)

자료: Department of the Treasury,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0, pp. 100~103

○ 미국 인사관리처(OPM) 재무보고서(2019. 9. 30.)

|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 | |
|---|--------------------|--------------------|
| CONSOLIDATED BALANCE SHEETS | | |
| <i>As of September 30, 2019 and September 30, 2018</i> | | |
| <i>(In Millions)</i> | | |
| | FY 2019 | FY 2018 |
| ASSETS | | |
| Intragovernmental: | | |
| Fund Balance with Treasury [Note 2] | \$3,354 | \$3,366 |
| Investments [Note 3] | 1,066,721 | 1,050,945 |
| Accounts Receivable [Note 4] | 57,927 | 50,441 |
| Total Intragovernmental | 1,128,002 | 1,104,752 |
| Accounts Receivable from the Public, Net [Note 4] | 1,830 | 1,754 |
| General Property and Equipment, Net | 3 | 2 |
| Other [Note 1L] | 818 | 762 |
| TOTAL ASSETS | \$1,130,653 | \$1,107,270 |
| LIABILITIES | | |
| Intragovernmental [Note 6] | \$944 | \$1,601 |
| Federal Employee Benefits: | | |
| Benefits Due and Payable | 12,751 | 12,382 |
| Pension Liability [Note 5A] | 1,976,700 | 1,938,500 |
| Postretirement Health Benefits Liability [Note 5B] | 402,201 | 390,638 |
| Actuarial Life Insurance Liability [Note 5C] | 53,615 | 53,863 |
| Total Federal Employee Benefits | 2,445,267 | 2,395,383 |
| Other [Note 6] | 1,486 | 1,469 |
| TOTAL LIABILITIES | 2,447,697 | 2,398,453 |
| Commitments and Contingencies [Note 7] | | |
| NET POSITION | | |
| Unexpended Appropriations | 58 | 58 |
| Cumulative Results of Operations | (1,317,102) | (1,291,241) |
| TOTAL NET POSITION | (1,317,044) | (1,291,183) |
| TOTAL LIABILITIES AND NET POSITION | \$1,130,653 | \$1,107,270 |
| <i>The accompanying notes are an integral part of the financial statements.</i> | | |

NOTE 1- Summary of Significant Accounting Policies

주석 1- 중요한 회계 정책의 요약

O. ACTUARIAL LIABILITIES AND ASSOCIATED EXPENSES

Consistency in historical rates used to calculate the average historical Treasury rates from one reporting period to the next.

For CSRS and for FERS, OPM's actuaries determine a single interest rate that produces an actuarial liability equivalent to that produced under the 10-year average historical yield curve. OPM's actuaries round the single equivalent interest rate to the nearest 0.1%.

O. 보험수리적 부채 및 관련 비용

한 보고 기간에서 다음 보고 기간 사이의 평균 역사적 재무부 할인율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역사적 할인율의 일관성

CSRS 및 FERS의 경우 OPM의 보험계리사는 10년 평균 역사적 수익률 곡선에 따라 산출된 보험수리적 부채와 동일하게 이를 산출하는 단일의 할인율을 결정합니다. OPM의 보험계리사는 단일가중평균 할인율(the single equivalent interest rate)을 가장 근사치인 0.1%로 반올림합니다.

OPM's actuaries use a 10-year measuring period for determining the yield curve, taking the 40-quarter arithmetical average of spot rates for zero-coupon Treasuries measured through March 31 of the current fiscal year. OPM's measuring period methodology has been in place under SFFAS 33 since FY 2010. The March 31 ending date was selected based on the publication dates of source material in order to meet OPM's financial reporting deadlines. Zero-coupon rates were published by the Treasury's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through December 31, 2011. The Treasury Office of Economic Policy continued publication of zerocoupon rates according to this methodology for the subsequent quarters in 2012 and 2013.

OPM의 보험계리사는 수익률 곡선을 결정하기 위해 10년의 측정 기간을 사용하며, 당기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측정된 국채(제로 쿠폰)의 현물 할인율(spot rates)의 40분기 산술 평균을 구합니다. OPM의 측정 기간 방법론은 2010회계연도부터 SFFAS 제33호에 따라 시행되어 왔습니다. 3월 31일 종료일은 OPM의 재무보고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원 자료의 게시 날짜를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할인율(zero-coupon rates)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무부에 의해 공표되었습니다. 재무부의 재무정책국은 2012년과 2013년에 이 방법론에 따라 할인율(zero-coupon rates)을 계속해서 공표했습니다.

Beginning in 2014, the Department of Treasury began publishing rates according to a revised zero-coupon yield curve methodology (with historical rates published according to this revised methodology for year 2003 forward). The curve provides yields at semi-annual increments for 100 years. The previously published yield curves had extended only to year 30, and for valuations performed prior to 2014 OPM's

NOTE 1- Summary of Significant Accounting Policies**주석 1- 중요한 회계 정책의 요약**

actuaries had applied the 30-year rate for discounting cash flows beyond 30 years.

2014년부터 재무부는 개정된 수익률(제로쿠폰) 곡선 방법론(2003년 이후 이 개정된 방법론에 따라 발표된 역사적 할인율)에 따라 할인율을 공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익률 곡선은 100년 동안 반기별 증가율로 산출됩니다. 이전에 공표된 수익률 곡선은 30년까지만 연장되었으며, OPM의 보험계리사는 2014년 이전에 30년을 초과하는 현금흐름 할인의 경우에는 30년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NOTE 5. Federal Employee Benefits**주석 5. 연방 공무원 종업원급여****A. PENSIONS****Economic Assumptions.**

The economic assumptions used to calculate the Pension Liability and related Pension Expense under Statement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SFFAS) No. 33 are based on 10-year historical averages. See Note 1. O. for further information. These economic assumptions differ from those established by OPM under guidance from the CSRS Board of Actuaries for the determination of certain statutory funding payments for CSRS and FERS. The following presents the significant economic assumptions used under SFFAS No. 33 to compute the Pension Liability in FY 2019 and 2018:

A. 연금**경제적 가정.**

SFFAS 제33호에 따라 연금부채 및 관련 연금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경제적 가정은 10년 동안의 역사적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석 1. O.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제적 가정은 CSRS 및 FERS에 대한 특정 법정 자금 지원 결정에 대한 CSRS 이사회의 지침에 따라 OPM에 의해 설정된 가정과 다릅니다. 다음은 2019년과 2018년 회계연도에 연금부채를 계산하기 위해 SFFAS No. 33하에서 사용된 중요한 경제적 가정을 제시합니다.

The single equivalent annual interest rate for FY 2019 is derived from a yield curve based on the average of the last 40 quarters through March 2019. The single equivalent annual interest rate for FY 2018 is derived from a yield curve based on the average of the last 40 quarters through March 2018.

2019 회계연도의 단일 가중평균 이자율(the single equivalent interest rate)은 2019년 3월까지의 마지막 40분기 평균을 기준으로 한 산출 곡선에서 파생됩니다. 2018 회계연도의 단일 가중평균 이자율(the single equivalent interest rate)은 2018년 3월까지 마지막 40분기 평균을 기준으로 한 산출 곡선에서 파생됩니다.

○ 미국 보훈처(DVA) 재무보고서(2019. 9. 30.)

|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 | |
|---|---------------------|---------------------|
| CONSOLIDATED BALANCE SHEETS (dollars in millions) | | |
| AS OF SEPTEMBER 30, 2019 AND 2018 | | |
| | 2019 | 2018 |
| Assets | | |
| Intragovernmental | | |
| Fund Balance with Treasury (Note 3) | \$ 58,306 | \$ 66,099 |
| Investments (Notes 5 and 19) | 4,358 | 4,742 |
| Accounts Receivable (Note 6) | 9 | 29 |
| Other Assets | 1,762 | 1,246 |
| Total Intragovernmental Assets | 64,435 | 72,116 |
| Cash (Note 4) | 4 | 4 |
| Investments (Note 5) | 140 | 140 |
| Accounts Receivable, Net (Note 6) | 6,078 | 2,565 |
| Direct Loans and Loan Guarantees, Net (Note 7) | 1,397 | 1,336 |
| Inventory (Note 8) | 49 | 40 |
| General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 (Note 9) | 27,164 | 26,479 |
| Other Assets | 38 | 65 |
| Total Assets | \$ 99,305 | \$ 102,745 |
| Heritage Assets (Note 10) | | |
| Liabilities | | |
| Intragovernmental | | |
| Accounts Payable | \$ 126 | \$ 213 |
| Debt (Note 11) | 569 | 539 |
| Other Liabilities (Note 15) | 3,540 | 4,484 |
| Total Intragovernmental Liabilities | 4,235 | 5,236 |
| Accounts Payable | 12,161 | 13,474 |
| Loan Guarantee Liability, Net (Note 7) | 7,636 | 8,722 |
| Federal Employee and Veterans Benefits (Note 13) | 3,242,812 | 3,024,368 |
| Environmental and Disposal Liabilities (Note 14) | 934 | 926 |
| Insurance Liabilities (Note 17) | 5,703 | 6,396 |
| Other Liabilities (Note 15) | 5,774 | 5,173 |
| Total Liabilities | \$ 3,279,255 | \$ 3,064,295 |
| Commitments and Contingencies (Note 18) | | |
| Net Position | | |
| Unexpended Appropriations – All Other Funds | \$ 33,486 | \$ 37,780 |
| Cumulative Results of Operations – Funds from Dedicated Collections (Note 19) | 4,293 | 868 |
| Cumulative Results of Operations – All Other Funds | (3,217,729) | (3,000,198) |
| Total Net Position | (3,179,950) | (2,961,550) |
| Total Liabilities and Net Position | \$ 99,305 | \$ 102,745 |

The accompanying notes are an integral part of thes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NOTE 1- SUMMARY OF SIGNIFICANT ACCOUNTING POLICIES**주석 1- 중요한 회계 정책의 요약****R. VETERANS BENEFITS LIABILITY**

The financial statement disclosures herein (Note 13) are in accordance with SFFAS No. 33, Pensions, Other Retirement Benefits, and Other Postemployment Benefits: Reporting Gains and Losses from Changes in Assumptions, and Selecting Discount Rates and Valuations Dates and SFFAS No. 5, Accounting for Liabilit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R. 군인연금부채

보험수리적 채무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은 미래의 지급 예정 기간과 일치하는 만기가 있는 지난 10년 분기별 현물 환율의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현물 환율은 미 재무부가 공표 한 TNC (Tollasical Coupon-Issue) 수익률 곡선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래의 예상 지급액이 예상되는 각 연도에는 이와 관련된 별도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금리를 사용하여 현재의 현재가치와 현저히 다르지 않은 현재가치로 귀결되는 모든 미래의 지급 계획에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NOTE 13. Federal Employee and Veterans Benefits Liabilities**주석 13. 연방 정부 종업원 및 퇴역군인 급여 부채****C. VETERANS BENEFITS (COMPENSATION AND BURIAL)****○ ASSUMPTIONS USED TO CALCULATE THE VETERANS BENEFITS LIABILITY (COMPENSATION AND BURIAL)**

A liability is recognized for the present value of projected benefit payments to: (1) those beneficiaries, including Veterans and survivors, currently receiving benefit payments, (2) current Veterans who become future beneficiaries of the compensation program, and (3) a proportional share of those on active military service as of the valuation date who are expected to be future Veterans. Future benefits payments to survivors of those Veterans in classes (1), (2), and (3) above are also incorporated into the projection.

C. 퇴역군인 급여 (보상 및 매장)**○ 퇴역군인 급여 부채 산정을 위해 사용된 가정 (보상 및 매장)**

부채는 다음을 대상으로 미래 급여의 현재가치를 인식합니다.

(1)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퇴역군인과 생존자를 포함한 수혜자, (2) 보상 프로그램의 미래 수혜자가 될 현재 퇴역군인, (3) 미래 퇴역군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일 현재 현역 군인에 대한 비례적 지분. 상기 (1), (2) 및 (3) 등급의 퇴역군인 생존자에 대한 미래 급여 지급도 이 예측에 포함됩니다.

미국 보훈처 (부처) 재무제표 및 주석

Discount rates at September 30, 2019 and 2018 were computed based on the average of the last 10-year quarterly spot rates. These averages were provided by the Treasury. These spot rates are equivalent to a single average discount rate of 3.42 percent and 3.52 percent as of September 30, 2019, and 2018, respectively. All calculations were performed separately by age for the Compensation and Burial programs.

2019년 및 2018년 9월 30일의 할인율은 지난 10년간 분기별 현물 할인율(spot rates)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평균은 재무부에서 제공되었습니다. 10년간 분기별 현물 할인율(discount rate)을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the single equivalent interest rate)로 표현하면 각각 2019년 9월 30일은 3.42%, 2018년 9월 30일은 3.52%입니다. 모든 계산은 보상 및 매장 프로그램의 연령별로 별도로 수행되었습니다.

자료: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gency Financial Report 2019*, 2019, p. 82

2. 영국

① 회계실체와 재무제표 포괄 범위 관련 규정

영국 포괄 범위 관련 규정

Note 1. Statement of Accounting Policies

주석 1. 주요 회계정책

1.3 Basis of consolidation

The financial statements consolidate a group of entities that appears to HM Treasury to exercise functions of a public nature, or to be entirely or substantially funded from public money. This group includes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their agencies, 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public corporations (more detail on which can be found below), local authorities, the National Health Service (including NHS trusts and Clinical Commissioning Groups) and the devolved administrations. This includes Academy Schools (which are classified as central government), local policing and crime commissioners and fire and rescue authorities (which are considered local government bodies). The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WGA) boundary is compared to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classification of the public sector to ensure the accounts are consistent and comparable to other measures of financial performance, such as the National Accounts.

There are areas where the boundary diverges from the ONS classification, most significantly the exclusion of Royal Bank of Scotland (RBS), and further details are provided in the critical accounting policies in note 2. A list of all the entities consolidat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is published on gov.uk.

1.3 통합(Consolidation) 기준

재무제표는 영국 재무성에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전액 또는 상당 부분 공공자금으로 조달하여 출현된 실체를 통합합니다. 이 실체에는 중앙정부 부서와 그 하위 기관, 비정부 공공기관, 공기업(전체 또는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한 영국은행, 방송공사, 연금보호기금 등 47개 공기업), 지방정부, NHS((National Health Service) 기금과 CCGs(Clinical Commissioning Groups) 포함) 및 위임정부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아카데미 스쿨(중앙정부로 분류), 지역경찰, 범죄 위원회, 소방·구조국(지방정부로 간주)도 포함됩니다. 영국 통합재무제표(WGA(Whole of Government Accounts))의 범위는 영국 통계청(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의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등 다른 공공부문 재정성과 측정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합니다.

ONS 분류와 상이한 영역이 있으며,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 Royal Bank of Scotland)을 제외한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석 2의 주요 회계정책(critical accounting policies)에서 제공됩니다. 재무제표에 통합된 모든 실체의 목록은 gov.uk에 게시됩니다.

자료: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18, 2019*, pp. 100~102

② 공무원·군인 연금 ‘할인율’ 관련 회계기준

영국 연금 관련 회계기준

(IFRS) IAS 19 Employee Benefits (IFRS) IAS 19 종업원 급여

83. The rate used to discount post-employment benefit obligations (both funded and unfunded) shall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market yield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on high quality corporate bonds. In countries where there is no deep market in such bonds, the market yield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on government bonds shall be used. The currency and term of the corporate bonds or government bond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currency and estimated term of the post-employment benefit obligations.

83. 퇴직급여채무(기금을 적립하는 경우와 적립하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그러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 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합니다. 그러한 회사채나 국공채의 통화와 만기는 퇴직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 지급시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85. The discount rate reflects the estimated timing of benefit payments. In practice, an entity often achieves this by applying a single weighted average discount rate that reflects the estimated timing and amount of benefit payments and the currency in which the benefits are to be paid.

85. 할인율에는 퇴직급여의 예상 지급시기가 반영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급여의 예상 지급시기, 예상 금액, 지급 통화를 반영하는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할인율에 퇴직급여의 예상 지급시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86. In some cases, there may be no deep market in bonds with a sufficiently long maturity to match the estimated maturity of all the benefit payments. In such cases, an entity uses current market rates of the appropriate term to discount shorter-term payments, and estimates the discount rate for longer maturities by extrapolating current market rates along the yield curve. The total present value of a defined benefit obligation is unlikely to be particularly sensitive to the discount rate applied to the portion of benefits that is payable beyond the final maturity of the available corporate or government bonds.

86. 퇴직급여의 모든 예상 지급시기에 상응할 수 있을 정도로 만기가 충분히 긴 채권에 대해 거래 층이 두터운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지급시기가 빠른 급여액을 할인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만기의 현행 시장수익률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지급시기가 늦은 급여액에 대해서는 수익률 곡선상의 현행 시장수익률을 예상 지급시기까지 확장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총 현재가치는, 이용 가능한 회사채나 국공채의 최장만기를 넘어서 지급되는 급여액에 적용하는 할인율에 특별히 민감하게 변동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료: IFRS, *IAS 19 Employee Benefits*, 2020.

③ 공무원·군인 연금 관련 재무제표 주석정보

|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 | | | |
|--|------|------------------|------------------------------|--|
| As at 31 March 2018 | | | | |
| | Note | 2017-18 £bn | 2016-17 £bn (restated) | |
| Non-current assets | | | | |
|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 12 | 1,208.4 | 1,167.6 | |
| Investment property | 13 | 20.0 | 18.2 | |
| Intangible assets | 14 | 36.0 | 34.5 | |
| Trade and other receivables | 15 | 19.1 | 15.2 | |
| Other financial assets | 16 | 323.3 | 260.8 | |
| | | 1,606.8 | 1,496.3 | |
| Current assets | | | | |
| Inventories | 17 | 9.9 | 9.2 | |
| Trade and other receivables | 15 | 160.8 | 158.0 | |
| Other financial assets | 16 | 184.3 | 198.1 | |
| Cash and cash equivalents | 18 | 34.3 | 28.3 | |
| Gold holdings | | 9.4 | 9.9 | |
| Assets held for sale | | 8.3 | 3.2 | |
| | | 407.0 | 406.7 | |
| Total assets | | 2,013.8 | 1,903.0 | |
| Current liabilities | | | | |
| Trade and other payables | 19 | (126.8) | (122.5) | |
| Government borrowings | 20 | (275.6) | (275.5) | |
| Other financial liabilities | 21 | (654.0) | (584.9) | |
| Provisions | 22 | (16.4) | (15.6) | |
| | | (1,072.8) | (998.5) | |
| Non-current liabilities | | | | |
| Trade and other payables | 19 | (64.4) | (63.1) | |
| Government borrowings | 20 | (1,071.8) | (1,013.5) | |
| Other financial liabilities | 21 | (98.8) | (107.3) | |
| Provisions | 22 | (406.1) | (306.6) | |
| Net public sector pension liability | 24 | (1,865.3) | (1,834.7) | |
| | | (3,506.4) | (3,325.2) | |
| Total liabilities | | (4,579.2) | (4,323.7) | |

Chapter 1 Overview and Performance Analysis (Financing Long-term Liabilities)

1장 개요 및 성과 분석 (장기부채조달)

BOX.1.A Discount Rate

표 1.A 할인율

Box 1.K: Discount rates**What is discounting?**

Government accounting follows IFRS.

In general, IFRS tries to measure assets and liabilities at exit values, which is the price at which the asset could be sold, or a liability could be settled at the balance sheet date. To estimate this, expected future cash flows that will be earned from assets or paid out to meet liabilities are discounted to reflect the time value of money for investors.

Future cash flows are discounted because cash received today can be used to buy low risk assets that earn a return and mature when the money is needed for payment. The discount rates used are adjusted for inflation. This means that essentially a pound today is worth more than a pound in the future, as a pound today can generate income between now and the future.

Any changes to the discount rate affect the value of assets and liabilities on the balance sheet even though the estimates of future cash flows are unchanged.

How are discount rates determined?**Public sector pensions**

IFRS requires that pension liabilities are discounted based on the yields of high quality corporate bonds. For unfunded schemes the discount rate is set by HM Treasury using an index of corporate bond yields, with an adjustment to reflect that pensions are uprated by the CPI and not the RPI. For funded schemes the discount rate is determined by the actuaries for individual schemes using a market rate for high quality corporate bonds.

표1. K: 할인율**할인이란 무엇인가?**

정부회계는 IFRS의 기준을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IFRS는 유출가치로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는데, 이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자산이 판매되거나 부채가 이행될 수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러한 측정을 위해,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거나 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은 화폐시간 가치를 반영하여 할인됩니다.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이유는 현재 현금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지불이 필요할 경우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낮은 자산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할인율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1파운드는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 사이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1파운드보다 미래의 1파운드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 현금흐름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할인율의 변화는 자산과 부채의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할인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공공부문연금**

IFRS는 연금부채가 우량 회사채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할인하도록 합니다. 미적립식 제도의 할인율은 회사채 수익률을 기반으로 재무부가 설정하며, 연금이 소매물가지수(RPI)가 아닌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증가되도록 조정됩니다. 적립식 제도의 할인율은 우량 회사채에 대한 시장 할인율을 사용하여 각 제도의 계리사가 결정합니다.

Note 1. Statement of Accounting Policies**주석 1. 주요 회계정책****1.19 Pension liabilities**

The pension liability relates to public sector pension liabilities for current and former government employees, plus a small component for other approved organisations that qualify for membership of these government schemes. The government operates both defined benefit and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schemes. The defined benefit pension schemes are either funded (meaning that the scheme is a separate entity, which receives contributions and invests them to fund pension payments) or unfunded (meaning that there is no separate fund and the government is directly liable to fund pension payments as they fall due). The pension

영국 국가재무제표 및 주석

liability excludes the state pension paid to the general public which is included within overall expenditure and recorded as welfare spend.

For defined benefit pension schem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fair value of scheme assets (if any) and the present value of the scheme liability is recognised as a net asset or liability o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The scheme liability is calculated by discounting expected future benefit payments back to the reporting date using a discount rate based on high quality corporate bonds, usually interpreted as corporate bonds with a credit rating of AA. The expected future benefit payments are calculated allowing for pensionable service to the reporting date, future increases to benefits in accordance with scheme rules (known as the projected unit method) and projections of earnings for current employees up to the date of retirement, leaving service or earlier death. The pension liability is therefore an estimate of the amount of money that would need to be invested in high quality corporate bonds at the reporting date to cover all the expected future benefit payments accrued up to the reporting date.

1.19 연금부채

연금부채는 현직 및 전직 공무원을 위한 공공부문 연금부채 및 그 외 정부 제도의 가입 자격을 갖춘 승인된 기관을 소규모로 포함합니다. 정부는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적립식(별도의 기금이 관리하며 기여금을 수령하여 연금지급을 목적으로 투자함), 또는 미적립식(별도의 기금이 없으며 만기시 연금지급은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임)으로 운영됩니다. 연금부채에는 사회복지로서 총지출에 포함되며, 일반국민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state pension)은 제외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연금제도의 자산의 공정가치(있는 경우)와 연금제도의 부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상의 순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연금부채는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AA 이상의 회사채인 우량회사채의 할인율을 사용하여 예상 미래 연금지급액을 보고일 기준으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예상 미래 연금지급액은 보고 기간까지의 연금수급권, 연금제도 규정에 따른 향후 연금인상액(예측단위방식(projected unit method)으로 알려진) 및 퇴직일, 중도해지, 조기사망까지의 현재 종업원에 대한 소득 예측치를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금부채는 보고 기간까지 예상되는 미래 연금지급액을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 회사채로 할인한 금액의 추정치입니다.

Note 2. Critical Accounting Estimates and Judgements

주석 2. 중요한 회계 추정 및 판단

2.5 Public sector pension liability

The assessment of the pension liabilities requires various assumptions about future unknowns in order to determine the expected future benefit payments. These assumptions include life expectancy, employee turnover rates, projections of price

영국 국가재무제표 및 주석

| | 2017-18 Unfunded central government ² % | 2017-18 Unfunded local government ³ % | 2017-18 Funded local government % | 2016-17 Unfunded central government % | 2016-17 Unfunded local government % | 2016-17 Funded local government % |
|--|--|--|---|---|---|---|
| Rate of increase in salaries ⁴ | 3.95 | 1.0-4.3 | 2.4-4.2 | 4.55 | 1.0-5.1 | 1.0-4.4 |
| Rate of increase in pensions in payment ⁵ | 2.45 | 1.8-4.3 | 1.8-3.8 | 2.55 | 1.0-4.4 | 2.0-3.5 |
| Discount rate – real ⁶ | 0.1 | - | - | 0.24 | - | - |
| Discount rate – Nominal | 2.55 | 1.8-10.0 | 2.3-3.4 | 2.8 | 1.7-10.0 | 2.4-3.6 |
| Price inflation assumption | 2.45 | 1.00-3.6 | 1.0-3.8 | 2.55 | 1.0-3.6 | 1.5-3.7 |

inflation and projections of earnings for current employees. A discount rate is then required to discount the future benefit payments to produce a net present value. The key financial assumptions used by the actuaries of government pension schemes to determine the 2016-17 and 2017-18 WGA pension liabilities are set out below:

2.5 공공부문 연금부채

연금부채의 평가는 예상되는 미래 연금지급액을 확정하기 위해 미지수에 대한 다양한 가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가정에는 기대수명, 이직률, 물가상승률 전망 및 현직원의 소득에 대한 예상치가 포함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순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미래 연금지급액을 할인하는 할인율이 필요합니다.

2016-17년 및 2017-18년 영국 통합재무제표(WGA)의 연금부채를 산정하기 위해 정부 연금제도의 제리사가 사용하는 주요 재무적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17-18 | | | 2016-17 | | |
|--------|---------|----------|---------|---------|----------|---------|
| | 미적립식 | | 적립식 | 미적립식 | | 적립식 |
|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지방정부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지방정부 |
| | % | % | % | % | % | % |
| 급여인상률 | 3.95 | 1.0-4.3 | 2.4-4.2 | 4.55 | 1.0-5.1 | 1.0-4.4 |
| 연금인상률 | 2.45 | 1.8-4.3 | 1.8-3.8 | 2.55 | 1.0-4.4 | 2.0-3.5 |
| 할인율-실질 | 0.1 | - | - | 0.24 | - | - |
| 할인율-명목 | 2.55 | 1.8-10.0 | 2.3-3.4 | 2.8 | 1.7-10.0 | 2.4-3.6 |
| 물가상승률 | 2.45 | 1.00-3.6 | 1.0-3.8 | 2.55 | 1.0-3.6 | 1.5-3.7 |

Note 3. Segmental Reporting
주석 3. 부문별보고(2017-18)

Segmental reporting 2017-18

| | Central government | Local government | Public corporations | Whole of Government |
|--|-----------------------|---------------------|------------------------|------------------------|
| | £bn | £bn | £bn | £bn |
| Taxation revenue | (599.2) | (62.2) | (0.2) | (661.6) |
| Other revenue | (51.4) | (35.4) | (12.5) | (99.3) |
| Total public services revenue | (650.6) | (97.6) | (12.7) | (760.9) |
| Social security benefits | 200.1 | 25.2 | 0.6 | 225.9 |
| Staff costs | 145.0 | 65.4 | 5.4 | 215.8 |
| Purchase of goods, services and other expenditure | 132.6 | 71.8 | 7.8 | 212.2 |
| Interest cost on government borrowing | 36.8 | - | - | 36.8 |
| Increase in provisions | 13.5 | 0.8 | 0.9 | 15.2 |
| Other expenditure | 94.6 | 12.9 | 1.4 | 108.9 |
| Total expenditure on public services | 622.6 | 176.1 | 16.1 | 814.8 |
| Net expenditure on public services | (28.0) | 78.5 | 3.4 | 53.9 |
| Financing costs of long-term liabilities, including discounting | 141.4 | 10.0 | 2.3 | 153.7 |
| Net loss on revaluations and disposals of assets and liabilities | 5.2 | (0.5) | 0.1 | 4.8 |
| Net expenditure/(revenue) for the year | 118.6 | 88.0 | 5.8 | 212.4 |
|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 761.6 | 367.8 | 79.0 | 1,208.4 |
| Other non-current assets | 215.6 | 31.1 | 151.7 | 398.4 |
| Current assets | 315.5 | 38.2 | 53.3 | 407.0 |
| Total assets | 1,292.7 | 437.1 | 284.0 | 2,013.8 |
| Current government borrowings | (275.6) | - | - | (275.6) |
| Other current liabilities | (164.1) | (29.1) | (604.0) | (797.2) |
| Non-current government borrowings | (1,071.8) | - | - | (1,071.8) |
| Provisions non-current | (381.3) | (2.4) | (22.4) | (406.1) |
| Net public sector pension liability | (1,589.4) | (275.5) | (0.4) | (1,865.3) |
| Other non-current liabilities | (101.5) | (45.0) | (16.7) | (163.2) |

부문별보고(2017-18)

| | 중앙정부 (£bn) | 지방정부 (£bn) | 공기업 (£bn) | 계정 (£bn) |
|------------------------|---------------|---------------|--------------|-------------|
| 조세수익 | (599.2) | (62.2) | (0.2) | (661.6) |
| 기타수익 | (51.4) | (35.4) | (12.5) | (99.3) |
| 공공서비스 총수익 | (650.6) | (97.6) | (12.7) | (760.9) |
| 사회보장급여 | 200.1 | 25.2 | 0.6 | 225.9 |
| 인건비 | 145.0 | 65.4 | 5.4 | 215.8 |
| 재화 및 용역 | 132.6 | 71.8 | 7.8 | 212.2 |
| 국채 이자비용 | 36.8 | - | - | 36.8 |
| 총당부채전입액 | 13.5 | 0.8 | 0.9 | 15.2 |
| 기타 비용 | 94.6 | 12.9 | 1.4 | 108.9 |
| 공공서비스 총비용 | 622.6 | 176.1 | 16.1 | 814.8 |
| 공공서비스 순비용 | (28.0) | 78.5 | 3.4 | 53.9 |
| 할인포함 장기부채조달원가 | 141.4 | 10.0 | 2.3 | 153.7 |
| 재평가 및 자산, 부채 처분 순손실 | 5.2 | (0.5) | 0.1 | 4.8 |
| 당해연도 순비용/(수익) | 118.6 | 88.0 | 5.8 | 212.4 |
| 유형자산 | 761.6 | 367.8 | 79.0 | 1,208.4 |
| 기타비유동자산 | 215.6 | 31.1 | 151.7 | 398.4 |
| 유동자산 | 315.5 | 38.2 | 53.3 | 407.0 |
| 총 자산 | 1,292.7 | 437.1 | 284.0 | 2,013.8 |
| 유동정부차입금 | (275.6) | - | - | (275.6) |
| 기타유동부채 | (164.1) | (29.1) | (604.0) | (797.2) |
| 비유동정부차입금 | (1,071.8) | - | - | (1,071.8) |
| 비유동총당부채 | (381.3) | (2.4) | (22.4) | (406.1) |
| 순공공부문연금부채 | (1,589.4) | (275.5) | (0.4) | (1,865.3) |
| 기타비유동부채 | (101.5) | (45.0) | (16.7) | (163.2) |
| 총부채 | (3,583.7) | (352.0) | (643.5) | (4,579.2) |
| 순자산/(부채) | (2,291.0) | 85.1 | (359.5) | (2,565.4) |

영국 국가재무제표 및 주석

Note 24. Public Sector Pensions

주석 24. 공공부문연금

| | Scheme liabilities £bn | Scheme assets £bn | 2017-18 Net liabilities £bn | 2016-17 Net liabilities £bn | Change in scheme liabilities % |
|-------------------------|---------------------------|----------------------|-----------------------------------|-----------------------------------|---|
| Unfunded schemes | | | | | |
| NHS | 612.6 | - | 612.6 | 591.8 | 3.5 |
| Teachers | 412.9 | - | 412.9 | 398.3 | 3.7 |
| Civil Service | 260.9 | - | 260.9 | 257.0 | 1.5 |
| Armed Forces | 195.5 | - | 195.5 | 191.8 | 1.9 |
| Police | 161.7 | - | 161.7 | 157.5 | 2.7 |
| Royal Mail | 46.4 | - | 46.4 | 46.8 | (0.9) |
| Fire | 29.2 | - | 29.2 | 31.0 | (5.8) |
| Other unfunded | 22.6 | - | 22.6 | 22.8 | (0.9) |
| | 1,741.8 | - | 1,741.8 | 1,697.0 | 2.6 |
| Funded schemes | | | | | |
| Local government | 359.6 | (253.6) | 106.0 | 117.7 | (9.9) |
| Other funded | 94.6 | (77.1) | 17.5 | 20.0 | (12.5) |
| | 454.2 | (330.7) | 123.5 | 137.7 | (10.3) |
| Total | 2,196.0 | (330.7) | 1,865.3 | 1,834.7 | 1.7 |

영국 국가재무제표 및 주석

| | 제도 부채 (£bn) | 제도 자산 (£bn) | 2017-18 순부채 (£bn) | 2016-17 순부채 (£bn) | 순부채 변동 (%) |
|-------|-------------------|-------------------|-------------------------|-------------------------|------------------|
| 미적립제도 | | | | | |
| NHS | 612.6 | - | 612.6 | 591.8 | 3.5 |
| 교사 | 412.9 | - | 412.9 | 398.3 | 3.7 |
| 공무원 | 260.9 | - | 260.9 | 257.0 | 1.5 |
| 군인 | 195.5 | - | 195.5 | 191.8 | 1.9 |
| 경찰 | 161.7 | - | 161.7 | 157.5 | 2.7 |
| 우편 | 46.4 | - | 46.4 | 46.8 | (0.9) |
| 소방 | 29.2 | - | 29.2 | 31.0 | (5.8) |
| 기타 | 22.6 | - | 22.6 | 22.8 | (0.9) |
| | 1,741.8 | - | 1,741.8 | 1,697.0 | 2.6 |
| 적립제도 | | | | | |
| 지방정부 | 359.6 | (253.6) | 106.0 | 117.7 | (9.9) |
| 기타 | 94.6 | (77.1) | 17.5 | 20.0 | (12.5) |
| | 454.2 | (330.7) | 123.5 | 137.7 | (10.3) |
| 총계 | 2,196.0 | (330.7) | 1,865.3 | 1,834.7 | 1.7 |

자료: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18, 2019*, p. 12; 110; 115~116; 119~120; 160

3. 호주

1 회계실체와 재무제표 포괄 범위 관련 규정

호주 포괄 범위 관련 주석 내용

Introduction 개요

The 2018-19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CFS) for the Australian Government present the whole of government and general government sector (GGS) financial reports and ar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AASB 1049 *Whole of Government and General Government Sector Financial Reporting* (AASB 1049). They are required by section 48 of the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PGPA Act).

호주 정부의 2018-19년 연결 재무제표(CFS)는 정부 및 일반정부부문(GGS) 재무보고 전체를 제시하며, AASB 1049(*Whole of Government and General Government Sector Financial Reporting*)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공공 거버넌스, 성과 및 책임성법 2013(PGPA Act)」 제48조의 요구사항입니다.

The CFS includes the consolidated results for all Australian Government controlled entities as well as disaggregated information on the sectors of government (GGS, public non-financial corporations (PNFC) and public financial corporations (PFC)). Unless explicitly stated, the financial results reported in this commentary comprise consolidated amounts for the Australian Government as a whole, inclusive of the GGS, and PNFC and PFC sectors.

연결 재무제표에는 호주 정부가 통제하는 일반정부부문(GGS), 비금융공기업(public non-financial corporations, PNFC), 금융공기업(public financial corporations, PFC) 등 연결 실체에 대한 연결 결과와 개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본 보고서의 금액은 GGS, PNFC 및 PFC를 포함한 호주 정부 전체의 금액입니다.

Note 1: Basis of financial statements preparation

주석 1: 재무제표 작성 기준

1.6 The reporting entity and basis of consolidation

For the purposes of these financial statements, the Australian Government means the executive (consisting principally of Ministers and their departments), the legislature (that is, the Parliament) and the judiciary (that is, the courts). Where the 'Australian Government' is referred to throughout these statements, it is intended to also mean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The Australian Government reporting entity (referred to as the reporting entity) includes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s of State, Parliamentary Departments, other non-corporate Commonwealth entities, corporate Commonwealth entities and companies in which the Australian Government holds a controlling interest.

1.6 보고 실체 및 연결 기준

이 재무제표의 목적상 호주 정부는 행정부(주로 장관과 부처로 구성), 입법부(의회) 및 사법부(법원)를 의미합니다. 이 문서에서 '호주 정부'가 언급되는 경우 '호주 연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호주 정부 보고 실체(보고 실체라고 함)는 호주 정부 부처, 국회, 기타 비영리 연방 법인, 법인 연방 실체 및 호주 정부가 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포함합니다.

The Australian Government controls an entity when it is exposed to, or has rights to, variable returns from its involvement with the entity and has the ability to affect those returns through its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the entity. The existence of control in the context of these financial statements does not in any way indicate that there is necessarily control over the manner in which statutory/professional functions are performed by an entity.

호주 정부는 실체로부터 다양한 수익에 노출되거나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갖고, 실체의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그러한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실체를 통제합니다. 이 재무제표에서 통제의 존재는 회계실체가 수행하는 법적·전문적 기능의 방식을 통제하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In the process of reporting the Australian Government as a single economic entity, all material transactions and balances between Australian Government controlled entities are eliminated. Any dissimilar accounting policies applied at the entity level are amended to ensure consistent policies are adopted in these financial statements where the effect is material.

Where control of an entity is obtained during a financial year, results are included in the consolidated operating statement and consolidated cash flow statement from the date on which control commenced. Where control of an entity ceases during a financial year, results are included for that part of the year for which control existed.

호주 정부를 단일 경제 실체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호주 정부의 통제 대상 간의 모든 중요한 거래 및 잔액이 제거됩니다. 효과가 중요한 경우, 실체 수준에서 적용된 모든 상이한 회계 정책은 일관된 정책이 재무제표에 채택되도록 수정됩니다.

실체의 통제가 회계연도 중에 획득되는 경우, 통제가 시작된 날로부터 연결손익계산서(consolidated operating statement)와 연결현금흐름표에 결과가 포함됩니다. 회계연도 중 실체의 통제가 중단되는 경우, 통제가 존재하는 해당 연도의 부분에 대한 결과가 포함됩니다.

Note 3E: Grants expense
주석 3E: 보조 비용

Note 3E: Grants expense

| | General Government | | Australian Government | |
|---|--------------------|----------------|-----------------------|----------------|
| | 2019 \$m | 2018 \$m | 2019 \$m | 2018 \$m |
| Current grants expense | | | | |
|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s(a) | 117,727 | 111,208 | 117,727 | 111,208 |
| Private sector | 9,857 | 8,319 | 9,857 | 8,319 |
| Overseas | 3,803 | 3,543 | 3,803 | 3,543 |
| Non-profit organisations | 5,330 | 4,744 | 5,330 | 4,744 |
| Multi-jurisdictional sector | 10,220 | 10,350 | 10,220 | 10,350 |
| Other | 1,045 | 1,262 | 1,019 | 1,266 |
| Total current grants expense | 147,982 | 139,426 | 147,956 | 139,430 |
| Capital grants expense | | | | |
| Mutually agreed write-downs | 1,243 | 1,996 | 1,243 | 1,996 |
| <i>Other capital grants expense</i> | | | | |
|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s(a) | 8,768 | 8,381 | 8,768 | 8,381 |
| Local governments | 436 | 690 | 436 | 690 |
| Non-profit organisations | 550 | 674 | 550 | 674 |
| Private sector | 85 | 190 | 85 | 190 |
| Other | 116 | 662 | 9 | 245 |
| <i>Total other capital grants expense</i> | <i>9,955</i> | <i>10,597</i> | <i>9,848</i> | <i>10,180</i> |
| Total capital grants expense | 11,198 | 12,593 | 11,091 | 12,176 |
| Total grants expense | 159,180 | 152,019 | 159,047 | 151,606 |

- (a) Current and capital grants to and through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s are limited to grants under the Federal Financial Relations framework, as disclosed in Budget Paper No. 3 and the Final Budget Outcome. Commonwealth entities may also provide grants to individual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 entities, including under the Commonwealth Grants Rules and Guidelines (CGRGs). These are disclosed as grants to non-profit organisations or other grants as appropriate.

호주 포괄 범위 관련 주석 내용

| | 일반정부 | | 호주정부 | |
|------------|-----------|-----------|-----------|-----------|
| | 2019(\$m) | 2018(\$m) | 2019(\$m) | 2018(\$m) |
| 유동 보조 비용 | | | | |
| 주 정부 | 117,727 | 111,208 | 117,727 | 111,208 |
| 민간 부문 | 9,857 | 8,319 | 9,857 | 8,319 |
| 해외 | 3,803 | 3,543 | 3,803 | 3,543 |
| 비영리 기관 | 5,330 | 4,744 | 5,330 | 4,744 |
| 다중 관할 부문 | 10,220 | 10,350 | 10,220 | 10,350 |
| 기타 | 1,045 | 1,262 | 1,019 | 1,266 |
| 총 유동 보조 비용 | 147,982 | 139,426 | 147,956 | 139,430 |
| 자본보조비용 | | | | |
| 상호 동의 제각 | 1,243 | 1,996 | 1,243 | 1,996 |
| 기타 자본보조비용 | | | | |
| 주 정부 | 8,768 | 8,381 | 8,768 | 8,381 |
| 지방 정부 | 436 | 690 | 436 | 690 |
| 비영리 기관 | 550 | 674 | 550 | 674 |
| 민간부문 | 85 | 190 | 85 | 190 |
| 기타 | 116 | 662 | 9 | 245 |
| 총 자본보조비용 | 11,198 | 12,593 | 11,091 | 12,176 |
| 총 보조비용 | 159,180 | 152,019 | 159,047 | 151,606 |

(a) 주정부에 대한 유동보조비용과 자본보조비용은 Budget Paper No. 3와 최종 예산 결과에 공시된 연방재정관계구조의 보조금에 한정됩니다. 「연방 보조금 규칙과 지침(Commonwealth Grants Rules and Guidelines, CGRGs)」에 따라 연방 실체 역시 개별 주정부 실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비영리 기관 보조비용 또는 기타 보조비용으로 공시됩니다.

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2019*, 2019, p. 5; 63; 79

② 공무원·군인 연금 ‘할인율’ 관련 회계기준

호주 연금 관련 회계기준

Actuarial assumptions: discount rate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

83. The rate used to discount post-employment benefit obligations (both funded and unfunded) shall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market yield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on high quality corporate bonds. In countries where there is no deep market in such bonds, the market yield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on government bonds shall be used. The currency and term of the corporate bonds or government bond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currency and estimated term of the

Actuarial assumptions: discount rate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

post-employment benefit obligations.

83. 퇴직급여채무(기금을 적립하는 경우와 적립하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그러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 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합니다. 그러한 회사채나 국공채의 통화와 만기는 퇴직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 지급시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Aus83.1. Notwithstanding paragraph 83, in respect of not-for-profit public sector entities, post-employment benefit obligations denominated in Australian currency shall be discounted using market yields on government bonds.

Aus83.1. 문단 83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공공 부문 실체의 호주 통화로 표시된 퇴직급여채무는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하여 할인합니다.

85. The discount rate reflects the estimated timing of benefit payments. In practice, an entity often achieves this by applying a single weighted average discount rate that reflects the estimated timing and amount of benefit payments and the currency in which the benefits are to be paid.

85. 할인율에는 퇴직급여의 예상 지급시기가 반영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급여의 예상 지급 시기, 예상 금액, 지급 통화를 반영하는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할인율에 퇴직급여의 예상 지급시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86. In some cases, there may be no deep market in bonds with a sufficiently long maturity to match the estimated maturity of all the benefit payments. In such cases, an entity uses current market rates of the appropriate term to discount shorter-term payments, and estimates the discount rate for longer maturities by extrapolating current market rates along the yield curve. The total present value of a defined benefit obligation is unlikely to be particularly sensitive to the discount rate applied to the portion of benefits that is payable beyond the final maturity of the available corporate or government bonds.

86. 퇴직급여의 모든 예상 지급시기에 상응할 수 있을 정도로 만기가 충분히 긴 채권에 대해 거래 층이 두터운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지급시기가 빠른 급여액을 할인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만기의 현행 시장수익률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지급시기가 늦은 급여액에 대해서는 수익률곡선상의 현행 시장수익률을 예상 지급시기까지 확장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총 현재가치는, 이용가능한 회사채나 국공채의 최장 만기를 넘어서 지급되는 급여액에 적용하는 할인율에 특별히 민감하게 변동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료: AASB,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 119: Employee Benefits*, 2011.

③ 공무원·군인 연금 관련 재무제표 주석정보

| Australian Government balance sheet | | | |
|--|------|------------------|------------------|
| as at 30 June 2019 | | | |
| | Note | 2019 \$m | 2018 \$m |
| Assets | | | |
| <i>Financial assets</i> | | | |
| Cash and deposits | | 8,261 | 6,325 |
| Advances paid | 5A | 63,918 | 51,765 |
| Other receivables and accrued revenue | 5A | 53,179 | 51,105 |
| Investments, loans and placements | 5B | 333,479 | 325,638 |
| Equity investments | 5C | 67,919 | 59,092 |
| Total financial assets | | 526,756 | 493,925 |
| <i>Non-financial assets</i> | | | |
| Land | 5D | 13,628 | 13,316 |
| Buildings | 5D | 30,026 | 29,073 |
| Specialist military equipment | 5D | 66,593 | 62,020 |
| Other plant, equipment and infrastructure | 5D | 61,256 | 54,689 |
| Intangibles | 5D | 12,731 | 11,571 |
| Investment property | 5D | 340 | 341 |
| Inventories | 5E | 9,145 | 8,831 |
| Heritage and cultural assets | 5D | 11,695 | 11,619 |
| Other non-financial assets | 5F | 5,139 | 3,943 |
| Total non-financial assets | | 210,553 | 195,403 |
| Total assets | 5G | 737,309 | 689,328 |
| Liabilities | | | |
| <i>Interest bearing liabilities</i> | | | |
| Deposits held | 6A | 34,056 | 33,841 |
| Government securities | 6B | 619,219 | 567,661 |
| Loans | 6C | 16,240 | 15,181 |
| Other borrowings | 6D | 10,164 | 8,807 |
| Other interest bearing liabilities | 6E | 9,469 | 10,760 |
| Total interest bearing liabilities | | 689,148 | 636,250 |
| <i>Provisions and payables</i> | | | |
| Superannuation liability | 6F | 416,046 | 313,970 |
| Other employee liabilities | 6F | 28,090 | 21,698 |
| Supplier payables | 6G | 13,152 | 11,861 |
| Personal benefits payable | 6G | 2,994 | 2,758 |
| Subsidies payable | 6G | 630 | 602 |
| Grants payable | 6G | 2,750 | 3,384 |
| Australian currency on issue | 6H | 80,024 | 75,565 |
| Other payables | 6G | 3,985 | 3,028 |
| Other provisions | 6H | 45,123 | 37,950 |
| Total provisions and payables | | 592,794 | 470,816 |
| Total liabilities | | 1,281,942 | 1,107,066 |
| Net worth | | | |
| Accumulated results | | (635,192) | (500,718) |
| Reserves | | 90,376 | 82,869 |
| Minority interests | | 183 | 111 |
| Net worth | | (544,633) | (417,738) |

Certain comparatives have been restated. Refer to Note 1.5 for further details.

호주 국가재무제표 및 주석

Note 6F. Employee Benefits

주석 6F. 종업원 급여

The management of the Australian Government's accumulated superannuation liability is discussed in Note 10C. Other employee liabilities include provisions for the accumulated leave entitlements of Australian Government employees, claims for workers compensation (managed through Comcare) and military compensation (managed through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VA)).

호주 정부의 누적 퇴직연금부채(superannuation liability)의 관리는 주석 10C에서 논의됩니다. 기타 퇴직급여 부채에는 호주 정부 직원의 누적 휴가 수급권, 근로자 보상(Comcare¹²)를 통해 관리) 및 군사 보상(보훈부서를 통해 관리)에 대한 청구가 포함됩니다.

| | General Government | | Australian Government | |
|--|--------------------|----------------|-----------------------|----------------|
| | 2019 \$m | 2018 \$m | 2019 \$m | 2018 \$m |
| Total superannuation liability | 415,286 | 313,552 | 416,046 | 313,970 |
| Other employee liabilities | | | | |
| Leave and other entitlements | 8,633 | 7,988 | 10,075 | 9,320 |
| Accrued salaries and wages | 281 | 271 | 435 | 406 |
| Workers compensation claims | 2,026 | 2,550 | 2,229 | 2,740 |
| Separations and redundancies | 135 | 156 | 228 | 293 |
| Military compensation | 14,651 | 8,558 | 14,651 | 8,558 |
| Other | 364 | 290 | 472 | 381 |
| Total other employee liabilities | 26,090 | 19,813 | 28,090 | 21,698 |
| Total employee and superannuation liabilities | 441,376 | 333,365 | 444,136 | 335,668 |

| | 일반정부 | | 호주정부 | |
|---------------------|-----------|-----------|-----------|-----------|
| | 2019(\$m) | 2018(\$m) | 2019(\$m) | 2018(\$m) |
| 총 Superannuation 부채 | 415,286 | 313,552 | 416,046 | 313,970 |
| 기타 종업원급여 | | | | |
| 휴가 등 | 8,633 | 7,988 | 10,075 | 9,320 |
| 발생 급여 및 임금 | 281 | 271 | 435 | 406 |
| 근로자 보상 청구 | 2,026 | 2,550 | 2,229 | 2,740 |
| 분리 및 중복 | 135 | 156 | 228 | 293 |
| 군사 보상 | 14,651 | 8,558 | 14,651 | 8,558 |
| 기타 | 364 | 290 | 472 | 381 |
| 총기타 종업원급여 | 26,090 | 19,813 | 28,090 | 21,698 |
| 총 계 | 441,376 | 333,365 | 444,136 | 335,668 |

12) The National work health and safety, and workers' compensation authority

Note 10C: Defined Benefit Superannuation Plans**주석 10C: 확정급여 퇴직연금제도****Accounting policy**

The Australian Government recognises actuarial gains or losses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in the year in which they occur. Interest on the net defined benefit liability is recognised as an expense. The return on plan assets excluding the amount included in interest income is recognised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회계정책

보험수리적 손익은 발생한 회계연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퇴직연금부채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자수익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제도자산에 대한 수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Superannuation liabilities are calculated annually as the present value of future benefit obligations less the fair value of scheme assets. The rate used to discount future benefits of material schemes is determined by reference to the long-term government bond rate. The long-term government bond rate decreased from between 2.7 and 3.1 per cent at 30 June 2018 to between 1.3 and 1.9 per cent at 30 June 2019. This drove the increase in the superannuation liability in comparison to the prior year.

퇴직연금 부채는 매년 미래급여 채무 현재가치에서 제도 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미래급여를 할인하는 데 사용되는 이자율은 장기 국채 이자율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장기 국채 이자율은 2018년 6월 30일 2.7%와 3.1%에서 2019년 6월 30일 1.3%와 1.9%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퇴직연금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Overview of schemes

Civilian GGS employees will usually be members of the Commonwealth Superannuation Scheme (CSS), Public Sector Superannuation Scheme (PSS) or the Public Sector Superannuation Accumulation Plan (PSSap). The PSS and the CSS are closed to new members, with the PSSap available to most new employees who commenced employment on or after 1 July 2005. The CSS and PSS provide defined benefits. The PSSap provides fully funded accumulation benefits to members, with no ongoing liability to the Australian Government. In this disclosure, unless otherwise specified, reference to the CSS includes both the CSS 1976 scheme and the preceding CSS 1922 scheme.

제도 개요

민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CSS, PSS 또는 PSSap의 구성원이 됩니다. PSS와 CSS는 신규 가입을 받지 않으며,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근로를 시작한 새로운 근로자는 PSSap에 가입 가능합니다. CSS와 PSS는 확정급여형 제도입니다. PSSap는 호주정부의 책임 없이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본 보고서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CSS는 CSS 1976과 CSS 1922를 포함합니다.

Australian Government military personnel are members of the Defence Force Retirement and Death Benefits Scheme (DFRDB) or the Military Superannuation Benefits Scheme (MSBS). Both schemes are defined benefit schemes. The DFRDB was closed to new members in 1991. The MSBS was closed to new members from 1 July 2016. Military personnel who entered on or after 1 July 2016 are part of ADF Super, an accumulation scheme. The DFRDB disclosures include the DFRDB and the preceding Defence Forces Retirement Benefits Scheme.

호주 정부의 군인은 DFRDB 또는 MSBS에 가입합니다. 두 제도 모두 확정급여형입니다. DFRDB는 1991년부터, MSBS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2016년 7월 1일 이후 입대한 군인은 ADF Super 제도에 들어갑니다. DFRDB의 공시에는 DFRDB와 이전 방위군 퇴직급여제도가 포함됩니다.

Several Public Corporations are responsible for defined benefit schemes for their employees, including:

| Scheme title | Responsible entities |
|---|-----------------------------------|
| AvSuper ^(a) | Airservices Australia |
| Australia Post Superannuation Scheme (APSS) ^(a) | Australia Post Corporation |
| State Authorities Superannuation Scheme (SASS), State Superannuation Scheme (SSS), State Authorities Non-contributory Superannuation Scheme (SANCS) ^(a) | Australian Rail Track Corporation |
| Australian Submarine Corporation Superannuation Fund (ASCSF) | ASC Pty Ltd |
| Reserve Bank of Australia Officers' Superannuation Fund (OSF) and UK Pension Scheme (UKPS) ^(a) | RBA |
| Energy Industries Superannuation Scheme (EISS), State Superannuation Scheme (SSS) and State Authorities Non-contributory Superannuation Scheme (SANCS) ^(a) | Snowy Hydro Limited (SHL) |

- (a) As required under AASB 119, the rate used to discount the superannuation liability is determined by reference to market yields on government bonds. Certain for-profit public corporations have applied the market yield on high quality corporate bonds in discounting their long-term employee benefits. On consolidation into these statements, the discount rate and associated disclosures have been adjusted back to apply government bond rates.

호주 국가재무제표 및 주석

여러 공영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확정급여 제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연금제도 | 해당기관 |
|--|----------|
| AvSuper(a) | 호주 공군 |
| 호주 우편연금제도(APSS)(a) | 호주 우편공사 |
| 주 권한 퇴직연금제도(SASS), 주 퇴직연금제도(SSS), 주 권한 고용주 부담의 퇴직연금제도(SANCS)(a) | 호주 철도공사 |
| 호주 잠수함공사 연금기금(ASCSF) | 호주 잠수함공사 |
| 호주 준비은행직원의 퇴직연금기금(OSF) 및 UK 연금제도(UKPS)(a) | 호주 준비은행 |
| 에너지산업 연금제도(EISS), 주 연금제도(SSS), 주 고용주 부담 연금제도(SANCS)(a) | 수력발전 |

(a) AASB 119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부채를 할인하는 데 사용된 이자율은 국채의 시장 이자율(market yields on government bonds)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공기업은 장기 종업원 급여 할인에 우량회사채권의 시장 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무제표를 통합할 때, 할인율 및 관련 공시는 국채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Composition

| Scheme | General Government | | Australian Government | |
|--|--------------------|----------------|-----------------------|----------------|
| | 2019 \$m | 2018 \$m | 2019 \$m | 2018 \$m |
| Commonwealth Superannuation Scheme (CSS) | 95,503 | 82,894 | 95,503 | 82,894 |
| Public Sector Superannuation Scheme (PSS) | 134,288 | 97,480 | 134,288 | 97,480 |
| Defence Force Retirement and Death Benefits Scheme (DFRDB) | 55,537 | 46,714 | 55,537 | 46,714 |
| Military Superannuation Benefits Scheme (MSBS) | 125,745 | 83,344 | 125,745 | 83,344 |
| Other schemes | 4,083 | 3,004 | 4,829 | 3,352 |
| Other superannuation liabilities | 130 | 116 | 144 | 186 |
| Total superannuation provision | 415,286 | 313,552 | 416,046 | 313,970 |

구성

| | 일반정부 | | 호주정부 | |
|-----|-----------|-----------|-----------|-----------|
| | 2019(\$m) | 2018(\$m) | 2019(\$m) | 2018(\$m) |
| CSS | 95,503 | 82,894 | 95,503 | 82,894 |
| PSS | 134,288 | 97,480 | 134,288 | 97,480 |

호주 국가재무제표 및 주석

| | 일반정부 | | 호주정부 | |
|-------|-----------|-----------|-----------|-----------|
| | 2019(\$m) | 2018(\$m) | 2019(\$m) | 2018(\$m) |
| DFRDB | 55,537 | 46,714 | 55,537 | 46,714 |
| MSBS | 125,745 | 83,344 | 125,745 | 83,344 |
| 기타 제도 | 4,083 | 3,004 | 4,829 | 3,352 |
| 기타 부채 | 130 | 116 | 144 | 186 |
| 계 | 415,286 | 313,552 | 416,046 | 313,970 |

Governance

Commonwealth Superannuation Corporation(CSC), was established under the Governance of Australian Government Superannuation Schemes Act 2011 and is the trustee for eleven schemes, including the CSS, PSS, DFRDB and MSBS.

CSC is supported by an administrator, a custodian and other specialist providers. The governance arrangements for the 'other' defined benefit superannuation schemes are detailed in the annual reports of the respective employing entities.

거버넌스

Commonwealth Superannuation Corporation(CSC)은 「호주 정부 퇴직연금법 2011」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CSS, PSS, DFRDB 및 MSBS를 포함한 11가지 제도에 대한 수탁자입니다. CSC는 관리자, 전문인력 등에 의해 운영됩니다. '기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배구조는 각 고용 기관의 연간보고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Assumptions

| Scheme | 2019 | | | | |
|--|------------|------------|--------------|-------------|--------------|
| | CSS \$m | PSS \$m | DFRDB \$m | MSBS \$m | Other \$m |
| Principal actuarial assumptions at the reporting date | | | | | |
| Discount rate (active members) | 1.7% | 1.9% | 1.4-1.9% | 1.9% | 1.9-3.4% |
| Discount rate (pensioners) | 1.7% | 1.9% | 1.4-1.9% | 1.9% | 1.9% |
| Expected rate of return on plan assets | - | - | - | 1.9% | - |
| Expected salary increase rate | 2.0% | 2.0% | 4.0% | 4.0% | 2.0-4.0% |
| Expected pension increase rate | 2.5% | 2.5% | 2.5-4.0% | 2.5% | 2.3-4.0% |

| 보고기간의 주요한 보험수리적 가정 | | | | | |
|--------------------|------------|------------|--------------|-------------|--------------|
| 부문 | 2019 | | | | |
| | CSS \$m | PSS \$m | DFRDB \$m | MSBS \$m | Other \$m |
| 할인율(가입자, 기여자) | 1.7% | 1.9% | 1.4~1.9% | 1.9% | 1.9~3.4% |
| 할인율(연금수급자) | 1.7% | 1.9% | 1.4~1.9% | 1.9% | 1.9% |
| 연금자산의 기대수익률 | - | - | - | 1.9% | - |
| 예상 임금인상률 | 2.0% | 2.0% | 4.0% | 4.0% | 2.0~4.0% |
| 예상 연금인상률 | 2.5% | 2.5% | 2.5~4.0% | 2.5% | 2.3~4.0% |

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2019*, 2019, pp. 120~121; pp. 154~160

4. 뉴질랜드

① 회계실체와 재무제표 포괄 범위 관련 규정

뉴질랜드 포괄 범위 관련 규정

A Guide to the Public Finance Act
「공공재정법 해설서」

Chapter 4 Whole-of-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Entities included i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reporting entity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has three branches: th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The executive branch includes around 35 departments and Ministrie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activities of all three branches are appropriately reported the concept of the Government reporting entity was developed. The Government reporting entity concept is similar to the parent entity in a private sector context.

The Act (section 27(3)) requires that the annual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Government reporting entity must include the Government reporting entity's interests in:

(...)

Local authorities are not includ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because they are not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챕터 4. 정부통합재무제표

정부회계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실체

뉴질랜드 정부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존재하며, 행정부에는 약 35개의 부처가 있습니다. 세 부문의 활동을 적절히 보고하기 위하여 정부보고의 개념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정부보고실체의 개념은 민간부문의 모기업과 유사합니다.

「공공재정법」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에는 다음 실체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방정부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으므로 정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료: The Treasury, "A Guide to the Public Finance Act," <https://treasury.govt.nz/publications/guide/guide-public-finance-act-html>, 검색일자: 2020. 6.

Note 1. Basis of Reporting

주석 1. 보고 기준

Reporting entity

The Government reporting entity as defined in section 2(1) of the Public Finance Act 1989 means:

- the Sovereign in right of New Zealand, and
 - th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 The descriptio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reporting entity" and the description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have the same meaning and can be used interchangeably.

보고실체

1989년 「공공 재정법(Public Finance Act 1989)」의 2(1) 항에 정의된 정부의 보고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뉴질랜드의 국왕
 - 뉴질랜드 정부의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
- “정부회계실체의 연결재무제표” 및 “정부 재무제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서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Government of New Zealand, *Financial Statements 2019*, 2019, p. 54

② 공무원·군인 연금 ‘할인율’ 관련 회계기준

Actuarial assumptions: discount rate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

85. The rate used to discount post-employment benefit obligations (both funded and unfunded) shall reflect the time value of money. The currency and term of the financial instrument selected to reflect the time value of money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currency and estimated term of the post-employment benefit obligations.

85. 퇴직급여채무(기금을 적립하는 경우와 적립하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합니다.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선택한 금융상품의 통화 및 예상 지급시기는 퇴직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 지급시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86. One actuarial assumption that has a material effect is the discount rate. The discount rate reflects the time value of money but not the actuarial or investment risk. Furthermore, the discount rate does not reflect the entity-specific credit risk

Actuarial assumptions: discount rate**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

borne by the entity's creditors, nor does it reflect the risk that future experience may differ from actuarial assumptions.

86.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보험수리적 가정 중 하나는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반영되지만 보험수리적 위험이나 투자위험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할인율에는 채권자가 부담하고 있는 회계실체 고유의 신용위험이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실제 결과가 보험수리적 가정과 다를 위험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87. The discount rate reflects the estimated timing of benefit payments. In practice, an entity often achieves this by applying a single weighted average discount rate that reflects the estimated timing and amount of benefit payments, and the currency in which the benefits are to be paid.

87. 할인율에는 퇴직급여의 예상 지급시기가 반영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급여의 예상 지급시기, 예상 금액과 지급 통화를 반영하는 단일의 가중평균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할인율에 퇴직급여의 예상 지급시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88. An entity makes a judgement whether the discount rate that reflects the time value of money is best approximated by reference to market yield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on government bonds, high quality corporate bonds, or by another financial instrument. In some jurisdictions, market yield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on government bonds will provide the best approximation of the time value of money. However, there may be jurisdictions in which this is not the case, for example, jurisdictions where there is no deep market in government bonds, or in which market yield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on government bonds do not reflect the time value of money. In such cases, the reporting entity determines the rate by another method, such as by reference to market yields on high quality corporate bonds. There may also be circumstances where there is no deep market in government bonds or high quality corporate bonds with a sufficiently long maturity to match the estimated maturity of all the benefit payments. In such circumstances, an entity uses current market rates of the appropriate term to discount shorter term payments, and estimates the discount rate for longer maturities by extrapolating current market rates along the yield curve. The total present value of a defined benefit obligation is unlikely to be particularly sensitive to the discount rate applied to the portion of benefits that is payable beyond the final maturity of the available financial instrument, such as government bonds or corporate bonds.

Actuarial assumptions: discount rate**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

88.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할인율이 국채, 우량회사채에 대한 보고기간 말의 시장수익률과 가장 근사치인지 아니면 다른 금융상품에 의한 시장수익률에 가장 근접한지를 판단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공채에 대한 보고기간 말의 시장수익률이 화폐의 시간가치를 가장 최적의 근사치 값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채에 두터운 시장이 없거나 보고기간 말 시점의 시장수익률이 국채에 반영되지 않는 관할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량회사채를 시장이자율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자율을 결정합니다. 또한 모든 급여채무의 추정 만기에 걸맞게 만기가 충분히 긴 만기의 국채나 우량회사채를 가진,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지급 시기가 빠른 급여액을 할인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만기의 현행 시장수익률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지급시기가 늦은 급여액에는 수익률곡선상의 현행 시장수익률을 예상 지급시기까지 확장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총 현재가치는, 이용할 수 있는 회사채나 국공채와 같이 금융상품의 최장 만기를 넘어서 지급되는 급여액에 적용하는 할인율에 특별히 민감하게 변동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Basis for Conclusions**Discount Rates**

BC2. IPSAS 39 does not include the amendments made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to IAS 19 Employee Benefits regarding the use of the market rate on high quality corporate bonds (or where there is no deep market for those bonds, the market rate on government bonds) as the discount rate for measuring defined benefit obligations.

BC3. The NZASB agreed with the requirement in IPSAS 39 that the discount rate used should reflect the time value of money as this ensures that the discount rate aligns with the currency and term of the post-employment benefit obligation.

결론 도출 근거**할인율**

BC2. IPSAS 39에는 확정 급여 채무의 할인율로 우량회사채 금리(또는 해당 채권에 대한 깊은 시장이 없는 경우 시장금리 국고채)의 사용에 관한 국제 회계 기준위원회(IASB®)의 IAS 19 종업원급여에 대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BC3. NZASB는 IPSAS 39의 요구사항에 따라 할인율이 퇴직 후 급여 채무의 통화 및 기간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때문에 사용된 할인율은 시간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동의했습니다.

자료: New Zealand Accounting Standards Board, "Public Benefit Entity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 39: Employee Benefits," 2017.

③ 공무원·군인 연금 관련 재무제표 주석정보

|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 | | | |
|--|----------------|-------------|----------------|----------------|
| <i>as at 30 June 2019</i> | | | | |
| 2019 Forecast at | | | Actual | |
| Budget | Budget | | 30 June | 30 June |
| 2018 | 2019 | Note | 2019 | 2018 |
| \$m | \$m | | \$m | \$m |
| Assets | | | | |
| 16,976 | 22,214 | | 20,892 | 19,340 |
| 20,770 | 21,622 | 12 | 24,287 | 21,385 |
| 42,630 | 38,533 | 13 | 44,453 | 51,117 |
| 39,344 | 39,267 | 14 | 40,815 | 36,256 |
| 29,942 | 32,131 | 15 | 33,057 | 29,422 |
| 1,036 | 1,418 | | 1,519 | 1,344 |
| 2,637 | 2,914 | | 2,887 | 2,817 |
| 155,867 | 164,316 | 16 | 178,025 | 159,018 |
| 15,384 | 15,729 | 17 | 16,109 | 15,416 |
| 3,980 | 4,026 | | 3,912 | 3,817 |
| 1,452 | 458 | | - | - |
| (1,085) | (1,250) | | - | - |
| 328,933 | 341,378 | | 365,756 | 339,932 |
| Liabilities | | | | |
| 6,636 | 6,609 | | 6,813 | 6,375 |
| 13,484 | 13,726 | 18 | 17,723 | 14,877 |
| 2,414 | 2,384 | | 2,523 | 2,424 |
| 112,890 | 112,057 | 19 | 110,477 | 115,652 |
| 44,732 | 49,794 | 11 | 58,364 | 45,294 |
| 9,987 | 11,414 | 20 | 13,179 | 10,991 |
| 8,473 | 9,228 | 21 | 10,364 | 8,682 |
| 198,616 | 205,212 | | 219,443 | 204,295 |
| 130,317 | 136,166 | | 146,313 | 135,637 |
| Net Worth | | | | |
| 40,293 | 35,205 | | 33,278 | 34,841 |
| 84,089 | 94,686 | 16 | 106,502 | 94,750 |
| 75 | 108 | | (34) | 53 |
| 124,457 | 129,999 | | 139,746 | 129,644 |
| 5,880 | 6,167 | 22 | 6,567 | 5,993 |
| 130,317 | 136,166 | | 146,313 | 135,637 |

NOTE 20. Retirement Plan Liabilities**주석 20. 퇴직제도부채**

The Government operates a defined benefit superannuation plan for qualifying employees who are members of the Government Superannuation Fund (GSF). The members' entitlements are defined in the Government Superannuation Fund Act 1956. Contributing members make regular payments to GSF and in return, on retirement, receive a defined level of income. GSF has been closed to new members since 1 July 1992.

정부는 정부연금기금(GSF)의 회원으로 가입된 자격 있는 가입자를 위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자격은 「정부연금기금법(1956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금 가입자들은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정부연금기금(GSF)에 납입하고 퇴직 시 정해진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정부연금기금제도는 1992년 7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이 제한되었습니다.

The GSF obligation has been calculated by GSF's actuary as at 30 June 2019. A Projected Unit Credit Method, based on balance-date membership data, is used for the valuation. This method requires the benefits payable from the GSF in respect of past service to be estimated and then discounted back to the valuation date.

정부연금기금의 지급의무는 2019년 6월 30일 시점에 보험계리사가 산정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은 대차대조표일의 가입자들의 자료에 근거하여 예측단위 적립방식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과거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될 금액을 추정한 후 평가일 시점으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The Government expects to make a contribution of \$711 million (2018: \$727 million in the year ending 30 June 2019) to GSF in the year ending 30 June 2020. In addition to its obligations to past and present employees, because GSF is liable for income tax, the Crown will be required to make additional contributions equivalent to the tax on future investment income.

정부는 2020년 6월 30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7억 1,100만달러(2018회계연도에는 2019년 6월 30일에 7억 2,700만달러로 추정)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공무원에 대한 지급의무에 추가하여 정부연금기금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책임운영기관은 미래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만큼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The principal assumptions used for the purposes of the GSF actuarial valuations are as follows:

정부연금기금의 계리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TE 20. Retirement Plan Liabilities

주석 20. 퇴직제도부채

| | Actual | |
|---|----------------------|----------------------|
| | 30 June 2019 % | 30 June 2018 % |
| Summary of assumptions | | |
| <i>For following year</i> | | |
| Discount rate | 1.3% | 1.8% |
| Expected return on plan assets | 5.0% | 5.0% |
| Expected rate of salary increases | 2.5% | 2.5% |
| Expected rate of inflation | 1.7% | 1.7% |
| <i>Beyond next year</i> | | |
| Discount rates between 2 and 21 years | 1.0% to 2.7% | 1.9% to 4.0% |
| Discount rates between 22 and 29 years | 2.8% to 3.1% | 4.0% to 4.4% |
| Discount rates between 30 and 36 years | 3.2% to 3.5% | 4.4% to 4.7% |
| Discount rates between 37 and 52 years | 3.5% to 4.3% | 4.8% |
| Discount rate from 53 years onwards | 4.3% | 4.8% |
| Expected return on plan assets | 5.0% | 5.0% |
| Expected rate of salary increases | 2.5% | 2.5% |
| Expected rate of inflation from years 2 to 18 | 1.7% | 1.7% |

NOTE 20. Retirement Plan Liabilities

주석 20. 퇴직제도부채

| 가정 요약 | 결산 | |
|--------------------|-------------------|-------------------|
| | 2019년 6월 30일 % | 2018년 6월 30일 % |
| 다음 연도 기간 동안 | | |
| 할인율 | 1.3% | 1.8% |
|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 | 5.0% | 5.0% |
| 예상 임금상승률 | 2.5% | 2.5% |
| 예상 물가상승률 | 1.7% | 1.7% |
| 다음 연도 이후 | | |
| 2년과 21년 사이의 할인율 | 1.0% to 2.7% | 1.9% to 4.0% |
| 22년과 29년 사이의 할인율 | 2.8% to 3.1% | 4.0% to 4.4% |
| 30년과 36년 사이의 할인율 | 3.2% to 3.5% | 4.4% to 4.7% |
| 37년과 52년 사이의 할인율 | 3.5% to 4.3% | 4.8% |
| 53년 이후 기간의 할인율 | 4.3% | 4.8% |
|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 | 5.0% | 5.0% |
| 예상 임금상승률 | 2.5% | 2.5% |
| 2년~18년 동안 예상 물가상승률 | 1.7% | 1.7% |

The discount rate used to present value the pension cash flows associated with this obligation has a risk-free rate based on the market yield curve of New Zealand Government Bonds. Given the short-term nature of market data on Government Bonds in New Zealand, we also assume a single long-term equilibrium risk-free interest rate of 4.30% based on macroeconomic extrapolation. Discount rates are then smoothed over a minimum of 10 years from the end of the market yield curve to that long-term rate.

이 의무와 관련된 연금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율은 뉴질랜드 국채의 시장 수익률 곡선을 기반으로 한 무위험 이자율입니다. 뉴질랜드 국채의 만기가 상대적으로 단기임을 감안하여, 우리는 또한 거시경제 추정에 근거하여 하나의 장기 균형 무위험 이자율을 4.30%로 가정합니다. 그런 다음 할인율은 시장 수익률 곡선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10년 동안 그 장기 이자율로 조정됩니다.

뉴질랜드 정부연금기금 연례보고서(연금종류 참고)

Membership Commentary
뉴질랜드 정부연금기금 연례보고서

Number of contributors, by scheme

| GSF Scheme | 2019 | % of Total | 2018 |
|--|--------------|---------------|--------------|
| General Scheme | 6,801 | 95.31 | 7,376 |
| Armed Forces | 122 | 1.71 | 123 |
| Police | 188 | 2.63 | 213 |
| Prisons Service | 24 | 0.34 | 29 |
| Judges and Solicitor-General | - | 0.00 | 1 |
| Parliamentary | 1 | 0.01 | 1 |
| Total contributors at end of year | 7,136 | 100.00 | 7,743 |

| 제도별 기여자 수 | 2019 | % of Total | 2018 |
|-----------|-------|------------|-------|
| 일반 공무원 | 6,801 | 95.31 | 7,376 |
| 군인 | 122 | 1.71 | 123 |
| 경찰 | 188 | 2.63 | 213 |
| 교정 | 24 | 0.34 | 29 |
| 판사 | - | 0.00 | 1 |
| 의회 | 1 | 0.01 | 1 |
| 계 | 7,136 | 100.0 | 7,743 |

Movement in total number of members during the past five years:

| Year ended 30 June | Total Contributors | Total Annuitants | Total Deferred Pensions | Total Members | Decrease During Year |
|-----------------------|-----------------------|---------------------|-------------------------------|------------------|----------------------------|
| 2015 | 9,767 | 45,967 | 4,827 | 60,561 | (1,500) |
| 2016 | 9,060 | 45,635 | 4,508 | 59,203 | (1,358) |
| 2017 | 8,356 | 45,279 | 4,115 | 57,750 | (1,453) |
| 2018 | 7,743 | 44,834 | 3,739 | 56,316 | (1,434) |
| 2019 | 7,136 | 44,417 | 3,323 | 54,876 | (1,440) |

뉴질랜드 정부연금기금 연례보고서(연금종류 참고)

Membership Commentary
 뉴질랜드 정부연금기금 연례보고서

| 6. 30. 기준 | 기여자 | 수급자 | 유예자 | 총가입자 | 감소인원 |
|-----------|-------|--------|-------|--------|---------|
| 2015 | 9,767 | 45,967 | 4,827 | 60,561 | (1,500) |
| 2016 | 9,060 | 45,635 | 4,508 | 59,203 | (1,358) |
| 2017 | 8,356 | 45,279 | 4,115 | 57,750 | (1,453) |
| 2018 | 7,743 | 44,834 | 3,739 | 56,316 | (1,434) |
| 2019 | 7,136 | 44,417 | 3,323 | 54,876 | (1,440) |

자료: Government Superannuation Fund Authority,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2019*, 2019, pp. 24~25

5. 캐나다

① 회계실체와 재무제표 포괄 범위 관련 규정

캐나다 포괄 범위 관련 규정

Note 1. Summary of Significant Accounting Policies

주석 1. 중요한 회계 정책의 요약

Reporting entity

The reporting entity of the Government of Canada includes all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which comprise the legal entity of the Government as well as other government organizations, including Crown corporations, which are separate legal entities but are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For financial reporting purposes, control is defined as the power to govern the financial and operating policies of an organization with benefits from the organization's activities being expected, or the risk of loss being assumed by the Government.

보고 실체

캐나다 정부의 보고실체는 정부의 법적 실체를 구성하는 모든 정부기관과 별도의 법인이지만 정부가 통제하는 국영기업을 비롯한 기타 정부기관을 포함합니다. 재무보고 목적상 통제는 조직의 활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 위험으로 조직의 재정 및 운영 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으로 정의됩니다.

All organizations defined as departments and as Crown corporations in the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are included in the reporting entity. Other organizations not listed in the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may also meet the definition of control and are included in the Government's reporting entity if their revenues, expenses, assets or liabilities are significant.

「재무행정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에서 부처(departments) 및 국영기업으로 정의된 모든 조직은 보고실체에 포함됩니다. 「재무행정법」에 등재되지 않은 다른 조직도 통제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으며 수익·비용·자산 또는 부채가 중요할 경우 정부회계실체에 포함됩니다.

자료: Government of Canada, *Public Accounts of Canada 2019*, 2019, p. 54

② 공무원·군인 연금 ‘할인율’ 관련 회계기준

캐나다 연금 관련 회계기준

CICA Handbook PSA 3250 Retirement Benefits

CICA 핸드북 PSA 3250 퇴직 급여

023. For defined benefit plans, there are two main groups of actuarial cost methods. They are level cost methods and accrued benefit methods. Under the level cost methods, retirement benefit expenses are computed in such a manner as to produce a total current period benefit cost that remains constant, either in absolute dollars or as a percentage of salary, throughout an employee's service life. However, level cost methods are not recommended for accounting purposes because they do not reflect the cost of benefits earned by employees to the financial statement date.

023. 확정급여제도를 위한 두 가지 주요 보험수리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level cost methods와 accrued benefit methods입니다. level cost methods하에서는 퇴직급여비용은 종업원의 근무기간 동안 전체 현재 기간 급여 비용을 절대적인 금액 또는 급여의 일정비율로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level cost methods는 재무제표일 현재 종업원에 의해 발생한 급여의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회계 목적으로 추천되지 않습니다.

Actuarial Assumptions

040. Accounting for retirement benefit obligations of defined benefit plans requires forecasts of future events, such as inflation rates, investment returns, interest rates, wage and salary increases, medical inflation and employee turnover and mortality. Such forecasts form the basis of actuarial assumptions.

보험수리적 가정

040. 확정급여제도의 퇴직급여부채의 회계처리는 물가상승률, 투자수익률, 할인율, 임금 및 급여의 증가, 의료비 증가 및 종업원의 이직률과 사망률과 같은 미래 사건의 예측을 고려합니다. 이런 예측은 보험수리적 가정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044. The actuarial assumptions underlying the valuation of the retirement benefit liability and expense would be internally consistent. For example, when a government determines its discount rates by reference to its plan asset earnings, the assumptions used to determine the short-term forecast incorporated in the discount rates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short-term forecast of rates of return on assets currently held in the fund. When a government determines its discount rates by reference to its cost of borrowing, the assumptions used to determine the short-term forecast incorporated in the discount rates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specific rates of interest and the periods committed to by the government on the amounts borrowed.

044. 퇴직급여부채와 비용의 평가 시 적용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캐나다 연금 관련 회계기준

CICA Handbook PSA 3250 Retirement Benefits
CICA 핸드북 PSA 3250 퇴직 급여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사외적립자산 수익을 참고로 하여 할인율을 결정할 때, 할인율의 단기 예측은 기금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수익률의 단기 예측과 일관성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정부가 차입원가를 참고로 하여 할인율을 결정할 때, 할인율의 단기 예측은 정부 차입한 금액에 할당된 특정 이자율 및 기간과 일관성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료: CICA Handbook,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 3250: Retirement Benefits," 2010.

③ 공무원·군인 연금 관련 재무제표 주석정보

| Government of Canada | | |
|---|------------------|-----------------------|
| Consolidated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 | |
| as at March 31, 2019 | | |
| <i>(in millions of dollars)</i> | | |
| | 2019 | 2018 |
| | | Restated (Note 2a) |
| Liabilities | | |
| <i>Accounts payable and accrued liabilities</i> | | |
| Amounts payable related to tax | 65,200 | 61,876 |
| Other accounts payable and accrued liabilities | 42,674 | 37,692 |
| Provision for contingent liabilities (Note 7) | 26,447 | 23,030 |
| Environmental liabilities and asset retirement obligations (Note 8) | 13,192 | 12,291 |
| Deferred revenue | 7,500 | 8,220 |
| Interest and matured debt | 4,694 | 4,690 |
| Total accounts payable and accrued liabilities | 159,707 | 147,799 |
| <i>Interest-bearing debt</i> | | |
| Unmatured debt (Note 9) | 736,915 | 721,201 |
| Pensions and other future benefits | | |
| Public sector pensions (Note 10) | 168,782 | 170,914 |
| Other employee and veteran future benefits (Note 10) | 113,862 | 104,793 |
| Total pensions and other future benefits | 282,644 | 275,707 |
| Other liabilities (Note 11) | 5,905 | 5,670 |
| Total interest-bearing debt | 1,025,464 | 1,002,578 |
| Total liabilities | 1,185,171 | 1,150,377 |
| Financial assets | | |
| <i>Cash and accounts receivable</i> | | |
| Cash and cash equivalents (Note 12) | 37,635 | 34,642 |
| Taxes receivable (Note 13) | 127,561 | 123,035 |
| Other accounts receivable (Note 13) | 11,845 | 14,380 |
| Total cash and accounts receivable | 177,041 | 172,057 |
| <i>Foreign exchange accounts (Note 14)</i> | 99,688 | 96,938 |
| <i>Loans, investments and advances</i> | | |
| Enterprise Crown corporations and other government business enterprises (Note 15) | 108,169 | 100,775 |
| Other loans, investments and advances (Note 16) | 25,743 | 25,596 |
| Total loans, investments and advances | 133,912 | 126,371 |
| <i>Public sector pension assets (Note 10)</i> | 2,406 | 2,124 |
| Total financial assets | 413,047 | 397,490 |
| Net debt | (772,124) | (752,887) |
| Non-financial assets | | |
| Tangible capital assets (Note 17) | 78,942 | 73,835 |
| Inventories (Note 17) | 6,601 | 6,679 |
| Prepaid expenses and other | 1,131 | 1,119 |
| Total non-financial assets | 86,674 | 81,633 |
| Accumulated deficit (Note 6) | (685,450) | (671,254) |
| Contractual obligations and contractual rights (Note 19) | | |
| The accompanying notes are an integral part of these consolidated statements. | | |
| Details can be found in other sections (unaudited) of this volume. | | |

Note 10. Public Sector Pensions and Other Employee and Veteran Future Benefits

주석 10. 공공부문 연금 및 기타 종업원과 퇴역군인 미래 수당

(a) Overview of benefit plans

i. Pension benefits

The Government sponsors a number of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covering substantially all the employees of the federal public service, as well as certain Public Service corporations as defined in the Public Service Superannuation Act, territorial governments, members of the Canadian Forces (including the Reserve Force), members of 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federally appointed judges and Members of Parliament, including Senators.

(a) 급여 제도의 개요

i. 연금급여

정부는 공공서비스 부문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연금법(Public Service Superannuation Act)」에 의해 정의되는 공공기관, 연방 정부, 예비군을 포함한 캐나다 군인, 캐나다 연방 경찰, 연방 정부에서 임명한 판사 및 상원의원을 포함한 의회의 모든 종업원에 대하여 다수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지원합니다.

(g) Actuarial assumptions

The assumptions used in the actuarial valuations for accounting purposes are based on the Government's or the consolidated Crown corporations and other entities management's best estimates of expected long-term experience and short-term forecasts, as well as the majority of the demographic assumptions underlying the most recent or any in-progress actuarial valuations for funding purposes. The assumptions include estimates of future inflation, interest rates, returns on investments, general wage increases, workforce composition, retirement rates and mortality rates.

(g) 보험수리적 가정

회계 목적을 위해 보험수리적 평가에서 사용된 가정은 정부, 연결실체인 정부기관 및 기타 기관 경영진의 장기 경험 및 단기 예측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기반으로 하며, 대부분의 인구통계학적 가정은 자금조달 목적으로 최근 또는 진행 중인 평가에 기초합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은 물가상승률, 할인율, 투자수익률, 일반적인 임금 상승, 노동인구 구성, 퇴직률 및 사망률의 추정을 포함합니다.

The discount rates used to measure the present value of the accrued obligations for public sector pensions and other employee and veteran future benefits sponsored by the Government are as follows:

- For funded pension benefits, the streamed expected rates of return on invested funds.

Note 10. Public Sector Pensions and Other Employee and Veteran Future Benefits

주석 10. 공공부문 연금 및 기타 종업원과 퇴역군인 미래 수당

- For unfunded pension and other future benefits, the Government's cost of borrowing derived from the yields on the actual zero-coupon yield curve for Government of Canada bonds which reflect the timing of the expected future cash flows.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부문 연금 및 기타 종업원과 퇴역군인 급여에 대한 의무 발생액의 현재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식 연금급여의 경우 적립된 기금의 연속 예상 투자수익률
- 미적립식 연금급여와 이의 미래급여의 경우 예상되는 시점의 미래 현금흐름을 반영하는 캐나다 국채(Government of Canada bonds)의 실질적 무위험 수익률 곡선에서 도출되는 정부의 차입이율

The principal actuarial assumptions used in measuring the accrued benefit obligations as at March 31 for Government-sponsored plans, as well as the related future benefit and interest expenses for the year, were as follows:

| | 2019 | | 2018 | |
|---|-----------------------------|-------------------------------|-----------------------------|-------------------------------|
| | Accrued benefit obligations | Benefit and interest expenses | Accrued benefit obligations | Benefit and interest expenses |
| Discount rates | | | | |
| Funded pension benefits ¹ | 5.8% | 5.0% | 5.8% | 4.8% |
| Unfunded pension benefits ² | 1.9% | 2.2% | 2.2% | 2.2% |
| Other employee and veteran future benefits ² | 1.9% | 2.2% | 2.2% | 2.4% |
| Expected rate of return on investments..... | - | 5.0% | - | 4.8% |
| Long-term rate of inflation..... | 2.0% | 2.0% | 2.0% | 2.0% |
| Long-term general wage increase..... | 2.6% | 2.6% | 2.6% | 2.6% |
| Assumed health care cost trend rates | | | | |
| Initial health care cost trend rate..... | 5.5% | 5.9% | 5.9% | 5.4% |
| Cost trend rate is expected to stabilize at..... | 4.8% | 4.8% | 4.8% | 4.8% |
| Year that the rate is expected to stabilize..... | 2029 | 2028 | 2028 | 2027 |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당해 연도의 미래급여 및 이자비용뿐만 아니라 3월 31일에 지급급여 의무 발생액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한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19 | | 2018 | |
|---------------------|--------|-----------|--------|-----------|
| | 의무 발생액 | 급여 및 이자비용 | 의무 발생액 | 급여 및 이자비용 |
| 할인율 | | | | |
| 적립식 연금 | 5.8% | 5.0% | 5.8% | 4.8% |
| 미적립식 연금 | 1.9% | 2.2% | 2.2% | 2.2% |
| 기타 종업원 및 퇴역군인 미래 급여 | 1.9% | 2.2% | 2.2% | 2.4% |
| 예상 투자 수익률 | - | 5.0% | - | 4.8% |

캐나다 국가재무제표 및 주석

Note 10. Public Sector Pensions and Other Employee and Veteran Future Benefits

주석 10. 공공부문 연금 및 기타 종업원과 퇴역군인 미래 수당

| | 2019 | | 2018 | |
|----------------|--------|-----------|--------|-----------|
| | 의무 발생액 | 급여 및 이자비용 | 의무 발생액 | 급여 및 이자비용 |
| 장기 물가상승률 | 2.0% | 2.0% | 2.0% | 2.0% |
| 장기 일반 임금상승률 | 2.6% | 2.6% | 2.6% | 2.6% |
| 보건의료 비용 추정 추세율 | | | | |
| 초기 보건의료 비용 추세율 | 5.5% | 5.9% | 5.9% | 5.4% |
| 안정화 기대 비용 추세율 | 4.8% | 4.8% | 4.8% | 4.8% |
| 안정화 기대 연도 | 2029 | 2028 | 2028 | 2027 |

The discount rates used to measure the significant classes of pensions and other employee future benefits sponsored by the consolidated Crown corporations and other entities are based on a variety of methodologies.

To measure the present value of their accrued benefit obligations, these consolidated Crown corporations and other entities used expected rates of return on invested funds ranging 5.3% to 6.3% (5.3% to 6.4% in 2018) for the funded pension benefits, discount rates ranging from 2.2% to 3.3% (2.2% to 3.5% in 2018) for the unfunded pension benefits and discount rates ranging from 2.1% to 3.5% (2.2% to 3.5% in 2018) for the other employee future benefits.

상당한 규모의 연금 및 정부기관 등 기타 기관이 지원하는 종업원의 미래 수당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은 다양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급여 의무발생액을 현재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 연결실체인 정부기관 및 기타 기관들은 적립식 연금급여의 경우 5.3%에서 6.3%의(2018년에는 5.3%에서 6.4%) 기대수익률, 미적립식 연금급여의 경우에는 2.2%에서 3.3%(2018년 2.2%에서 3.5%)의 할인율, 기타 종업원 미래급여의 경우 2.1%에서 3.5%(2018년에는 2.2%에서 3.5%)의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자료: Government of Canada, *Public Accounts of Canada 2019*, 2019, pp. 72~77

6. 프랑스

프랑스 연금 관련 회계기준

Norme n° 13 Les engagements à mentionner dans l'annexe
프랑스 정부회계 기준 13. 부속서에 명시된 약정

Norme n° 13 Les engagements à mentionner dans l'annexe

I.2. Le cas des engagements de retraites des fonctionnaires

La réglementation française applicable aux commerçants prévoit que « le montant des engagements de l'entreprise en matière de pensions, de compléments de retraites, d'indemnités et d'allocations en raison du départ à la retraite ou avantages similaires des membres ou associés de son personnel est indiqué dans l'annexe. Par ailleurs, les entreprises peuvent décider d'inscrire au bilan sous forme de provision, le montant correspondant à tout ou partie de ces engagements » (article L 123-13 du code de commerce). Cependant, dans sa recommandation 2003 R 01 relative aux règles de comptabilisation et d'évaluation des engagements de retraites et avantages similaires, le CNC a rappelé que l'inscription au bilan des engagements des entreprises constituait une méthode préférentielle. Si la situation de l'Etat devait être assimilée à celle d'un régime d'employeur, il conviendrait donc d'opter pour la méthode fournissant la meilleure information dans ce cas et de prévoir alors l'inscription de l'engagement en passif.

La recommandation du CNC reprend pour l'essentiel les dispositions de la norme internationale 19 émise par l'IASB. Ces dispositions sont applicables à partir de 2005, au moins aux comptes consolidés des groupes cotés, en vertu d'un règlement européen. Elles prévoient que les employeurs doivent comptabiliser au passif les engagements correspondant aux retraites qu'ils s'engagent à verser à leurs salariés. Cette norme définit trois catégories de régime de retraite : les régimes nationaux obligatoires, les régimes à cotisations définies et les régimes à prestations définies. Étant destinée aux entreprises, la norme ne traite pas de la première catégorie car ce ne sont pas des régimes d'employeurs.

Le Comité secteur public de l'IFAC a engagé une réflexion sur la comptabilisation des obligations en matière de politique sociale. Cette réflexion porte sur la comptabilisation des retraites versées par les régimes nationaux obligatoires mais, dans l'attente des conclusions, la question précise des retraites des fonctionnaires n'a pas été traitée explicitement. En particulier, la question des régimes financés par répartition reste ouverte.

Si plusieurs pays ont inscrit des engagements de retraite au passif (États-Unis, Canada, Australie, Nouvelle Zélande), en Europe, seule la Suède a introduit cette

Norme n° 13 Les engagements à mentionner dans l'annexe 프랑스 정부회계 기준 13. 부속서에 명시된 약정

disposition pour des régimes « chapeaux » directement à la charge de l'Etat.
L'absence de norme pour les régimes nationaux obligatoires et notamment la question de l'existence et la nature des engagements auxquels ils donnent lieu, pose des problèmes de comparabilité importants dans les pays où ces régimes sont très développés.

Dans l'attente d'une position internationale sur ces questions, la norme retient le principe d'une inscription en annexe. Il convient cependant de souligner que des évolutions attendues pourraient remettre ce choix en question.

L'engagement mentionné dans l'annexe au titre des retraites des fonctionnaires de l'Etat est évalué en utilisant la méthode des unités de crédit projetée présentée dans la norme comptable internationale IAS 19 Avantages du personnel.

Pour le calcul des engagements de retraites des fonctionnaires de l'Etat, le champ retenu est restreint aux seules charges de pensions des fonctionnaires titulaires à l'exclusion des recettes et charges annexes liées aux pensions des fonctionnaires (cotisations, transferts de compensation démographique vieillesse), des subventions et charges de pension actuellement garanties par l'Etat ou susceptibles de l'être à moyen terme, ainsi que des charges de fonctionnement.

기준 13. 부속서에 명시된 약정

I.2. 공무원 연금약정의 경우

해당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프랑스 규정에 따르면 “연금, 보충 연금, 수당 및 퇴직 관련 수당 또는 회사의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유사한 급여에 관한 회사의 약정 금액은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대차대조표에 관련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당부채로 공시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 L 123-13조). 그러나 국가회계위원회(CNC, Conseil national de la comptabilité)는 퇴직 약정과 유사한 급여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규칙에 대한 2003년 R01 권고에서 대차대조표에 실체의 약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의 상황이 일반기업과 유사한 경우 해당 약정의 최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부채로 인식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NC의 권고안은 본질적으로 IASB가 발행한 국제회계기준(IAS) 19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05년부터 유럽연합 규정에 의한 연결계정 그룹에 적용됩니다. 권고안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연금에 해당하는 약정을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회계기준이 정의하는 연금의 범주로 첫 번째, 국가계획형제도, 두 번째, 확정기여형 제도, 세 번째, 확정급여형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 회계기준은 고용주가 지급하는 제도가 아닌 첫 번째 범주를 다루지 않습니다.

IFAC 공공부문위원회(IFAC Public Sector Committee)는 사회 정책 의무에 대한 회계를 반영

Norme n° 13 Les engagements à mentionner dans l'annexe
프랑스 정부회계 기준 13. 부속서에 명시된 약정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국가 제도에 의해 지불된 연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반영하지만 결론 도출은 계류 중에 있으며, 공무원 연금 관련 사안은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과식(pay-as-you-go) 제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몇몇 국가들(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이 연금부채를 인식하고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유일하게 해당 조항을 도입했는데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hat” 제도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국가제도에 대한 회계기준의 부재와 정부 약정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쟁점은 특히 관련 제도가 고도로 발전된 국가에서 비교 가능성의 저하를 초래합니다. 관련 문제에 대해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국제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프랑스 국가회계기준은 연금부채를 부속서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회계기준의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선택에 의문의 여지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속서에 언급된 공무원 연금 관련 약정은 국제회계기준 IAS 19 종업원 급여(Employee Benefits)에 제시된 예측단위 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공무원의 연금부채 계산 시, 공무원 연금지출에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수령액 및 부대비용(기여금, 인구통계학적 노령연금 지급), 국가가 현재 보장하고 있거나 중기 보장이 예상되는 보조금, 연금비용 및 운영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Note 33. Engagements de retraite de l'État**주석 33. 국가의 퇴직연금 약정**

En application des normes comptables en vigueur, les engagements de retraite de l'État au titre de ses fonctionnaires civils et militaires sont présentés dans l'annexe au compte général de l'État.

시행 중인 회계기준에 따라, 정부의 공무원 및 군인의 퇴직 관련 국가의 의무는 일반 정부 계정의 부속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33.1.1 Engagement de retraite**33.1.1.1 CONTEXTE GÉNÉRAL ET RÉFORME DES RETRAITES**

Le régime de retraite de la fonction publique de l'État (FPE) est un régime fonctionnant en répartition : les retraites payées au cours d'une période sont financées par les recettes du régime de cette période. Dans le cadre de ce régime régi par le code des pensions civiles et militaires de retraite (CPCMR), l'État s'engage à verser une retraite dont le montant acquis est déterminable à chaque clôture. L'engagement de l'État correspond à la valeur actuelle probable des montants qui seront versés en contrepartie de ces droits constatés.

33.1.1 퇴직 약정**33.1.1.1 일반적인 문맥과 연금개혁**

정부 공공 서비스 연금계획(FPE)은 부과방식 제도입니다. 한 기간에 지불된 연금은 해당 기간 동안의 연금제도 수입으로 충당됩니다. 공무원 및 군인의 퇴직 연금제도(CPCMR)를 관장하는 이 제도 하에서, 국가는 연금 지불의 책임을 지며, 그 금액은 매기간 말(폐쇄)마다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약정은 이러한 발생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될 금액의 현재 가치에 해당합니다. (중략)

Toutefois, à l'échelle internationale, se pose aux États la question de la façon de comptabiliser au passif de leur bilan ou dans l'annexe les engagements envers leurs salariés ou anciens salariés dans le cadre de régimes par répartition. Si la méthode de calcul proposée par la norme IAS 19 permet de disposer d'un référentiel normé d'évaluation des engagements de retraite à prestations définies, son application à l'État pose question dès lors qu'il s'agit d'un régime de base fonctionnant en répartition.

En effet, la norme retenue concerne généralement des régimes supplémentaires d'entreprises, ne supportant donc pas l'intégralité des retraites des agents et pour lesquels les droits sont couverts par les actifs inscrits au bilan. Dans ces conditions, la question de la comptabilisation des engagements de l'État au titre des retraites des fonctionnaires de l'État et des militaires continue à faire l'objet de réflexions.

La nécessité d'une certaine prudence dans l'utilisation même du concept d'engagements en matière de retraite doit donc être rappelée compte tenu de l'existence de plusieurs méthodes d'évaluation, de la sensibilité des calculs aux hypothèses.

그러나 국제적으로 국가가 부과방식으로 지급하는 현직 및 퇴직 직원에 대한 부채를 대차대조표 또는 부속서의 약정사항에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IAS 19에 따른 산정방식이 확정급여형 연금을 평가하는 기준의 토대가 된다면, 국가에 적용 시 재분배적 제도(부과식)라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채택된 회계기준은 일반적으로 기업 관련 제도에 적용되며 직원의 퇴직금 전부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 권리가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한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에 대한 국가약정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존재하고 가정에 대한 계산의 민감도를 감안할 때 연금의무 개념을 사용할 때 어느 정도의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33.1.1.2 ÉVALUATION DE L'ENGAGEMENT

L'utilisation de la méthode des unités de crédit projetées conduit, avec un taux d'actualisation de - 0,30%, à un niveau des engagements d'environ 2 080 Md€, soit 91,1% du PIB. Par comparaison, les engagements au 31 décembre 2017 s'élevaient à 2 212 Md€ avec le taux d'actualisation retenu dans le CGE 2017 de - 0,55%.

La valeur des engagements dépend largement du taux d'actualisation retenu, comme le montre la simulation cidessous:

| En M€ | Taux d'actualisation | | | |
|----------------|----------------------|-----------|-----------|-----------|
| | -0,30% | 0,00% | 1,00% | 1,50% |
| Engagements | 2 080 353 | 1 938 228 | 1 560 162 | 1 413 499 |
| dont retraités | 1 035 413 | 989 700 | 859 238 | 804 465 |
| dont actifs | 1 044 940 | 948 528 | 700 924 | 609 034 |

33.1.1.2 약정액 평가

예측단위 적립방식에 약 -0.30%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2018년 연금약정 총액은 약 2조 80억유로 이고, 이는 GDP의 91.1%입니다. 이에 반해 2017년 할인율 -0.55%로 산정한 2017년 12월 31일의 약정액은 2조 212억유로였습니다.

약정액의 가치는 다음의 시뮬레이션에 표시된 바와 같이 사용된 할인율에 크게 좌우됩니다.

| 단위: 100만 유로 | 할인율 | | | |
|-------------|-----------|-----------|-----------|-----------|
| | -0.30% | 0.00% | 1.00% | 1.50% |
| 약정 | 2,080,353 | 1,938,228 | 1,560,162 | 1,413,499 |
| 퇴직자 | 1,035,413 | 989,700 | 859,238 | 804,465 |
| 재직자 | 1,044,940 | 948,528 | 700,924 | 609,034 |

43.4 ENGAGEMENTS DE RETRAITE DE L'ÉTAT

43.4 국가연금약정

43.4.1 Régime de retraite des fonctionnaires civils et des militaires

43.4.1.1 ENGAGEMENT DE RETRAITE

CHAMP ET METHODE

Le champ du calcul des engagements de retraite de l'Etat correspond aux seules charges de pension des fonctionnaires titulaires et des militaires : il ne prend en compte ni les cotisations, ni les charges annexes du regime (tels que les transferts au titre de la compensation demographique vieillesse), ni les depenses de fonctionnement des services administratifs.

43.4.1 공무원 및 군인을 위한 연금계획

43.4.1.1 퇴직연금약정

분야 및 방법

국가 퇴직연금약정의 계산 범위는 공무원과 군인에 한정됩니다: 기여금 및 부수적인 비용(예: 노령자 보상을 위한 이체 비용) 및 행정 서비스 운영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HYPOTHESES ET PARAMETRAGE/가정과 매개 변수

Les engagements ont ete calcules a la date du 31 decembre 2018.

Le calcul des engagements implique d'actualiser les flux futurs.

La méthode d'évaluation des engagements de retraite, préconisée par la norme n° 13, se rapproche de la norme IAS 19, qui prévoit l'utilisation d'un taux de marché au 31 décembre de l'année pour actualiser les engagements. Ce taux d'actualisation est donc susceptible de varier d'un exercice sur l'autre en fonction des fluctuations du marché des taux d'intérêt.

약정액은 2018년 12월 31일 현재로 계산되었습니다. 약정액 계산에는 미래 현금 흐름을 수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정부회계기준서 13에서 권장하는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은 IAS 19와 유사하며,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약정액을 갱신합니다. 따라서 이 할인율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Dans le cadre du compte général de l'État 2013, une nouvelle obligation d'État, dont l'échéance est plus adaptée à la duration des engagements du régime de retraite des fonctionnaires civils de l'État et des militaires a été retenue comme référence : il

s'agit de l'OAT€i 2032 indexée sur l'inflation de la zone euro, à défaut d'existence d'une obligation d'État indexée sur l'inflation française de maturité proche de la duration du régime.

2013년 일반 정부 회계의 일환으로, 공무원 및 군인 연금의 약정기간에 더 적합한 새로운 정부 공채가 참조로 사용되었습니다 : 이것은 제도의 기간과 만기가 유사한 프랑스 인플레이션에 연동된 정부 채권이 없는 경우 유로 지역 인플레이션에 연동한 OAT€i 2032입니다.

Comme pour les CGE des années 2014 à 2017, il est prévu de retenir deux références d'OAT€i (à maturité différente) selon la duration du régime : - si la duration du régime est supérieure à 10 ans, le taux choisi est le rendement de l'OAT€i 2032, soit de - 0,30 % au 31 décembre 2018 ; - si la duration du régime est inférieure à 10 ans, le taux retenu est le rendement de l'OAT€i 2024, soit - 0,96 % au 31 décembre 2018.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CGE는 계획 기간에 따라 두 개의 OAT€i(다른 만기 기준)를 유지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선택한 비율 OAT€i 2032에 반환, 즉 2018년 12월 31일에 0.30 %; -계획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OAT€i 2024의 수익률, 즉 2018년 12월 31일 기준 0.96%가 사용됩니다.

Au 31 décembre 2018, le taux d'actualisation retenu pour le calcul des engagements de retraite au titre du régime des fonctionnaires, au titre de La Poste, du FSPOEIE, du dispositif de neutralisation financière des effets de la décentralisation est de - 0,30% (OAT€i 2032), contre 0,55 % à fin 2017 (OAT€i 2032).

정부산업노동연금기금(FSPOEIE)의 프랑스 우정공사(La Poste)의 공무원 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약정 산정에 사용된 할인율은 분권화 효과에 대한 재무 중화 메커니즘이 2018년 12월 31일 현재 0.30%입니다(유로존 물가연동국채(OAT€I) 2032). 이는 0.55%였던 2017년 말과 대비됩니다(유로존 물가연동국채(OAT€I) 2032).

7.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정부 개시재무제표(2013. 1. 1.)

1. Introduction

1. 도입

B. IPSAS / EPSAS

In order to permit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ublic finances, the accounting is based on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IPSAS). These are well established international standards used by many other countries. The IPSAS are based o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with modifications to take into account the special nature of the public sector. The assets and liabilit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are divided into non-current and current assets and liabilities based on the IPSAS classification (based on time, i.e. up to, or more than one year).

B. IPSAS / EPSAS

공공 재정의 국제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IPSAS)을 기반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기준은 다양한 국가에서 널리 사용하는 확립된 국제 기준입니다. IPSAS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기반으로 함과 동시에 공공 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자산과 부채는 IPSAS 분류기준(시간 기준, 예: 최대 1년 이상)에 따라 비유동 자산과 유동 자산 및 부채로 구분됩니다.

The following table shows which IPSAS standards have been applied under the new budget law. Deviations from IPSAS are described in the "Accounting policies" section or in the notes on items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If an IPSAS standard was not applicable, it means that no transactions relevant to the Federal Government existed as at the 1 January 2013 reporting date.

다음 표는 새로운 예산법에 적용된 IPSAS 도입 현황을 보여줍니다. IPSAS와의 편차는 “회계 정책” 섹션이나 재무상태표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IPSAS 기준이 있다면, 2013년 1월 1일 보고일에 연방 정부와 관련된 어떠한 거래도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OVERVIEW OF IPSAS APPLICATION

| NO. | TITLE | APPLICATION OF STANDARD AS AT 1 JANUARY 2013 |
|---------|---|--|
| IPSAS 1 |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 implemented |
| IPSAS 2 | Cash flow statements | implemented |
| IPSAS 3 |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 implemented |

| | | |
|-----------------|---|-----------------------|
| IPSAS 4 |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 | implemented |
| IPSAS 5 | Borrowing costs | implemented |
| IPSAS 6 |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 partially implemented |
| IPSAS 7 | Investments in associates | implemented |
| IPSAS 8 | Joint ventures | not applicable |
| IPSAS 9 | Exchange transactions | implemented |
| IPSAS 10 | Financial r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 | not applicable |
| IPSAS 11 | Construction contracts | not applicable |
| IPSAS 12 | Inventories | implemented |
| IPSAS 13 | Leases | implemented |
| IPSAS 14 | Events after the reporting date | implemented |
| IPSAS 15 |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 and presentation | partially implemented |
| IPSAS 16 | Investment property | not applicable |
| IPSAS 17 |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 implemented |
| IPSAS 18 | Segment reporting | implemented |
| IPSAS 19 |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 implemented |
| IPSAS 20 | Related party disclosures | implemented |
| IPSAS 21 | Impairment of non-cash-generating assets | implemented |
| IPSAS 22 | Disclosure of financial information about the general government sector | implemented |
| IPSAS 23 | Revenue from non-exchange transactions (taxes and transfers) | partially implemented |
| IPSAS 24 | Presentation of budget information in financial statements | implemented |
| IPSAS 25 | Employee benefits | partially implemented |
| IPSAS 26 | Impairment of cash-generating assets | not applicable |
| IPSAS 27 | Agriculture | not applicable |
| IPSAS 28 |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 implemented |
| IPSAS 29 |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 partially implemented |
| IPSAS 30 |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 implemented |
| IPSAS 31 | Intangible assets | implemented |
| IPSAS 32 |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grantor | not applicable |

Table 3: IPSAS implementation - overview

| 기준서 번호 | 기준서명 | 도입 현황 |
|----------|-----------------------|-------|
| IPSAS 1 | 재무제표의 표시 | 도입 |
| IPSAS 2 | 현금흐름표 | 도입 |
| IPSAS 3 |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도입 |
| IPSAS 4 | 환율 변동효과 | 도입 |
| IPSAS 5 | 차입원가 | 도입 |
| IPSAS 6 |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 부분 도입 |
| IPSAS 7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 도입 |
| IPSAS 8 |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해당 없음 |
| IPSAS 9 | 교환거래로 인한 수익 | 도입 |
| IPSAS 10 |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 해당 없음 |
| IPSAS 11 | 건설계약 | 해당 없음 |
| IPSAS 12 | 재고자산 | 도입 |
| IPSAS 13 | 리스 | 도입 |
| IPSAS 14 | 보고일 이후의 사건 | 도입 |
| IPSAS 15 | 금융상품: 공시와 표시 | 부분 도입 |
| IPSAS 16 | 투자부동산 | 해당 없음 |
| IPSAS 17 | 유형자산 | 도입 |
| IPSAS 18 | 부문보고 | 도입 |
| IPSAS 19 |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도입 |
| IPSAS 20 | 특수관계자 공시 | 도입 |
| IPSAS 21 | 비현금 창출자산의 손상 | 도입 |
| IPSAS 22 | 일반 정부부문의 재무정보 공시 | 도입 |
| IPSAS 23 | 비교환거래로 인한 수익(조세 및 이전) | 부분 도입 |
| IPSAS 24 | 재무제표에서 예산정보의 표시 | 도입 |
| IPSAS 25 | 종업원 급여 | 부분 도입 |
| IPSAS 26 | 현금창출 자산의 손상 | 해당 없음 |
| IPSAS 27 | 농림어업 | 해당 없음 |
| IPSAS 28 | 금융상품 표시 | 도입 |
| IPSAS 29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부분 도입 |
| IPSAS 30 | 금융상품 공시 | 도입 |
| IPSAS 31 | 무형자산 | 도입 |
| IPSAS 32 | 민간투자사업: 사업허가자 | 해당 없음 |

OVERVIEW OF IPSAS APPLICATION

IPSAS 25 Employee benefits partially implemented European Public Accounting Standards (EPSAS)

The European Commission is currently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uniform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public sector. These are intended to satisfy both the requirements of current international standards (IPSAS) and those specific to EU member states. Applying uniform accounting standards across the European Union would improve the quality of statistical and economic policy information and make harmonised accounting necessary at all levels of government. A public consultation on the framework of the European accounting standards(EPSAS) will take place at the beginning of 2014.

IPSAS 기준서 적용 개관

IPSAS 25 종업원 급여 부분 도입

유럽공공부문의회계기준(EPSAS)

유럽연합 집행 기관(European Commission)은 현재 공공 부문에 대한 통일된 회계기준 개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국제 기준(IPSAS)과 EU 회원국 고유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유럽연합 전체에 걸쳐 통일된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통계 및 경제 정책 정보의 질이 향상되고 모든 정부 수준에서 통일된 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유럽공공부문의회계기준(EPSAS)의 체계에 관한 공개자문은 2014년 초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3. Notes to the Opening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s at 1 January 2013

3. 2013년 1월 1일 재무제표의 개시 보고서 주석

B. ACCOUNTING POLICIES

Net assets and liabilities / PROVISIONS

Provisions must be formed if the event triggering the obligation occurs, or will occur with overwhelming probability before the financial statement reporting date and the amount of the actual obligation can be reliably calculated. The obligation can arise from a statutory or contractual liability. A provision is referred to as short-term if the outflow of funds is expected within one year of the reporting date. Long-term provisions are measured at their present value. The provisions for severance payments and anniversary bonuses were calculated using the projected unit credit method. Short-term provisions are measured at the anticipated payment amount. Provisions for pension obligations are reported in the notes to the opening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B. 회계 정책

순자산 및 부채 / 총당부채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재무제표 보고일 전에 압도적인 확률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의무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총당부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의무는 법정 또는 계약상의 책임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금 유출이 예상되면

단기 총당부채로 봅니다. 장기 총당부채는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퇴직급여 및 특별상여금에 대한 총당 부채는 예측단위 적립방식을 사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단기 총당부채는 예상 지급금액으로 측정됩니다. **연금총당부채는 재무상태표의 주석에 보고됩니다.**

PROVISIONS FOR SEVERANCE PAYMENTS € 507,013,789.66

Severance payments are required under Austrian employment law and take the form of a one-time compensation payment made when an employer terminates an employee or regular payments made when an employee enters retirement. The size of the severance payments is based on the employee's final salary and number of years of service. The provision for severance pay was calculated using the projected unit credit method. This method does not use the employee's current salary, but instead the monthly salary at the time of retirement. The expected severance amount was calculated and allocated over the full period of service. Provisions for severance payments were primarily recognised in the areas of education, arts and culture (EUR 328.4 million), military affairs (EUR 42.9 million) and justice (EUR 28.1 million).

퇴직급여 총당부채 € 507,013,789.66

퇴직급여는 「오스트리아 고용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종업원을 해고할 때 일시에 지급되거나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퇴직금 지급 규모는 종업원의 최종 연봉과 근속 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금 지급 총당 부채는 예측단위 적립방식을 사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직원의 현재 급여가 아닌 퇴직 시점의 급여를 사용합니다. 예상 퇴직금액은 전 근무 기간 동안 계산되어 배분되었습니다.

퇴직급여 총당부채는 주로 교육, 예술 및 문화 부문(328.4백만유로), 군사 부문(42.9백만유로) 및 사법 부문(28.1백만유로)에서 인식되었습니다.

PENSION EXPENSES

Information on future federal pension expenses is provided in the notes to the opening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Pension expenses are pension benefits that the Federal Government must pay for its civil servants. In 2013, the Federal Government paid EUR 8,455.7 million in pension benefits. This was offset by revenue in the amount of EUR 2,304.7 million. This means that EUR 6,151.0 million (expenses less revenue) was not covered by contributions and is therefore a future burden on the federal budget.

연금비용

미래 연방연금비용에 대한 정보는 개시 재무상태표의 주석으로 제공됩니다. 연금비용은 연방 정부가 공무원에게 지불해야 하는 연금급여입니다. 2013년에 연방 정부는 8,455.7백만유로의 연금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 중 2,304.7백만유로는 기여금으로 상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여금으로 충당되지 못한 6,155.0백만유로(수익 부족분)는 연방 예산에 대한 미래의 부담임을 의미합니다.

The following applies to the calculation of future pension expenses:

The 30-year forecast (2013-2042) wa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Rechnungslegungsverordnung of 2013 (Austrian Accounting Ordinance of 2013) and provides a summary figure of EUR 402,650.4 million for pension expenses, offset by revenues in the amount of EUR 60,509.2 million.

The calculation is based on data from the "2012 Ageing Report -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27 EU Member States (2010-2060)", which was calculated by Statistics Austria by order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 This means that EUR 342,141.2 million (expenses less revenue) is not covered by contributions and is therefore a future burden on the federal budget.

미래연금비용 계산에는 다음 사항들이 적용됩니다.

30년 예측 (2013-2042)은 '2013년 Rechnungslegungsverordnung(2013년 오스트리아 회계 조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이를 요약하면 연금비용 402,650.4백만유로 중 60,509.2백만유로는 기여금으로 상쇄됩니다.

계산은 『2012년 고령화 보고서-27개 EU 회원국(2010-2060)에 대한 경제 및 예산 전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방 재무부에 의해 오스트리아 통계청이 수행했습니다. 이는 기여금에 포함되지 않는 342,141.2백만유로(수익 부족분)가 연방 예산에 대한 미래의 부담임을 의미합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is also liable for expenses for offsetting EUR 562,959.8 million in net obligations of statutory pension funds.

연방 정부는 또한 법정연금기금의 순 의무 중 562,959.8백만유로를 상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료: Austrian Federal Ministry of Finance, *Opening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for the Austrian Federal Government*, 2013, pp. 7~9; 22; 50; 52

8. 핀란드

핀란드 재무제표 주석

Liite 13: Oikeiden ja riittävien tietojen antamiseksi tarvittavat muut täydentävät tiedot

주석 13: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보충 정보

Valtion talousarviosta annetun lain 18 §:n mukaan valtion tilinpäätökseen ja hallituksen vuosikertomukseen otettavien valtiontalouden ja valtion taloudenhoidon sekä toiminnan tuloksellisuuden kuvausten tulee antaa oikeat ja riittävät tiedot talousarvion noudattamisesta, valtion tuotoista ja kuluista, valtion taloudellisesta asemasta sekä tuloksellisuudesta.

Jotta tilinpäätös osaltaan täydentäisi oikean ja riittävän kuvan muodostumista talousarvion noudattamisesta, valtion tuotoista ja kuluista sekä valtion taloudellisesta asemasta on seuraavien tietojen antaminen tarpeen.

국가 예산에 관한 법률 §18 : 국가의 재무제표와 이사회 연례 보고서에 포함되는 국가 재정 및 국가 재무관리와 성과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 준수,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 상태와 실적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무제표가 예산 집행의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입·세출과 정부의 재정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Valtionvelka

Valtionvelka yleisenä käsitteenä kattaa valtion talousarviotalouden ja talousarvion ulkopuolella olevien valtion rahastojen velan. Rahoituslaskelmien rivi valtionvelan nettomuutos kuvaa valtion rahoituslaskelmassa valtion talousarviotalouden velan nettomuutosta, ei valtionvelan nettomuutosta kokonaisuudessaan.

Talousarviotalouden ja rahastojen yhteisen valtionvelan nettovähennys oli 0,8 mrd. euroa. Velan kokonaismäärä nimellisarvoltaan 105,0 mrd. euroa ja markkina-arvoltaan 111,7 mrd. euroa.

국가 부채

국가(state) 부채는 국가 예산 내의 재정과 예산을 초과한 국가 기금의 부채를 포괄합니다. 재무제표에 있는 국가 부채의 순변동은 국가 부채 전체의 순변동이 아닌 국가 현금흐름표의 국가 예산 부채의 순변동을 나타냅니다.

국가 예산의 재정과 기금의 국가 부채 순감소액은 8억유로였고, 총 부채금액은 명목가치로 1,050 억유로, 공정가치로는 1,117억유로였습니다.

Taseeseen sisältyvät erät

Eläkevastuuvelkaa ei kirjata valtion taseeseen. Eläkevastuu tarkoittaa niiden

Liite 13: Oikeiden ja riittävien tietojen antamiseksi tarvittavat muut täydentävät tiedot

주석 13: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보충 정보

eläkeoikeuksien pääoma-arvoa, jotka ovat karttuneet 31.12.2018 mennessä valtion eläketurvan piirissä. Valtion eläkevastuu oli vuoden 2018 lopussa 92,1 mrd. euroa. Eläkevastuun katteena valtion eläkerahastossa olevan omaisuuden arvo oli 18,6 mrd. euroa. Näin laskettuna vastuusta oli katettuna 20,2 %.

대차대조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연금부채는 국가(state) 대차대조표에 인식되지 않습니다. 연금부채는 국가의 연금보장 범위 내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금권리의 자본 가치를 의미합니다. 2018년 말의 국가 연금 부채는 921억유로였습니다. 연금부채를 충당하기 위한 연금기금의 자산가치는 186억유로였습니다. 이 자산으로 부채 금액의 약 20.2%가 충당됩니다.

자료: Valtioneuvoston kanslia, *Tilinpäätöslaskelmat 2018*, 2019, p. 95

OECD 국가별 연금총당부채 해외사례조사

발 행 2020년 12월 31일
저 자 한소영 · 진태호 · 이은경 · 최은혜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다원기획
I S B N 979-11-6655-012-6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